

2022

KARA

정기총회

2022. 2. 25.

동물들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물단체로서 카라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동물권 영역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한편, 대통령이 ‘개식용 종식 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의 각 부처와 동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가 발족했습니다.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원 허가제 등 동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의 기조도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잔혹한 동물학대의 현실이 여전하기도 합니다. 많은 시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동물 N번방 사건, 길고양이 살해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진돗개 등 반려동물의 방치 사육 문제도 여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하지만 반려동물의 대량 번식과 매매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식용 완전 종식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공장식 축산의 폐지는 요원한 한편, 육류를 비롯한 축산물의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또 다시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인해 수많은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동물권 운동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물권 운동은 국내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의 경계를 허물어 나가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주요 사회 운동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카라는 2022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구조·돌봄·입양의 선순환을 만드는 더봄센터의 통합적 활동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대량 번식과 매매를 종식하기 위해 바람직한 반려문화를 확산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숨센터에서는 대선 국면을 맞이하여 동물권 정책 활동에 집중할 뿐 아니라 농장동물 권익 캠페인, 만연한 동물학대 예방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선도해 온 ‘개식용 종식’ 운동의 결말을 맺기 위해서 강력한 사회문화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카라의 모든 활동가들이 힘을 합하여 서로 손잡고 밀어주고 앞서 나가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동물권 이슈를 주도하는 단체로서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동물들의 곁에 있되, 더 높고 큰 포부와 꿈을 가지고 저희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카라의 회원님들이 곧 카라이며, 카라가 곧 여러분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동물들을 위해 펼치는 모든 활동은 바로 회원 여러분의 연대와 참여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회원님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에도 카라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더욱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목차

| | |
|------------------|--|
| 카라 슬로건·미션·비전 | |
| 2022 카라 정기총회 식순 | |
| 2021 카라 정기총회 의사록 | |

2021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평가 및 결산

| | |
|-------------------------|----|
| 숫자로 보는 2021 동물권행동 카라 | 14 |
| 2021 동물권행동 카라 주요활동 | 16 |
| 2021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 키워드 15 | 20 |
| 2021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 총평 | 29 |
| 2021 동물권행동 카라 결산 | 32 |

2021 동물권행동 카라 회계감사보고서

| | |
|---------|----|
| 회계감사보고서 | 40 |
| 재무상태표 | 42 |
| 운영성과표 | 44 |

2022 동물권행동 카라 사업계획 및 예산

| | |
|-----------------------|----|
| 2022 동물권행동 카라 사업목표(안) | 60 |
| 2022 동물권행동 카라 사업계획(안) | 62 |
| 2022 동물권행동 카라 예산(안) | 90 |

| | |
|------------------|----|
| 총회 안건심의 - 정관 개정안 | 97 |
|------------------|----|

별첨자료

| | |
|----------------------------|-----|
| 임원 연임 후보자 명단 | 112 |
| 2021년 성명/논평/보도자료 목록 | 113 |
| 2021년 발간자료 목록 | 115 |
| 2021년 입양개체 목록 | 117 |
| 2021년 구조개체 목록 | 118 |
| 2021년 신규 정기후원회원 명단 | 120 |
| 2022년 정기총회 대의원 명단 | 125 |
| 2022년 동물권행동 카라 조직도 | 126 |
|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정관(2020년 버전) | 127 |

카라 슬로건·비전·미션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비전

VISION

동물이 인간의 일방적인 착취와 이용에서 벗어나
존엄한 생명으로서 그들 본연의 삶을 영위하고,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한다.

미션

MISSION

시민들과의 지식과 배움의 공유를 통해
동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 참여를 확대하며
폭넓은 연구와 다양한 실천을 통해
문화와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이어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동물복지를 증진한다.



2022 정기총회 식순

2022년 2월 25일(금) 19시

1. 인사말
2. 총회 성원보고
3. 개회선언
4. 전차회의록 낭독
5. 의사일정 확인
6. 의사록서기와 서명날인인의 선임
7. 안건심의
 - 가.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나. 2021년 회계감사 보고서 승인의 건
 - 다. 202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라. 정관 변경의 건
 - 마. 임원 연임의 건
 - 바. 기타 안건
8. 폐회선언

2021년 정기총회 의사록

2021년도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정기 총회 의사록

○ 회의일시

2021년 02월 25일 오후 7시 10분에서 11시
30분까지

○ 회의장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122 카라더블어숍센터
지하교육장, 온라인(ZOOM) 실시간 회의

○ 참석자

총회성원 수 218명 중 현장참석 19명,
온라인(zoom)참석 61명(위임 83명 포함)으로
성원

○ 의제

제1호 의안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0년 회계감사 보고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제5호 의안 임원 연임의 건
제6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제7호 의안 기타안건

○ 회의내용

1. 대표인사

의장이 개회를 알리며 [올해는 사업 예정산 외에 정관변경, 임원 임명 등 여러가지 사안이 있어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2021년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 및 내빈에게 인사말을 전하다.

2. 성원보고

의장 임순례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회성원 수 218명 중 참석 68명, 위임 83명, 총 151명으로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다.

3. 개회선언

의장이 위 참석자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4. 전차회의록 승인

평화 활동가 전차회의록 낭독하다.

5. 의사일정 확인

의장 임순례가 의사일정 보고하다. 의장이 의사일정 확인 승인을 위해 동의, 재청을 요청하자 대의원 간현임 동의, 대의원 고현선 재청으로 승인 가결하다.

6. 의사록 서기와 서명날인 회원의 선임

의장이 회원 총회의 의사록 서기로 한희진, 허성희 활동가를 지명하고, 서명날인 회원으로 이사 임순례, 이사 서국화, 이사 김혜숙, 이사 오순애, 이사 전진경, 이사 박종무, 이사 최정심을 지명하다. 의장이 의사록 서기와 서명날인 회원의 선임 승인을 위해 동의, 재청을 요청하여 대의원 전진경 동의, 대의원 김나연 재청으로 안건 상정 가결하다.

7. 안건 심의

제1호 의안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의장이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을 위해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여 대의원 김계옥 동의,
대의원 신주운 재청으로 안건 상정 가결하다.

국장 소연주 안건 설명하다.

이사 전진경 더봄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하다.

현장출석 대의원 19명과 온라인 대의원 56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동의로 총 158명이 전원 동의하여
참석인원 과반 중 전원의 동의로 승인하여
가결하다.

제2호 의안 2020년 회계감사 보고서 승인의 건
의장이 2020년 회계감사 보고서 승인을 요청하자,
대의원 간현임 동의, 대의원 신주운 재청으로
안건 상정 가결하다.

국장 소연주 감사보고서 대독하다.

현장출석 대의원 19명과 온라인 대의원 55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동의로 총 157명이 동의하여
참석인원 과반 중 전원의 동의로 승인하여
가결하다.

제3호 의안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이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을
위해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여 대의원 김계옥
동의, 대의원 김현지 재청으로 안건 상정
가결하다.

이사 전진경 안건 설명하다.

현장출석 대의원 19명과 온라인 대의원 54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동의로 총 156명 전원의 동의로

승인하여 가결하다.

제4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의장이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을
위해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여 대의원 조이향
동의, 대의원 김정아 재청으로 안건 상정
가결하다.

이사 최정심 안건 설명하다.

대의원 권혜라, 의장 임순례, 이사 전진경 헤이리
사건에 대해 설명하다.

대의원 김계옥 이사진들의 동물권 활동 경험과 변경
정관에 대한 준비를 묻다.

이사 오순애 답변하다.

의장 임순례 답변하다.

대의원 김계옥 이사진들의 역량과 계획을 묻다.

의장 임순례 답변하다.

이사 오순애 답변하다.

대의원 신주운 정관변경이 조직에 도움이 되는지
묻다.

이사 최정심 답변하다.

대의원 김현지 안건에 대한 민주성을 묻다.

이사 최정심 답변하다.

국장 소연주 답변하다.

의장 임순례 답변하다.

대의원 김현지 답변하다.

대의원 박운선 대의원들의 표결을 요구하다.

의장이 정관 제4장 제22조에 따라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하여, 온라인
대의원 17명의 동의와 현장출석 대의원 19명,
온라인 대의원 30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반대로
총 132명의 반대로 출석회원 2/3의 결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다.

제5호 의안 임원 연임의 건

의장 임순례가 안건설명하다.

의장이 의안 임원 연임의 승인을 위해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여 대의원 고현선 동의, 대의원 김정아
재청으로 안건 상정 가결하다.

대의원 김나연 연임하고자 하는 이사들의 카라

- 기여도를 묻다.
- 이사 오순애 답변하다.
- 이사 김혜숙 답변하다.
- 대의원 고현선 김혜숙이사에게 카라의 이사로서 개인활동하는 것에 대해 묻다.
- 이사 김혜숙 답변하다.
- 의장이 온라인 대의원 11명의 동의와 현장출석 대의원 19명, 온라인 대의원 37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반대로 총 139명의 반대로 참석인원 중 과반의 원안 반대로 김혜숙 이사의 연임을 부결하다.
- 의장이 온라인 대의원 13명의 동의와 현장출석 대의원 19명, 온라인 대의원 33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반대로 총 135명의 반대로 참석인원 중 과반의 원안 반대로 오순애 이사의 연임을 부결하다.
- 의장이 현장출석 대의원 16명과 온라인 대의원 40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동의와 온라인 대의원 9명의 반대로 총 139명의 찬성으로 승인하여 참석인원 중 과반의 원안 동의로 전진경 이사의 연임을 가결하다.
- 의장이 현장출석 대의원 18명과 온라인 대의원 42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동의와 온라인 대의원 9명의 반대로 총 143명의 찬성으로 승인하여 참석인원 중 과반의 원안 동의로 임순례 이사의 연임을 가결하다.
- 제6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의장 임순례가 안건설명하다.
- 의장이 의안 임원 연임의 승인을 위해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여 대의원 김현지 동의, 대의원 고현선 재청으로 안건 상정 가결하다.
- 의장이 현장출석 대의원 19명과 온라인 대의원 44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동의와 온라인 대의원 6명의 반대로 총 146명의 동의로 참석인원 중 과반의 원안 동의로 권미경의 임원선출을 승인하여 가결하다.
- 의장이 현장출석 대의원 16명과 온라인 대의원 43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동의와 현장출석 대의원 1명, 온라인 대의원 4명의 반대로 총 142명의 동의로 참석인원 중 과반의 원안 동의로 박승호의 임원선출을 승인하여 가결하다.
- 의장이 현장출석 대의원 16명과 온라인 대의원 44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동의와 현장출석 대의원 1명, 온라인 대의원 4명의 반대로 총 143명의 동의로 참석인원 중 과반의 원안 동의로 유창복의 임원선출을 승인하여 가결하다.
- 의장이 현장출석 대의원 17명과 온라인 대의원 42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동의와 온라인 대의원 5명의 반대로 총 142명의 동의로 참석인원 중 과반의 원안 동의로 서정주의 임원선출을 승인하여 가결하다.
- 의장이 현장출석 대의원 16명과 온라인 대의원 42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동의와 현장출석 대의원 1명, 온라인 대의원 3명의 반대로 총 141명의 동의로 참석인원 중 과반의 원안 동의로 박지영의 임원선출을 승인하여 가결하다.
- 의장이 현장출석 대의원 16명과 온라인 대의원 38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동의와 온라인 대의원 7명의 반대로 총 137명의 동의로 참석인원 중 과반의 원안 동의로 황지나의 임원선출을 승인하여 가결하다.
- 의장이 현장출석 대의원 3명과 온라인 대의원 16명의 동의와 현장출석 대의원 14명, 온라인 대의원 30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반대로 총 127명의 반대로 참석인원 중 과반의 원안 반대로 이원주의 임원선출을 부결하다.
- 의장이 최호운 신임 감사의 임원 선출 승인을 위해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여 대의원 김현지 동의, 대의원 신미아 재청으로 안건 상정 가결하다.
- 국장 소연주 안건 설명하다.
- 의장이 현장출석 대의원 17명과 온라인 대의원 42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동의와 온라인 대의원 1명의 반대로 총 142명의 동의로 참석인원 중 과반의 원안 동의로 최호운의 임원선출을 승인하여 가결하다.
- 의장이 이사 전진경의 대표이사 선출 승인을 위해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여 대의원 김계옥 동의, 대의원 고현선 재청으로 안건 상정 가결하다.
- 의장 임순례 안건 설명하다.

의장이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하여, 현장출석 대의원 15명과 온라인 대의원 39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동의와 현장출석 대의원 39명, 온라인 대의원 4명의 반대로 총 137명의 동의로 참석인원 중 과반의 원안 동의로 전진경 이사를 차기대표로 승인하여 가결하다.

제7호 의안 기타안건

의장이 기타 안건으로 공동대표 3인을 두는 것에 대한 승인을 위해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여 대의원 김진란 동의, 대의원 송혜미 재청으로 안건 상정 가결하다.

의장 임순례가 안건 설명하다

대의원 신미아 발언하다.

이사 김혜숙 발언하다.

대의원 박운선 발언하다.

의장이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하여, 온라인 대의원 7명의 동의와 현장출석 대의원 16명의 온라인 대의원 35명의 반대, 위임 대의원 83명의 반대로 총 134명의 동의로 참석인원 중 과반의 반대로 공동대표 3인을 선출 안건을 부결하다.

의장 임순례가 기타안건을 묻다.

대의원 신주운이 이사 박종무의 해임을 요청하다.

의장 임순례가 기타 안건으로 이사 박종무 해임의 승인을 위해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여 대의원 고현선 동의, 대의원 김현지 재청으로 안건 상정을 투표에 부치다.

의장이 이사 박종무의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현장출석 대의원 13명, 온라인 대의원 33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동의와 온라인 대의원 5명의 반대, 총 129명 참석인원 중 과반의 동의로 안건 상정 가결하다.

의장이 정관 제3장 12조 1항에 따른 이사 박종무 해임의 승인 가부를 묻다.

의장이 정관 제4장 제22조에 따라 출석 대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하여, 현장출석 대의원 14명과 온라인 대의원 32명,

위임 대의원 83명의 동의, 온라인 대의원 6명의 반대, 총 129명이 동의하여 참석 대의원 중 2/3 이상의 동의로 이사 박종무의 해임을 승인하여 가결하다.

8. 폐회선언

오후 11시 30분 경, 본 총회의 안건 논의를 모두 마치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21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평가 및 결산

숫자로 보는 2021 동물권행동 카라

2021 동물권행동 카라 주요활동

2021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 키워드 15

2021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총평

2021 동물권행동 카라 결산



숫자로 보는 2021 동물권행동 카라

144 마리

시민구조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조 후 치료받은 동물

417 명

더봄센터, 달봉이네 보호소 등 봉사활동 참여자

217 마리

새로운 가족을 만나 입양 간 동물

487 명

동물을 위한 물품 후원, 나눔정원 참여자

169 마리

중성화 수술 후 방사한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1,973 명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제4회 카라동물영화제 관객

207 마리

더봄센터에 입소한 동물

1,792 명

마음으로 하는 입양, 일대일 결연 후원자

419 마리

개도살장, 개농장, 방치, 학대자로부터 구조한 동물

718 명

카라 동물권 학습지도안 시범교육 참여 교사 및 학생

3,589 명

2021 카라 정기후원 회원 신규 가입자

239,875 명

카라 소셜 미디어 팔로워



1,803 회

카라의 동물권 활동 언론 보도

7,148 권

동물전문 크라우드서관 온/오프라인 보유 도서

5,593 회

동물권행동 카라 2021 전화상담 건수

21,916 kg

사설보호소 36곳 지원 물품

13,255 건

카라 동물병원 진료 건수

100,179,500 원

시민구조치료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위기동물 치료비

3,975,695,396 원

2021년 카라의 활동을 뒷받침한 후원금



2021 동물권행동 카라 주요활동



1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환영 액션
"개·고양이 식용 금지하라!"

동물복지 애니메이션 «달걀 번호 끝자리의 비밀» 제작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동물학대 고발

화성 시민토론회 참여 <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 지역에서 답을 찾다!>

카라 동물권 학습지도안 47종 제작 발표회

카라 동물병원 더봄센터 이전

2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제는 돌고래 감금을 끝낼 때"

조류독감 무차별 살처분 규탄 기자회견
"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 강행 중단하라!"

대구 칠성 개시장 폐쇄 및 개식용 종식을 위한 민원액션

미니피그 등 구조 농장동물을 위한 환경 정비

더봄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2021 동물권행동 카라 정기총회

3월

임순례 전 대표, 전진경 현 대표 이취임식

카라×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미팅 "사육곰 생츄어리 건립을 위한 연대의 시작"

온앤오프 입양파티 시즌1 <입양 ON 펫숍 OFF>

제16회 궁디팡팡 캠페스타(부산 지역) 부스 참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울산 남구청은 감금 돌고래 즉각 방류하라!"

2021 접속하는 동물권 교육 참가자 모집
동물권 학습지도안 시범수업 교사진 결성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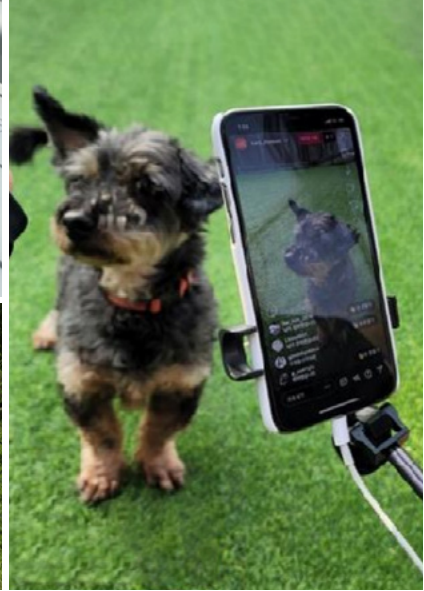
- 대전 애니멀호딩 피해 동물 44마리 구조
- 아름품 시즌3 <입양센터 아름품> 리모델링 완료 및 집들이 주안
- 온앤오프 입양파티 시즌2 <즐거운 나의 집>
- 4.7 재보궐선거 서울/부산 시장 후보자 동물권 정책 제안
-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 토론회 참여
- 보호소 사칭 신종 펫숍 규제안 촉구 서명운동 및 피해사례 접수
- 마린파크 폐쇄 및 돌고래 바다심터 마련 촉구 공동기자회견
- 2021 카라*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협약

5월

- 강남 애니멀호딩 피해 고양이 39마리 전원 구조
- 2021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서울 자치구 동물보호담당 공무원 대상 사업설명회
- 2020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사례집 발간
- <카라 동물권 더배움> 집중강좌 시리즈
- 콩콩도서관 뉴 시즌 <콩콩리더 모집, 콩콩전자도서관 오픈!>
- 우유 대신 두유 캠페인 <우유/두유 소비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조사>
- <동물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참여
- 한화 여수 아쿠아플라넷 벨루가 방류 촉구 공동기자회견
- 제4회 오구데이 "품종 대신 이름을 불러주세요!"
- 남양주 개물림 사고 관련 언론 대응

6월

- 남양주 개농장 급습 및 긴급 구조
- 불법 개농장 방조 및 동물보호의무 방기한 남양주시 고발 기자회견
- "광명시 불법 개도살장 정식재판을 요구한다!" 시민탄원 제출
- 살처분 제도 개선 촉구 및 살처분 희생 동물을 위한 추모 기도회 참여
- 노령견 가정 위탁 프로젝트 <늦어도 다시 한 번>
- 제17회 궁디팡팡 캣페스타 부스 참여
- 온앤오프 입양파티 시즌3 <펫숍갈고냥? 입양할고냥?>
- 더봄센터 더알찬 투어(6-12월)
- 돌고래 바다심터 후보지 민관합동조사
- 더봄센터 카라구조동물 추모식



7 월

카라 신규회원과의 온라인 만남 <카라와 더불어 첫걸음>

고양시 용두동 불법 개도살장 급습 및 33마리 구조

의정부시 신곡동 불법 개도살장 급습 및 16마리 구조

대구 칠성 개시장 폐쇄 촉구 연대집회

복날 대집회 및 기자회견 "개식용을 종식하라!"

개식용 반대 애니메이션 «모든 개는 반려동물, 식용견은 없다» 제작

<카라 동물권 더배움> 주제강좌 시리즈 '동물학대와 미디어'

죄 없는 무기징역, '철창 속 사육곰 해방 프로젝트' 선포

2021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협력 지역 현장조사

디시인사이드 동물학대자 처벌을 위한 국민청원 촉구 액션

"늦어도 다시 한번," 노령견 가정 위탁 사업

8 월

온앤오프 입양파티 시즌4 <뜬장에서 집으로>

제4회 카라동물영화제 비경쟁 출품 공모

국내 첫 동물권 자료 아카이브 '카라 아카이브' 리뉴얼

콩콩 북토크 <순종 개, 품종 고양이가 좋아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참여

화천 사육곰 구조를 위한 '카라x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연대체 발대식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참여

2021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관계자 간담회

왕대리 도살장 적발 및 피해동물 37마리 구조

9 월

제18회 궁디팡팡 캣페스타 부스 참여

결연 만남의 날 <보고싶었어, 널 보러 갈게>

10대 동물권 활동가를 위한 '틴카라' 프로그램 <하지만 확실한 우리의 행동>

시민참여 미디어 감시 액션 <언제나 동물영상 모니터링>

공공 동물병원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 참여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내 반려가구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지원

서울시 도시정비구역(월계동/사당동) 길고양이 집중 TNR

서울 강서구/강남구, 포항 등 고양이 학대사건 대응

제4회 카라동물영화제 관객리뷰단 및 자원활동가 모집

제4회 카라동물영화제 시민 영상 공모

카라 전체 활동가 교육 '비거니즘 스터디' 3회차 진행



10월

- 제4회 카라동물영화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 제4회 카라동물영화제 온라인 쟁점 포럼 인간 너머의 동물 윤리학
- 제4회 카라동물영화제 온라인 스페셜 토크 <영화감독과 동물>
- 서울시 도시정비구역(문정동) 길고양이 집중 TNR
- 온앤오프 입양파티 시즌5 <양보의 아이콘: 이제는 내 차례>
- 해피빈 모금함 “사육곰을 철창에서 생츠퍼리로!” 개시
- 2021 고양이 입양가족의 날 <냥스 패밀리 데이>
- 카라×한국조폐공사 동물복지기념메달 제작 회의
- 문재인 대통령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관계 부처 이행 촉구 기자회견

11월

- 온라인 결연 만남의 날 <나의 결연 동물과 조금 더 가까이>
-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재판부 엄중 판결 촉구 기자회견 및 공판 참여
- 범죄학 전문가 권일용 프로파일러와 함께 살펴보는 고어전문방 사건
- ‘2021 작은공론장 “반려동물 매매금지, 당신의 선택은?” 찬반토론 참여
-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을까요?» 미디어×동물권 애니메이션 제작
- 온앤오프 입양파티 시즌6 <양보의 아이콘: 이제는 내 차례>
- 서울시 도시정비구역(장위동) 길고양이 집중 TNR
- 활동가 심리 치유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 카라 전체 활동가 멤버십 트레이닝

12월

- 장기후원회원을 위한 온라인 행사 <오후의 만남>
- 온앤오프 입양파티 시즌7 <베이비 원 모어 타임>
- 제9회 궁디팡팡 캣페스타 부스 참여
- ‘야생화’된 유기견에 대한 근본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여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여
- 진도개 보호법령 개정 의견서 농림축산식품부 전달
- 2021 서울시×카라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영상 제작
- 카라×한국조폐공사 동물복지기념메달 ‘생동하는 닳’ 출시
- 생명경시 조장하는 SBS <공생의 법칙> 방영 취소를 위한 시민액션
-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평가 만점 획득
- 카라가 선정한 2021년 10대 동물뉴스 발표

2021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 키워드 15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더 큰 연대체를 이루다

1 카라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

2 2020년, 2021년 연속 한국가이드스타 최우수 법인 선정

3 SNS 및 영상콘텐츠 활용과 시민들의 동물권 이해 확장

동물권 법제 강화를
추동하다

4 개 도살장 및 경매장 폐쇄 단행

5 동물권의 사각지대 드러내기

6 7만 명의 시민과 함께 동물학대에 대응

외면당한 동물들에게 권리를 찾아주다

7 구조된 동물들에게 최상의 돌봄을! 카라 **더봄센터**

8 더봄센터에서 평생 **가족의 곁으로**

9 73마리의 개들에게 새 세상을! 달봉이네 **사설보호소 자립 지원**

10 길 위의 생명과의 공존! **길고양이 보호** 활동의 선두주자

동물권 인식의 지평을 넓히다

11 동물권을 공교육으로! 교내 **동물권 학습지도안** 시범교육

12 지식 기반 동물권 활동의 중심, **콩콩도서관**의 확장

13 인간 중심의 사유를 돌아보다! 제4회 **카라동물영화제**

농장동물에게 자유를!

14 평생을 철창에 갇혀 산 곰에게 해방을! **민간 생츄어리** 건립 추진

15 고기 아닌 생명, 생동하는 닭! **동물복지기념메달** 출시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더 큰 연대체를 이루다

1. 카라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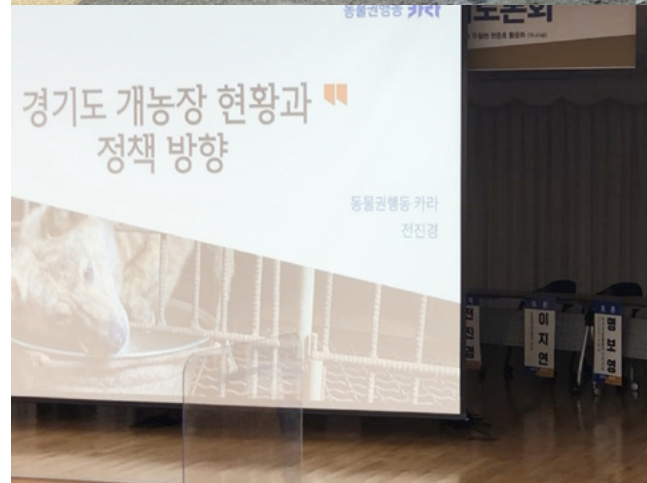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임에도 카라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 그리고 후원으로 동물권행동 카라는 활동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 카라가 동물을 구조하거나 각종 현안에 대응할 때마다 시민 분들이 자발적인 후원 증액과 일시후원을 해주신 덕분에 특정 사안에 필요한 사업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졌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또한, 점차 경직되어가는 온라인 모금 환경에서도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목표 모금액을 달성했으며 가장 신뢰받는 동물단체로 자리 잡았다.

2. 2020년, 2021년 연속 한국가이드스타 최우수 법인 선정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카라는 한국가이드스타 공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조직의 투명성, 책무성, 재무효율성에서 고득점을 이뤄냄으로써 시민 여러분에게 카라의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감을 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카라가 동물권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 교육과 문화, 구조와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소중한 기부금을 투명하고 알뜰하게 쓰기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고 평가된다. 카라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정부의 지원금 없이 100% 시민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및 성과는 카라의 회원님들, 후원자님들의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

3. SNS 및 영상콘텐츠 활용과 시민들의 동물권 이해 확장

시민들에게 카라의 존재와 캠페인 메시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단체의 '브랜드'를 확립해 왔으며, 비영리 단체에 적합한 SNS 환경을 점차 갖추었음을 확인했다. 카라 활동가들의 목소리로 동물권 활동을 알리는 영상콘텐츠를 기획함으로써 시민들의 동물권 이해 확장에 기여했고, 방송 매체와 뉴미디어에도 자주 등장하여 단체의 대중적인 입지를 다졌다. 비영리 단체로서 광고를 활용하여 캠페인, 입양, 후원 등의 메시지를 공격적으로 전파했으며, 애널리틱스 설치를 통해 데이터에 근거한 활동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동물권 법제 강화를 추동하다

4. 개 도살장 및 경매장 폐쇄 단행

카라는 오랫동안 개식용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해 왔고, 불법 도살이 만연한 학대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개 도살장 철폐와 경매장 실태 폭로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고군분투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도살장 3곳을 급습하여 피학대 동물 전체를 구조했고, 개식용 산업 종식 캠페인으로 연결해 시민사회의 의식 변화를 이끌었다. 또한, 10월부터 파주 경매장 폐쇄를 촉구하는 시민 탄원 액션을 추동하고 지자체를 압박함으로써 12월 소위 '식용 개' 경매장이 폐쇄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의 개식용 종식 검토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는 과정에도 크게 기여했다. 개 도살장 및 경매장 폐쇄를 위한 카라의 활동은 동물의 법적 지위 제고와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해 법제 개선을 도모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 동물권의 사각지대 드러내기

카라는 시의성 있는 동물권 이슈에 대해 심층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도 동물권의 메시지가 미처 가닿지 못한 사각지대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신종 핏슈이나 사설보호소를 관리하는 법제도가 부재한 현실을 드러냈으며, 애니멀 호딩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의 모색을 촉구해 왔다. 남양주 개물림 사고의 경우 적극 개입하여 수사에 도움을 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건의 기질 평가를 주장하여 사고건에 대한 혐오를 막고 시스템 차원에서의 개선 필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물림 사고가 발생한 곳 바로 옆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이 남양주시 보호소에서 일부 동물을 데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자체 유기동물 입양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환기할 수 있었다. 한편, 무책임한 증식과 보급에만 치중되어 있는 진돗개 육성 사업을 비판하면서 모든 진돗개 보호를 포섭하는 진도개보호·육성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감춰져 있던 진돗개 학대 문제를 가시화하고, 법제의 기본 개념과 방향을 정비 및 재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6. 7만 명의 시민과 함께 동물학대에 대응

카라는 2021년 한 해 동안 동물학대와 관련하여 경찰에 고발장을 총 19건 제출했다. 적극 수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카라의 탄원 서명에는 7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고, 카라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강력한 시민 참여 운동을 개진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역삼동 협박 쪽지 사건, 중랑구 케어테이커 폭행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건에 적극 대응했으며, 언론사·방송사와 협업하여 카라 활동을 알리며 동물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가시화했다. 또 국회 동물복지포럼 동물학대 관련 토론회에 참여하여 카라가 직접 대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최근 동물학대 사건의 특징 및 범죄 연관성을 밝히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일관되고 강력한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외면당한 동물들에게 권리를 찾아주다

7. 구조된 동물들에게 최상의 돌봄을! 카라 더봄센터

카라 더봄센터는 지난 2020년 10월 15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구조, 치료, 돌봄, 입양의 선순환을 이뤄내는 선진형 종합 동물보호센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센터 내 동물병원에서의 적극적인 치료와 동물 보호공간에서의 세심한 돌봄으로, 한 마리라도 더 좋은 가족을 만나 입양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더봄센터는 도살장, 방치 사육, 애니멀 호딩 등 위기 상황에서 구조된 동물들에게 따뜻한 집이 되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영향력 또한 확장해나가는 중이다. 시민들과 교류하는 교육센터이자 정부 및 지자체에 보호소 모델을 제시하는 견학 공간이 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함께 더봄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개식용 종식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확인하고 지자체가 앞장서는 개식용 종식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8. 더봄센터에서 평생 가족의 곁으로

2021년은 평년보다 대규모 동물 구조가 많았다.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구조된 동물들의 사회화 과정은 때로 더디기도 했지만, 더봄센터와 아릅품에서 적극 훈련하고 교육함으로써 수차례의 입양 파티 및 상시 입양 상담을 통해 188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평생 가족을 만났다. 특히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워진 아릅품에서는 5월부터 '폼스테이' 사업을 시작해 동물 사회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고, 입양 ON 펫숍 OFF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의 반려문화 인식 개선에도 앞장섰다. 입양된 동물들 중 83마리는 해외 입양으로 새로운 터전을 찾았으며, 서울시와 협업한 유기동물 임시보호 사업을 통해서도 79마리가 구조되어 그중 32마리가 따뜻한 가정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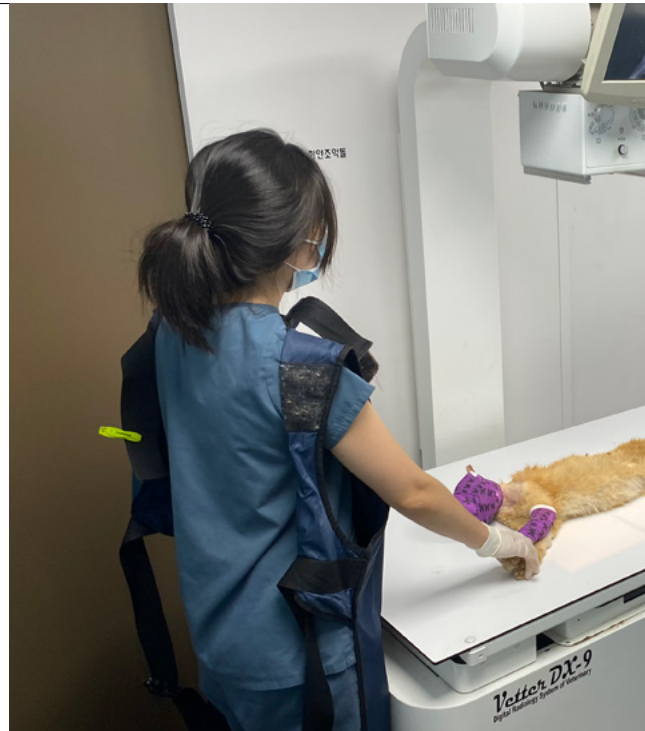
9. 73마리의 개들에게 새 세상을! 달봉이네 사설보호소 자립 지원

카라가 달봉이네 사설보호소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였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소장님의 헌신적인 돌봄과 카라의 지원으로 보호소에서 지내는 140여 마리의 개들이 생을 이어왔으나, 동물들에게 좀 더 빠르게 가정을 찾아줘야 하고 소장님에게도 지속가능한 삶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달봉이네 보호소 자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곳 개들 대부분은 사회화 정도가 낮아 훈련이 필요했고 각 동물마다 세심한 보살핌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오랜 질병을 지니고 있기도 했다. 카라는 회당 6~10마리의 개들을 여덟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더봄센터에 입소시켰으며, 질병 치료 및 사회화를 적극 진행하여 개들의 입양을 돕고 있다. 2022년까지 보호소 내 대부분의 개가 카라 센터에 머물며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0. 길 위의 생명과의 공존! 길고양이 보호 활동의 선두주자

카라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서울시와 함께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을 수행했다. 총 세 곳의 도시정비구역 현장에 나가 길고양이들의 안전한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를 도왔다. 세심한 돌봄이 부재한 길 위에서 길고양이들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거나 상시 임신/출산을 반복하며 살아가기에,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 자치구 공무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침서가 될 가이드북을 제작 중이며, 6년 만에 개정되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서 오랜 길고양이 보호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동물권 인식의 지평을 넓히다

11. 동물권을 공교육으로! 교내 동물권 학습지도안 시범교육

카라 교육 활동가들과 초중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협업하여 자체 개발한 47종의 동물권 학습지도안을 학교 현장에 전파하고자 동물권 시범교육을 진행했다. 총 13인의 교사와 705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교사에 의한 교내 동물권 교육이 필요할 뿐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2~3차시에 걸쳐 이뤄진 토론, 게임, 만들기 등의 활동에서 학생들은 높은 관심도와 집중도를 유지했고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후속 활동으로 교사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동물권 교육에 대해 교사로서 가진 고민과 노하우 등을 알아보고, 이를 13편의 특집 기사글로 기획 연재했다.

12. 지식 기반 동물권 활동의 중심, 쿵쿵도서관의 확장

2014년 국내 첫 동물전문도서관으로 문을 열고 동물권 활동의 지식 기반을 넓혀 온 쿵쿵도서관이 동물권 교육, 책, 문화, 아카이브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새로운 시즌을 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줄어든 상황에서 쿵쿵전자도서관을 오픈하여 동물학, 동물권, 사회학, 어린이 도서 등 다양한 주제 및 분야의 동물책을 구비했고, 이를 전국 각지에서 지역 편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쿵쿵리더'를 조직하여 동물권 교육 및 문화 활동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나갈 시민들을 모으고 연결했다.

13. 인간 중심의 사유를 돌아보다! 제4회 카라동물영화제

2021년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제4회 카라동물영화제가 열렸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슬로건으로 인간 중심적인 사유와 인간 사회에 대해 의심해 보자는 메시지를 던졌고, 동물을 보호하는 활동마저도 인간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총 12개국 22편의 영화가 소개되었으며, 제4회 영화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프라인 극장 상영을 3회 진행하여 전회 매진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남겼다. 제4회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시민 영상 공모전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4개의 작품이 영화제 상영작으로 선정되어 스크린에서 상영되었다. 이때 출품 신청서에는 카라가 제작한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에 준하여 동물에게 안전하게 촬영했는지 묻는 항목을 포함시켜, 미디어 속 동물 권리를 위한 카라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나갔다.

농장동물에게 자유를!

14. 평생을 철창에 갇혀 산 곰에게 해방을! 민간 생츄어리 건립 추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360여 마리의 사육곰들이 심각하게 낙후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시설에서 탈출하려다 사살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21년 6월 카라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동료 단체와 함께, 사육을 포기한 화천의 한 농가로부터 15마리의 사육곰을 구조했고 향후 이들을 위한 민간 생츄어리 건립을 선언했다. 생츄어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현재 농장에서 다양한 식단 및 치료 제공, 행동풍부화 시설물 설치 등으로 최대한의 복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사육곰 구조 및 민간 생츄어리 건립 프로젝트는 환경부의 책임감 있는 곰 보호시설 확보와 사육곰 산업 종식을 앞당기는 신호탄으로서, 향후 사육 야생동물 및 농장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것이다.

15. 고기 아닌 생명, 생동하는 닭! 동물복지기념메달 출시

공장식 축산의 배터리 케이지 및 스톨 추방을 위해 대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했고, 비감염 농장동물에 대한 살처분 유예나 살처분 명령 철회가 가능해지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인류문명과 농장동물> 시리즈 기념 메달의 첫 번째인 ‘생동하는 닭’ 동물복지기념메달을 출시한 것은 뜻깊은 활동이었다. 이는 아름답고 귀하고 당당한 생명으로서의 농장동물이 지닌 모습과 이야기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구상에서 전 세계 인류보다 더 많이 사육되는 동물이자 조류독감 발병으로 지금까지 1억 마리가 땅에 묻혀 죽임을 당한 동물인 ‘닭’을 최초 모델로 삼은 것이 유의미하다.



2021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 총평

위기에 놓인 동물들의 곁으로 더 가까이

2021년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학대의 현장 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양주 개몰림 사고 현장 주변의 참혹한 개농장, 분노와 쓰레기로 가득찬 애니멀호더의 집, 학대로 죽은 길고양이처럼 동물권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들의 곁에 카라가 있었습니다.

파주의 소위 '식용개' 대규모 경매장에서 시작된 불법 유통과정 추적 활동은 개도살장에서의 동물학대 실태 폭로와 130마리 피학대견 전원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카라가 오랜 시간 이끌어 온 한국 식용개농장 철폐를 위한 활동은 «경기도 개농장 실태조사 보고서»로 결실을 맺어 2021년 6월 정치인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발표되었고, 대선 후보들이 '개식용 종식'을 공약하거나 대통령이 '개식용 종식 검토'를 지시하도록 추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도 정부 각 부처와 동물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개식용 종식 방안을 검토할 때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동안 꾸준히 지속해 온 카라만의 전문적 동물권 활동에 대해서도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후속 작업이 쉽 없이 이뤄졌습니다. 여러 사설보호소에 대한 지원 활동과 더불어, 카라가 오래 연대해 온 달봉이네 보호소의 발전적 해체를 위해 대규모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연내 무려 70여 마리의 반(半)야생 개들을 구조하여 사회화 훈련 및 입양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케어테이커 지원 사업에서 시작된 길고양이 보호 활동은 공원급식소를 거쳐 재개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서울 3개 재정비 구역에서의 이주 및 TNR 지원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카라와 서울시가 협업한 본 활동은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의 표준이 되어 경기도, 부산 등 타 지역에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지지에 힘입어 발전하는 카라의 조직과 활동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동물권 사유의 확장을 위해, 카라는 차별화된 교육 활동과 제4회 카라동물영화제 등 문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현장 중심의 위기 대응 활동으로는 포섭하지 못하는, 보다 대중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동물권 캠페인을 시민들과 나누면서 동물권 운동의 경계를 확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카라 회원뿐 아니라 많은 시민 여러분이 카라 교육 프로그램, 동물영화제, 입양 행사, 자원활동 등에 참여해 주셨고, 때로는 서명운동이나 국민청원 참여, 민원 제기 등의 직접 행동에 나서 주셨습니다. 특히 동물학대 사건에 분노해 주셨던 7만 명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카라는 19건의 학대 사건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고어전문방 사건에 있어서는 국내 최초로 동물학대 방조 혐의로 처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더봄센터 돌봄팀과 동물병원의 헌신적이고 체계적인 동물 돌봄이 바탕이 되었고, 모든 활동가들의 섬없는 정진이 있었습니다. 조직적 역량이 부족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활동을 지원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다소간의 시행착오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동물 구조 매뉴얼을 구축하고 반려동물 번식·판매 철폐 활동을 이어가면서, 더봄센터와 아릅폼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방법론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구조와 동물권 활동으로 수렴될 것입니다. 2021년 더봄센터에서의 1년은 경험과 아픔으로부터 배워 발전적인 운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며 고민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반성과 평가를 통해 더 강력한 동물권 운동으로

작년 한 해는 코로나 시국 속에서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모색하며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동물과 농장동물을 위한 활동도 본격화한 한 해였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사육곰 농가에서 곰 15마리를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라는 동료 단체와 함께 구조하여 지금까지 돌봐 오면서, 정부의 사육곰 산업 종식과 국가 생츄어리 건립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농장동물에 대한 학대인 감금틀 사용 중단과 비거니즘의 확산을 위해 ‘팜 생츄어리’ 건립 활동이 갖는 당위성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최초로 한국조폐공사와 ‘동물보호 기념메달 발행’을 위해 협업하면서 그 주제로 ‘생동하는 닭’을 선택한 것도 농장동물 보호 활동의 사회적 가시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곰 생츄어리와 팜 생츄어리 건립이라는 목표 앞에 놓인 비용, 인허가 등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더 높고 공고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마주하며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지지해 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에 카라의 이 모든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동물들은 여전히 소외된





약자입니다. 지금보다 더 힘 있는 단체로 거듭나 더 큰 목표를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 더 많은 시민과의 소통과 연대가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카라는 이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 연대를 기반으로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사회의 전 영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카라는 그간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캠페인 전략을 수립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더 강력한 동물권 운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가 더 강력하게 활동하며 동물들을 대변할 때 회원님들의 소중한 정성과 연대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카라는 2021년의 모든 활동을 면밀하게 되고하고 평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활동가들이 더 나은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의 성과를 이어 2022년에도 동물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동물권행동 카라 결산

단위: 원

| 수입 | | | | |
|---------|---------------|---------------|--------------|-------|
| 과목 | 예산 | 결산 | 증감 | 대비(%) |
| 전년도 이월금 | 944,465,899 | 917,290,587 | 27,175,312 | 97.1 |
| 보조금수입 | 241,000,000 | 225,851,026 | 15,148,974 | 93.7 |
| 기부금수입 | 4,281,495,396 | 5,097,319,052 | -815,823,656 | 119.1 |
| 사업수입 | 119,987,364 | 140,521,012 | -20,533,648 | 117.1 |
| 수익사업수입 | 290,000,000 | 267,529,740 | 22,470,260 | 92.3 |
| 잡수입 | 1,230,000 | 2,688,098 | -1,458,098 | 218.5 |
| 수입 합계 | 5,878,178,659 | 6,651,199,515 | -773,020,856 | 113.2 |

| 지출 | | | | |
|---------|---------------|---------------|-------------|-------|
| 과목 | 예산 | 결산 | 증감 | 대비(%) |
| 사업비 | 3,728,600,130 | 3,651,652,491 | 76,947,639 | 97.9 |
| 수익사업비 | 302,060,000 | 307,851,125 | -5,791,125 | 101.9 |
| 운영비 | 610,519,330 | 707,138,121 | -96,618,791 | 115.8 |
| 재산조성비 | 110,064,400 | 79,948,600 | 30,115,800 | 72.6 |
| 과년도 미지급 | 329,880,306 | 142,720,620 | 187,159,686 | 43.3 |
| 상환금 | 782,600,000 | 779,784,523 | 2,815,477 | 99.6 |
| 예비비 | 14,334,493 | 0 | 14,334,493 | 0 |
| 잡지출 | 120,000 | 1 | 119,999 | 0 |
| 지출 합계 | 5,878,178,659 | 5,669,095,481 | 209,083,178 | 96.4 |

2021 수입결산서

단위: 원

| 구분 | 예산과목 | 예산 | 결산 | 증감 | 대비(%) | 비고 |
|----|-----------|---------------|---------------|--------------|-------|----|
| 관 | 전년도 이월금 | 944,465,899 | 917,290,587 | 27,175,312 | 97.1 | |
| 항 | 전년도 이월금 | 944,465,899 | 917,290,587 | 27,175,312 | 97.1 | |
| 목 | 유동자산 | 843,250,360 | 843,250,360 | 0 | 100 | |
| 목 | 기타유동자산 | 101,215,539 | 73,510,227 | 27,705,312 | 72.6 | |
| 목 | 기타비유동자산 | 0 | 530,000 | -530,000 | 0 | |
| 관 | 보조금수입 | 241,000,000 | 225,851,026 | 15,148,974 | 93.7 | |
| 항 | 보조금수입 | 241,000,000 | 225,851,026 | 15,148,974 | 93.7 | |
| 목 | 기타 보조금 | 241,000,000 | 225,851,026 | 15,148,974 | 93.7 | |
| 관 | 기부금수입 | 4,281,495,396 | 5,097,319,052 | -815,823,656 | 119.1 | |
| 항 | 정기후원금 | 2,986,497,396 | 3,400,734,867 | -414,237,471 | 113.9 | |
| 목 | 정기 지정후원금 | 356,579,000 | 463,812,180 | -107,233,180 | 130.1 | |
| 목 | 정기 비지정 후원 | 2,629,918,396 | 2,936,922,687 | -307,004,291 | 111.7 | |
| 항 | 일시후원금 | 1,144,998,000 | 1,535,551,168 | -390,553,168 | 134.1 | |
| 목 | 일시 지정 후원금 | 768,823,700 | 869,752,331 | -100,928,631 | 113.1 | |
| 목 | 일시 비지정 후원 | 376,174,300 | 665,798,837 | -289,624,537 | 177 | |
| 항 | 기부물품수입 | 150,000,000 | 161,033,017 | -11,033,017 | 107.4 | |
| 목 | 비지정 기부물품 | 150,000,000 | 161,033,017 | -11,033,017 | 107.4 | |
| 관 | 사업수입 | 119,987,364 | 140,521,012 | -20,533,648 | 117.1 | |
| 항 | 교육수입 | 11,800,000 | 12,182,620 | -382,620 | 103.2 | |
| 항 | 용역수입 | 27,227,364 | 27,227,363 | 1 | 100 | |
| 목 | 지자체용역수입 | 27,227,364 | 27,227,363 | 1 | 100 | |
| 항 | 기타수입 | 80,960,000 | 101,111,029 | -20,151,029 | 124.9 | |
| 목 | 입양맞음비 | 7,560,000 | 8,220,000 | -660,000 | 108.7 | |
| 목 | 행사참가비수입 | 2,400,000 | 680,000 | 1,720,000 | 28.3 | |
| 목 | 물품판매수입 | 71,000,000 | 87,236,372 | -16,236,372 | 122.9 | |
| 목 | 기타사업외수입 | 0 | 4,974,657 | -4,974,657 | 0 | |
| 관 | 수익사업수입 | 290,000,000 | 267,529,740 | 22,470,260 | 92.3 | |
| 항 | 수익사업수입 | 290,000,000 | 267,529,740 | 22,470,260 | 92.3 | |
| 관 | 잡수입 | 1,230,000 | 2,688,098 | -1,458,098 | 218.5 | |
| 항 | 잡수입 | 1,230,000 | 2,688,098 | -1,458,098 | 218.5 | |
| 목 | 기타예금이자수입 | 910,000 | 1,138,954 | -228,954 | 125.2 | |
| 목 | 기타잡수입 | 320,000 | 1,549,144 | -1,229,144 | 484.1 | |
| | 수입합계 | 5,878,178,659 | 6,651,199,515 | -773,020,856 | 113.2 | |

2021 지출결산서

단위: 원

| 구분 | 예산과목 | 예산 | 결산 | 증감 | 대비(%) | 비고 |
|----------|------------------------------|----------------------|----------------------|--------------------|--------------|----|
| 관 | 사업비 | 3,728,600,130 | 3,651,652,491 | 76,947,639 | 97.9 | |
| 항 | 직접사업인건비 | 1,430,070,430 | 1,505,607,885 | -75,537,455 | 105.3 | |
| 목 | 직접급여 | 1,062,591,310 | 1,097,353,640 | -34,762,330 | 103.3 | |
| 목 | 직접상여 | 144,200,000 | 139,468,700 | 4,731,300 | 96.7 | |
| 목 | 직접기타인건비 | 30,000,000 | 28,280,570 | 1,719,430 | 94.3 | |
| 목 | 직접퇴직급여 | 72,600,000 | 125,514,445 | -52,914,445 | 172.9 | |
| 목 | 직접사회보험부담금 | 120,679,120 | 114,990,530 | 5,688,590 | 95.3 | |
| 항 | 홍보 | 166,480,000 | 98,110,527 | 68,369,473 | 58.9 | |
| 목 | 영상 홍보 | 10,000,000 | 640,080 | 9,359,920 | 6.4 | |
| 목 | 콘텐츠 기획 | 19,000,000 | 13,139,594 | 5,860,406 | 69.2 | |
| 목 | 언론 홍보 | 1,000,000 | 396,251 | 603,749 | 39.6 | |
| 목 | 카라두잉 | 7,380,000 | 4,881,679 | 2,498,321 | 66.1 | |
| 목 | 비주얼 브랜딩 | 18,000,000 | 11,340,852 | 6,659,148 | 63 | |
| 목 | MD 제작 | 49,100,000 | 34,160,112 | 14,939,888 | 69.6 | |
| 목 | 브랜드 매니지먼트 | 60,000,000 | 33,551,959 | 26,448,041 | 55.9 | |
| 목 | 애뉴얼 리포트 | 2,000,000 | 0 | 2,000,000 | 0 | |
| 항 | 회원모금 | 387,776,100 | 404,877,227 | -17,101,127 | 104.4 | |
| 목 | 시민구조치료지원 | 106,000,000 | 103,806,740 | 2,193,260 | 97.9 | |
| 목 | 회원 및 DB관리 | 85,867,300 | 69,829,338 | 16,037,962 | 81.3 | |
| 목 | 회원참여 프로그램 | 5,360,000 | 5,006,330 | 353,670 | 93.4 | |
| 목 | 후원 및 제휴 | 22,000,000 | 50,181,200 | -28,181,200 | 228.1 | |
| 목 | 온라인 모금 | 2,664,000 | 3,917,802 | -1,253,802 | 147.1 | |
| 목 | 오프라인 모금 | 12,384,800 | 6,562,100 | 5,822,700 | 53 | |
| 목 | 나눔정원 운영 | 153,500,000 | 165,573,717 | -12,073,717 | 107.9 | |
| 항 | 교육아카이브 | 106,000,000 | 83,571,128 | 22,428,872 | 78.8 | |
| 목 | 공교육 내 동물권 교육 확산 | 6,100,000 | 3,968,810 | 2,131,190 | 65.1 | |
| 목 | 동물권X미디어 캠페인 | 14,000,000 | 13,581,992 | 418,008 | 97 | |
| 목 | 동물권 아카데미더배움 교육 | 5,800,000 | 2,505,384 | 3,294,616 | 43.2 | |
| 목 | 접속하는 동물권 교육 | 1,700,000 | 1,776,027 | -76,027 | 104.5 | |
| 목 | 카라 동물영화제 | 60,000,000 | 48,244,125 | 11,755,875 | 80.4 | |
| 목 | 동물 전문 도서관 활성화 사업 | 9,000,000 | 7,836,330 | 1,163,670 | 87.1 | |
| 목 |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사업 | 4,000,000 | 3,248,900 | 751,100 | 81.2 | |
| 목 | 활동가 교육 | 1,000,000 | 1,045,560 | -45,560 | 104.6 | |
| 목 | 비건 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 4,400,000 | 1,364,000 | 3,036,000 | 31 | |
| 항 | 정책 | 637,616,000 | 584,236,221 | 53,379,779 | 91.6 | |
| 목 | 동물권 현안 특별기획 | 5,000,000 | 3,313,000 | 1,687,000 | 66.3 | |
| 목 | 학대대응 | 12,000,000 | 9,631,610 | 2,368,390 | 80.3 | |
| 목 | 동물권 법제강화 및 보궐선거 대응 | 16,500,000 | 14,060,420 | 2,439,580 | 85.2 | |
| 목 | 구조 사업 | 70,000,000 | 81,813,722 | -11,813,722 | 116.9 | |
| 목 | 개식용 종식 법정책 추진 | 4,000,000 | 2,779,310 | 1,220,690 | 69.5 | |
| 목 | 복날 캠페인 및현안 대응 | 16,500,000 | 14,455,134 | 2,044,866 | 87.6 | |
| 목 | 개식용산업 철폐(개식용 종식! 경기 도부터!) | 206,500,000 | 198,446,597 | 8,053,403 | 96.1 | |
| 목 |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와 모범 지자체 사례 만들기 | 129,500,000 | 131,812,023 | -2,312,023 | 101.8 | |

단위: 원

| 구분 | 예산과목 | 예산 | 결산 | 증감 | 대비(%) | 비고 |
|----------|--------------------------------|--------------------|--------------------|-------------------|--------------|----|
| 목 | 공원급식소 자율화 | 7,500,000 | 6,647,300 | 852,700 | 88.6 | |
| 목 | 일상의 공존 캠페인 | 1,000,000 | 470,090 | 529,910 | 47 | |
| 목 | 공장식 밀집사육철폐 | 52,000,000 | 43,955,265 | 8,044,735 | 84.5 | |
| 목 | 잘못된 살처분대응 | 6,500,000 | 4,409,730 | 2,090,270 | 67.8 | |
| 목 | 비거니즘을 일상 속으로 및 현안대응 | 3,000,000 | 1,122,950 | 1,877,050 | 37.4 | |
| 목 | 전시 해양포유류 보호 | 6,600,000 | 2,611,889 | 3,988,111 | 39.6 | |
| 목 | 야생동물 착취 산업 반대 | 24,800,000 | 20,638,281 | 4,161,719 | 83.2 | |
| 목 | 야생동물 상생사회 건설 | 1,000,000 | 328,840 | 671,160 | 32.9 | |
| 목 | 방치견 증성화 사업 | 8,000,000 | 3,504,240 | 4,495,760 | 43.8 | |
| 목 | 달봉이네 자립을 위한 시설보호소 | 67,216,000 | 44,235,820 | 22,980,180 | 65.8 | |
| 항 | 더봄센터 운영 | 222,380,000 | 198,022,661 | 24,357,339 | 89 | |
| 목 | 더봄센터 일반관리 | 137,040,000 | 145,878,041 | -8,838,041 | 106.4 | |
| 목 | 결연 | 5,830,000 | 2,203,160 | 3,626,840 | 37.8 | |
| 목 | 설 공조기 내구성 강화를 위한 추가 시 공사 | 49,500,000 | 44,990,000 | 4,510,000 | 90.9 | |
| 목 | 집중 돌봄방 조성 | 12,000,000 | 2,759,650 | 9,240,350 | 23 | |
| 목 | 놀이터 어질리티 및 그늘막 등 | 12,000,000 | 0 | 12,000,000 | 0 | |
| 목 | 더봄 투어 | 2,540,000 | 2,063,330 | 476,670 | 81.2 | |
| 목 | 더봄센터 교육운영 | 3,470,000 | 128,480 | 3,341,520 | 3.7 | |
| 항 | 입양 | 334,771,220 | 329,003,202 | 5,768,018 | 98.3 | |
| 목 | 구조동물 사회화 입양 사업 | 212,120,000 | 208,174,880 | 3,945,120 | 98.1 | |
| 목 | 입양 가족의 날 | 3,620,000 | 204,200 | 3,415,800 | 5.6 | |
| 목 | 입양ON,펫샵OFF온오프 사업 | 7,384,000 | 11,436,724 | -4,052,724 | 154.9 | |
| 목 | 동물관리 | 13,920,000 | 12,988,200 | 931,800 | 93.3 | |
| 목 | 봉사자 관리 | 2,577,220 | 3,765,520 | -1,188,300 | 146.1 | |
| 목 | 입양홍보 및 캠페인 | 4,650,000 | 2,090,768 | 2,559,232 | 45 | |
| 목 | 폼스테이 | 3,000,000 | 2,702,714 | 297,286 | 90.1 | |
| 목 | 유기동물 보호사업(서울시) | 87,500,000 | 87,640,196 | -140,196 | 100.2 | |
| 항 | 동물돌봄 | 443,506,380 | 448,223,640 | -4,717,260 | 101.1 | |
| 목 | 동물돌봄사업 | 418,366,380 | 426,508,307 | -8,141,927 | 101.9 | |
| 목 | 자원봉사자 관리 | 7,640,000 | 5,624,450 | 2,015,550 | 73.6 | |
| 목 | 개체 임시보호 추진 | 16,000,000 | 16,090,883 | -90,883 | 100.6 | |
| 목 | 동물동물 돌봄 매뉴얼 작성 | 1,500,000 | 0 | 1,500,000 | 0 | |
| 관 | 수익사업비 | 302,060,000 | 307,851,125 | -5,791,125 | 101.9 | |
| 항 | 수익사업인건비 | 85,620,000 | 89,343,265 | -3,723,265 | 104.3 | |
| 목 | 급여 | 71,100,000 | 71,100,000 | 0 | 100 | |
| 목 | 상여 | 100,000 | 0 | 100,000 | 0 | |
| 목 | 퇴직급여 | 7,300,000 | 12,073,885 | -4,773,885 | 165.4 | |
| 목 | 사회보험부담금 | 7,120,000 | 6,169,380 | 950,620 | 86.6 | |
| 항 | 재고자산매입 | 75,000,000 | 84,529,214 | -9,529,214 | 112.7 | |
| 목 | 상품매입 | 25,000,000 | 23,145,052 | 1,854,948 | 92.6 | |
| 목 | 약품매입 | 50,000,000 | 61,384,162 | -11,384,162 | 122.8 | |
| 항 | 수익사업운영비 | 126,440,000 | 132,906,636 | -6,466,636 | 105.1 | |
| 목 | 복리후생비 | 7,000,000 | 2,421,720 | 4,578,280 | 34.6 | |


단위: 원

| 구분 | 예산과목 | 예산 | 결산 | 증감 | 대비(%) | 비고 |
|----------|-------------------|--------------------|--------------------|--------------------|--------------|----|
| 목 | 여비교통비 | 500,000 | 204,419 | 295,581 | 40.9 | |
| 목 | 통신비 | 1,500,000 | 178,198 | 1,321,802 | 11.9 | |
| 목 | 전력비 | 4,000,000 | 0 | 4,000,000 | 0 | |
| 목 | 세금과공과금 | 6,500,000 | 9,272,580 | -2,772,580 | 142.7 | |
| 목 | 감가상각비 | 20,000,000 | 17,830,845 | 2,169,155 | 89.2 | |
| 목 | 수선비 | 5,000,000 | 0 | 5,000,000 | 0 | |
| 목 | 보험료 | 240,000 | 0 | 240,000 | 0 | |
| 목 | 교육훈련비 | 3,300,000 | 350,000 | 2,950,000 | 10.6 | |
| 목 | 도서인쇄비 | 200,000 | 0 | 200,000 | 0 | |
| 목 | 사무용품비 | 3,800,000 | 5,152,110 | -1,352,110 | 135.6 | |
| 목 | 소모품비 | 100,000 | 0 | 100,000 | 0 | |
| 목 | 지급수수료 | 14,000,000 | 12,012,923 | 1,987,077 | 85.8 | |
| 목 | 동물관리비 | 20,000,000 | 21,227,920 | -1,227,920 | 106.1 | |
| 목 | 의료소모품비 | 40,000,000 | 63,957,181 | -23,957,181 | 159.9 | |
| 목 | 발송비 | 300,000 | 298,740 | 1,260 | 99.6 | |
| 항 | 수익사업내 직접사업 | 15,000,000 | 1,072,010 | 13,927,990 | 7.1 | |
| 목 | 길고양이 tnr 및 치료 사업 | 5,000,000 | 0 | 5,000,000 | 0 | |
| 목 | 더봄 인근 방치견 증성화 사업 | 10,000,000 | 1,072,010 | 8,927,990 | 10.7 | |
| 관 | 운영비 | 610,519,330 | 707,138,121 | -96,618,791 | 115.8 | |
| 항 | 인건비 | 326,217,330 | 341,120,617 | -14,903,287 | 104.6 | |
| 목 | 급여 | 252,743,030 | 260,560,120 | -7,817,090 | 103.1 | |
| 목 | 상여 | 22,000,000 | 21,959,670 | 40,330 | 99.8 | |
| 목 | 기타인건비 | 2,000,000 | 552,540 | 1,447,460 | 27.6 | |
| 목 | 퇴직급여 | 22,000,000 | 33,528,237 | -11,528,237 | 152.4 | |
| 목 | 사회보험부담금 | 27,474,300 | 24,520,050 | 2,954,250 | 89.2 | |
| 항 | 회의비 | 25,290,000 | 20,145,382 | 5,144,618 | 79.7 | |
| 목 | 조직관리 | 16,590,000 | 12,589,811 | 4,000,189 | 75.9 | |
| 목 | 조직운영 | 8,700,000 | 7,555,571 | 1,144,429 | 86.8 | |
| 항 | 운영비 | 259,012,000 | 345,872,122 | -86,860,122 | 133.5 | |
| 목 | 대외협력비 | 1,000,000 | 1,015,800 | -15,800 | 101.6 | |
| 목 | 복리후생비 | 12,300,000 | 13,044,882 | -744,882 | 106.1 | |
| 목 | 여비교통비 | 4,000,000 | 3,151,806 | 848,194 | 78.8 | |
| 목 | 통신비 | 4,700,000 | 3,668,597 | 1,031,403 | 78.1 | |
| 목 | 수도광열비 | 4,500,000 | 3,600,049 | 899,951 | 80 | |
| 목 | 전력비 | 6,100,000 | 8,336,330 | -2,236,330 | 136.7 | |
| 목 | 세금과공과금 | 12,000,000 | 12,148,260 | -148,260 | 101.2 | |
| 목 | 감가상각비 | 130,000,000 | 219,318,246 | -89,318,246 | 168.7 | |
| 목 | 수선비 | 3,000,000 | 0 | 3,000,000 | 0 | |
| 목 | 보험료 | 3,300,000 | 1,746,917 | 1,553,083 | 52.9 | |
| 목 | 차량유지비 | 10,000,000 | 7,567,190 | 2,432,810 | 75.7 | |
| 목 | 교육훈련비 | 100,000 | 15,000 | 85,000 | 15 | |
| 목 | 도서인쇄비 | 800,000 | 317,510 | 482,490 | 39.7 | |
| 목 | 사무용품비 | 6,000,000 | 6,297,400 | -297,400 | 105 | |

단위: 원

| 구분 | 예산과목 | 예산 | 결산 | 증감 | 대비(%) | 비고 |
|-------------|-----------------|----------------------|----------------------|--------------------|-------------|----|
| 목 | 소모품비 | 300,000 | 0 | 300,000 | 0 | |
| 목 | 지급수수료 | 59,912,000 | 65,501,535 | -5,589,535 | 109.3 | |
| 목 | 발송비 | 500,000 | 142,600 | 357,400 | 28.5 | |
| 목 | 홍보비 | 500,000 | 0 | 500,000 | 0 | |
| 관 | 재산조성비 | 110,064,400 | 79,948,600 | 30,115,800 | 72.6 | |
| 항 | 시설비 | 110,064,400 | 79,948,600 | 30,115,800 | 72.6 | |
| 목 | 자산취득비 | 110,064,400 | 79,948,600 | 30,115,800 | 72.6 | |
| 관 | 과년도 미지급금 | 329,880,306 | 142,720,620 | 187,159,686 | 43.3 | |
| 항 | 과년도 미지급금 | 329,880,306 | 142,720,620 | 187,159,686 | 43.3 | |
| 목 | 유동부채 | 329,880,306 | 142,720,620 | 187,159,686 | 43.3 | |
| 관 | 상환금 | 782,600,000 | 779,784,523 | 2,815,477 | 99.6 | |
| 항 | 부채상환금 | 782,600,000 | 779,784,523 | 2,815,477 | 99.6 | |
| 목 | 원금상환금 | 720,600,000 | 720,000,000 | 600,000 | 99.9 | |
| 목 | 이자지급금 | 62,000,000 | 59,784,523 | 2,215,477 | 96.4 | |
| 관 | 예비비 | 14,334,493 | 0 | 14,334,493 | 0 | |
| 항 | 예비비 | 14,334,493 | 0 | 14,334,493 | 0 | |
| 목 | 예비사업비 | 14,334,493 | 0 | 14,334,493 | 0 | |
| 관 | 잡지출 | 120,000 | 1 | 119,999 | 0 | |
| 항 | 잡지출 | 120,000 | 1 | 119,999 | 0 | |
| 목 | 잡지출 | 120,000 | 1 | 119,999 | 0 | |
| 지출합계 | | 5,878,178,659 | 5,669,095,481 | 209,083,178 | 96.4 | |



A ginger cat with white paws is sitting on a wooden floor next to a glass door frame. The cat is looking towards the camera. The background is a wooden floor and a glass door frame.

2021 동물권행동 카라 회계감사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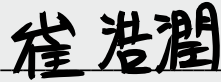
감 사 보 고 서

본인은 2022년 2월 8일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법인')의 2021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감사하였으며,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시사의 방법에 의하여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상기 결산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법인의 정관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8일

감사



최 호 윤

주석(첨부) 재 무 제 표

사단법인 동물권행동카라

제 1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11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동물권행동카라 대표 전 진 경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전 화) 02-3482-0999

재무상태표

제 12(당)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11(전)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단법인 동물권행동카라

(단위 : 원)

| 과목 | 제 12(당) 기 | | | 제 11(전) 기 | | |
|-------------------|---------------|---------------|---------------|---------------|---------------|---------------|
| | 통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통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 자산 | | | | | | |
| Ⅰ. 유동자산 | 1,516,671,779 | 1,393,277,307 | 123,394,472 | 932,365,899 | 875,613,579 | 56,752,320 |
| (1) 당좌자산 | 1,490,811,351 | 1,393,277,307 | 97,534,044 | 920,850,361 | 875,613,579 | 45,236,782 |
|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3) | 1,348,418,169 | 1,256,885,606 | 91,532,563 | 843,250,360 | 820,305,375 | 22,944,985 |
| 외상매출금 | - | - | - | 2,089,373 | - | 2,089,373 |
| 미수금 | 64,764,392 | 64,764,392 | - | 86,641,786 | 55,278,104 | 31,363,682 |
| 대손충당금 | (15,605,312) | (15,605,312) | - | (12,100,000) | - | (12,100,000) |
| 선급금 | 89,627,049 | 86,511,998 | 3,115,051 | 968,842 | 30,100 | 938,742 |
| 선급비용 | 720,623 | 720,623 | - | - | - | - |
| 선납세금 | 2,886,430 | - | 2,886,430 | - | - | - |
| (2) 재고자산 | 25,860,428 | - | 25,860,428 | 11,515,538 | - | 11,515,538 |
| 상품 | 2,631,945 | - | 2,631,945 | 2,981,652 | - | 2,981,652 |
| 약품등 | 23,228,483 | - | 23,228,483 | 8,533,886 | - | 8,533,886 |
| Ⅱ. 비유동자산 | 7,146,036,682 | 7,024,921,099 | 121,115,583 | 7,257,543,173 | 7,118,596,745 | 138,946,428 |
| (1) 투자자산 | 285,469,104 | 285,469,104 | - | 285,469,104 | 285,469,104 | - |
| 수익사업출자금 | 285,469,104 | 285,469,104 | - | 285,469,104 | 285,469,104 | - |
| (2) 유형자산 (주석4) | 6,820,167,578 | 6,699,051,995 | 121,115,583 | 6,931,144,069 | 6,792,197,641 | 138,946,428 |
| 토지 | 560,896,440 | 560,896,440 | - | 560,896,440 | 560,896,440 | - |
| 건물 | 6,494,497,063 | 6,494,497,063 | - | 6,494,497,063 | 6,494,497,063 | - |
| 감가상각누계액 | (591,121,534) | (591,121,534) | - | (428,759,108) | (428,759,108) | - |
| 구축물 | 409,298,693 | 232,325,613 | 176,973,080 | 409,298,693 | 232,325,613 | 176,973,080 |
| 감가상각누계액 | (150,030,349) | (85,257,200) | (64,773,149) | (129,565,416) | (73,640,920) | (55,924,496) |
| 차량운반구 | 32,865,723 | 32,865,723 | - | 32,865,723 | 32,865,723 | - |
| 감가상각누계액 | (32,865,723) | (32,865,723) | - | (32,865,723) | (32,865,723) | - |
| 비품 | 101,065,230 | 88,626,140 | 12,439,090 | 94,363,530 | 81,924,440 | 12,439,090 |
| 감가상각누계액 | (91,830,987) | (79,391,897) | (12,439,090) | (87,484,977) | (75,045,887) | (12,439,090) |
| 의료장비 | 196,120,116 | 20,934,000 | 175,186,116 | 175,186,116 | - | 175,186,116 |
| 감가상각누계액 | (170,230,544) | (3,960,080) | (166,270,464) | (157,288,272) | - | (157,288,272) |
| 시설장치 | 98,536,900 | 98,536,900 | -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37,033,450) | (37,033,450) | - | - | - | - |
| (3)기타 비유동자산 (주석6) | 40,400,000 | 40,400,000 | - | 40,930,000 | 40,930,000 | - |
| 임차보증금 | 40,400,000 | 40,400,000 | - | 40,930,000 | 40,930,000 | - |
| 자산총계 | 8,662,708,461 | 8,418,198,406 | 244,510,055 | 8,189,909,072 | 7,994,210,324 | 195,698,748 |
| 부채 | | | | | | |
| Ⅰ. 유동부채 | 2,165,655,820 | 2,056,167,550 | 109,488,270 | 2,509,880,306 | 2,471,012,479 | 38,867,827 |
| 외상매입금 | 535,172 | - | 535,172 | 81,900 | - | 81,900 |

재무상태표

제 12(당)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11(전)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단법인 동물권행동카라

(단위 : 원)

| 과목 | 제 12(당) 기 | | | 제 11(전) 기 | | |
|------------------|---------------|---------------|---------------|---------------|---------------|---------------|
| | 통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통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 미지급금 | 366,508,539 | 327,899,444 | 38,609,095 | 304,627,739 | 273,723,182 | 30,904,557 |
| 예수금 | 16,510,124 | 15,446,444 | 1,063,680 | 14,038,094 | 13,199,004 | 839,090 |
| 선수금 | 62,124,282 | - | 62,124,282 | 23,660 | - | 23,660 |
| 단기차입금 (주석7) | 1,710,000,000 | 1,710,000,000 | - | 2,180,000,000 | 2,180,000,000 | - |
| 미지급세금 | 7,465,459 | 309,418 | 7,156,041 | 9,074,018 | 2,055,398 | 7,018,620 |
| 미지급비용 | 1,312,244 | 1,312,244 | - | 1,434,895 | 1,434,895 | - |
| 포획틀·교구보증금 | 1,200,000 | 1,200,000 | - | 600,000 | 600,000 | - |
| II. 비유동부채 | - | - | - | 250,000,000 | 250,000,000 | - |
| 주.임.종장기차입금 (주석7) | - | - | - | 250,000,000 | 250,000,000 | - |
| 부채총계 | 2,165,655,820 | 2,056,167,550 | 109,488,270 | 2,759,880,306 | 2,721,012,479 | 38,867,827 |
| 순자산 | | | | | | |
| I. 기본순자산 (주석10) | 328,389,056 | 42,919,952 | 285,469,104 | 328,389,056 | 42,919,952 | 285,469,104 |
| 기본재산 (주석9) | 42,919,952 | 42,919,952 | - | 42,919,952 | 42,919,952 | - |
| 수익사업출연금 (주석8,9) | 285,469,104 | - | 285,469,104 | 285,469,104 | - | 285,469,104 |
| II. 보통순자산 (주석10) | 6,168,663,585 | 6,319,110,904 | (150,447,319) | 5,101,639,710 | 5,230,277,893 | (128,638,183) |
| 이월잉여금 | 5,101,639,710 | 5,230,277,893 | (128,638,183) | 4,080,164,915 | 4,403,656,874 | (323,491,959) |
| 당기운영이익 | 1,067,023,875 | 1,088,833,011 | (21,809,136) | 1,021,474,795 | 826,621,019 | 194,853,776 |
| 순자산총계 | 6,497,052,641 | 6,362,030,856 | 135,021,785 | 5,430,028,766 | 5,273,197,845 | 156,830,921 |
| 부채및순자산총계 | 8,662,708,461 | 8,418,198,406 | 244,510,055 | 8,189,909,072 | 7,994,210,324 | 195,698,748 |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영성과표

제 12(당)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11(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단법인 동물권행동카라

(단위 : 원)

| 과목 | 제 12(당) 기 | | | 제 11(전) 기 | | |
|--------------------|---------------|---------------|--------------|---------------|---------------|-------------|
| | 통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통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 I. 사업수익 (주석11) | 5,731,912,030 | 5,463,691,090 | 268,220,940 | 4,920,207,270 | 4,447,970,601 | 472,236,669 |
| 기부금수익 (주석11) | 5,097,319,052 | 5,097,319,052 | - | 4,023,012,407 | 4,023,012,407 | - |
| 사업수익 (주석11) | 148,479,052 | 148,479,052 | - | 273,383,294 | 273,383,294 | - |
| 보조금수익 (주석11) | 217,892,986 | 217,892,986 | - | 151,574,900 | 151,574,900 | - |
| 기타사업수익 (주석11) | 268,220,940 | - | 268,220,940 | 472,236,669 | - | 472,236,669 |
| II. 사업비용 (주석12) | 4,601,441,579 | 4,317,171,924 | 284,269,655 | 3,843,916,508 | 3,566,665,544 | 277,250,964 |
| (1)사업수행비용 (주석12) | 3,530,144,853 | 3,530,144,853 | - | 2,980,472,820 | 2,980,472,820 | - |
| 1.인력비용 | 1,659,087,786 | 1,659,087,786 | - | 1,451,814,260 | 1,451,814,260 | - |
| 2.시설비용 | 10,652,598 | 10,652,598 | - | 17,337,240 | 17,337,240 | - |
| 3.기타비용 | 1,860,404,469 | 1,860,404,469 | - | 1,511,321,320 | 1,511,321,320 | - |
| (2)일반관리비용 (주석12) | 723,957,433 | 723,957,433 | - | 528,037,218 | 528,037,218 | - |
| 1.인력비용 | 341,395,617 | 341,395,617 | - | 282,990,457 | 282,990,457 | - |
| 2.시설비용 | 227,200,436 | 227,200,436 | - | 141,819,782 | 141,819,782 | - |
| 3.기타비용 | 155,361,380 | 155,361,380 | - | 103,226,979 | 103,226,979 | - |
| (3)모금비용 (주석12) | 63,069,638 | 63,069,638 | - | 58,155,506 | 58,155,506 | - |
| 1.기타비용 | 63,069,638 | 63,069,638 | - | 58,155,506 | 58,155,506 | - |
| (4)기타사업비용 (주석12) | 284,269,655 | - | 284,269,655 | 277,250,964 | - | 277,250,964 |
| 1.인력비용 | 89,343,265 | - | 89,343,265 | 72,078,966 | - | 72,078,966 |
| 2.시설비용 | 17,830,845 | - | 17,830,845 | 20,801,937 | - | 20,801,937 |
| 3.기타비용 | 177,095,545 | - | 177,095,545 | 184,370,061 | - | 184,370,061 |
| III. 사업이익 | 1,130,470,451 | 1,146,519,166 | (16,048,715) | 1,076,290,762 | 881,305,057 | 194,985,705 |
| IV. 사업외수익 | 2,688,098 | 2,098,369 | 589,729 | 1,270,654 | 1,247,114 | 23,540 |
| 1.이자수익 | 1,138,954 | 1,121,794 | 17,160 | 890,021 | 879,580 | 10,441 |
| 2.잡이익 | 1,549,144 | 976,575 | 572,569 | 380,633 | 367,534 | 13,099 |
| V. 사업외비용 | 59,784,524 | 59,784,524 | - | 56,086,621 | 55,931,152 | 155,469 |
| 1.이자비용 | 59,784,523 | 59,784,523 | - | 56,068,369 | 55,929,122 | 139,247 |
| 2.잡손실 | 1 | 1 | - | 18,252 | 2,030 | 16,222 |
| V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 - | - | - | - | - |
| V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 | - | - | - | - | - |
| VIII. 법인세차감전당기운영이익 | 1,073,374,025 | 1,088,833,011 | (15,458,986) | 1,021,474,795 | 826,621,019 | 194,853,776 |
| IX. 법인세등 | 6,350,150 | - | 6,350,150 | - | - | - |
| 1.법인세등 | 6,350,150 | - | 6,350,150 | - | - | - |
| X. 당기운영이익 | 1,067,023,875 | 1,088,833,011 | (21,809,136) | 1,021,474,795 | 826,621,019 | 194,853,776 |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12(당)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11(전)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1. 사단의 개요

사단법인 동물권행동카라(이하 “사단법인”)는 비인간동물이 배제된 인간중심주의의 불완전한 생명관을 넘어, 동물이 인간의 일방적인 착취와 이용에서 벗어나 존엄한 생명으로서 그들 본연의 삶을 영위하고,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사회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며 사회 전반의 낙후된 생명존중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식전환 캠페인과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동물복지를 증진을 목적으로 2002년 입양카페 아릅품 설립하여 2005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0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 유기동물 및 위기동물 구조, 구조지원, 보호사업 및 보호소설립·운영
- 콘텐츠 개발 사업 - 서적, 영상, 영화, 사진 외 사업
- 개식용 반대 등 각종 동물보호 캠페인
- 국내 외 동물입양사업
- 동물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 동물보호운동 기금 마련을 위한 각종 모금사업
- 동물보호 관련법 제정 및 개정 참여 사업
-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연구소와 동물 보호와 동물의 권리를 위한 동물권 소송센터 사업

사단법인은 2005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으며, 2017년 9월 29일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재지정 받은 공익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기본재산은 42,920천원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사단법인은 정관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2) 회계 단위 구분

사단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표시하고,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수익과 비용은 ‘기타사업’부문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두 회계단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통합' 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사단법인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방법 등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은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과 매입 할인 등을 취득원가에 가감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 구입가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 등에 의해 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고, 자산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으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연수에 따라 건물과 구축물은 정액법을 그 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과 목 | 내 용 연 수 |
|-------|---------|
| 건물 | 40년 |
| 구축물 | 20년 |
| 차량운반구 | 5년 |
| 집기비품 | 5년 |
| 의료장비 | 5년 |
| 시설장치 | 5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 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표시방법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및 정부보조금 등은 해당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의 제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와 상각방법 등

1)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무형자산을 개별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로 구성되며, 매입할인 등을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하고 있으며, 취득자금에 대한 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교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 등에 의해 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고, 자산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으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상각방법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상각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과 목 | 내 용 연 수 |
|-------|---------|
| 소프트웨어 | 5년 |

최근 보고기간 이후 무형자산의 사용방법, 기술적 진보 그리고 시장가격의 변동과 같은 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내용연수 등에 대한 종전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최근의 기대와 달라진 경우 잔존가치, 상각방법 또는 상각기간의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표시방법

상각액과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과목에서 직접 차감하여 기재하고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6) 기본순자산

사단법인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어 주무관청등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을 기본순자산으로 분류하며, 이들 재산의 취득 금액을 기본순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정기에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7) 보통순자산

보통순자산은 기본순자산이 아닌 순자산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의 집합체 또는 이를 취득하기 위한 재원을 받은 기금재산 및 특정목적의 적립금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수익·비용

당 사단법인은 수익·비용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사단법인에 유입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사업수익

사단법인의 공익목적사업 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액을 사업수익으로 분류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및 일반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은 사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기부금수익

사단법인의 기부금수익은 사용계약여부 및 수익의 원천과 기부금품의 종류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지정하여 수입된 지정후원금, 사단법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충당을 목적으로 기부된 비지정후원금 및 현물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사업수익

사단법인의 사업수익은 교육사업으로 발생하는 교육운영 및 교육부대 수입, 법개정 사업 및 학대대응 사업으로 발생하는 분담금 및 소송 수입, 지자체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교육 및 실태연구 사업으로 발생하는 용역수입, 동물 입양맞춤비 및 행사참가비 등의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보조금수익

사단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교부 받는 지원금과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 받은 금전을 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특정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재정보조금을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여 관련 조건이 충족되어 사용되는 시점에 보조금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4)기타사업수익

사단법인의 기타사업수익은 수의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동물 용품 판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의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용품 판매로 인한 수익은 진료행위의 제공 및 용품이 판매되는 시점에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과 할인 및 환입은 총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0) 사업비용

사단법인의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및 일반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 등은 사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은 당 사단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수혜단체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당 사단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분배비용, 당 사단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인력비용, 당 사단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과 관련된 시설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일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3)모금비용

모금비용은 모금홍보, 모금캠페인, 기부자 관리, 기부금 관련 수수료 등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4)기타사업비용

기타사업비용은 수의 의료서비스의 제공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1) 퇴직급여

사단법인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여 연금의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확정된 부담금을 납부하며, 당기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법인세비용

사단법인은 법인세비용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법인세비용차감순이익과 법인세는 각각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계정과목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와 전기말 현재 법인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과 목 | 종류 | 예입처 | 당기 | | | 전기 | | |
|-------------------|---------|-----------|-----------|-----------|-----------|---------|---------|---------|
| |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합계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합계 |
| 현금 및 현금성자 산 | 현금 | - | - | - | - | - | - | - |
| | 보통예금 | 국민은행 | 38,815 | - | 38,815 | 13,395 | - | 13,395 |
| | | 기업은행 | 7,119 | - | 7,119 | 2,815 | - | 2,815 |
| | | 농협 | 20,445 | - | 20,445 | 7,655 | - | 7,655 |
| | | 신한은행 | 18,961 | - | 18,961 | 19,019 | - | 19,019 |
| | | 우리은행 | 1,003,600 | 6,171 | 1,009,772 | 647,915 | - | 647,915 |
| | | SC제일은행 | 148,483 | - | 148,483 | 121,495 | 5,177 | 126,672 |
| | KEB하나은행 | 19,463 | 85,361 | 104,824 | 8,012 | 17,768 | 25,780 | |
| 합계 | | 1,256,886 | 91,533 | 1,348,418 | 820,305 | 22,945 | 843,250 | |

4. 유형자산의 내용

(1) 당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과 목 | 기초잔액 | 취득 | 대체 | 감가상각비 | 기말잔액 |
|-------|-----------|---------|----|---------|-----------|
| 토지 | 560,896 | - | - | - | 560,896 |
| 건물 | 6,065,738 | - | - | 162,362 | 5,903,376 |
| 구축물 | 279,733 | - | - | 20,465 | 259,268 |
| 차량운반구 | - | - | - | - | - |
| 비품 | 6,879 | 6,702 | - | 4,346 | 9,234 |
| 의료장비 | 17,898 | 20,934 | - | 12,942 | 25,890 |
| 시설장치 | - | 98,537 | - | 37,033 | 61,503 |
| 합계 | 6,931,144 | 126,173 | - | 237,149 | 6,820,168 |

(2)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과 목 | 기초잔액 | 취득 | 대체 | 감가상각비 | 기말잔액 |
|--------|-----------|---------|-------------|---------|-----------|
| 토지 | 560,896 | - | - | - | 560,896 |
| 건물 | 1,743,044 | 191,876 | 4,246,942 | 116,125 | 6,065,738 |
| 구축물 | 300,198 | - | - | 20,465 | 279,733 |
| 차량운반구 | - | - | - | - | - |
| 비품 | 1,938 | 9,434 | - | 4,494 | 6,879 |
| 의료장비 | 25,407 | 4,320 | - | 11,829 | 17,898 |
| 건설중인자산 | 4,009,192 | 237,750 | (4,246,942) | - | - |
| 합계 | 6,640,676 | 443,380 | - | 152,913 | 6,931,144 |

(3) 당기와 전기말 현재 토지의 공시지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과 목 | 소재지 | 면적(㎡) | 장부가액 | 2021년 | 2020년 |
|-----|--------------|-------|---------|-----------|-----------|
| 토지 | 서울시 잔다리로 122 | 247.9 | - | 2,204,079 | 1,964,608 |
| 토지 | 파주시 금곡리230외 | 4,069 | 560,896 | 557,558 | 535,402 |

(4) 당기말 현재 담보설정 된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과 목 | 소재지 | 장부가액 | 설정금액 | 설정권자 |
|-----|---------------|-----------|-----------|---------|
| 건물 | 마포구 서교동 457-5 | 1,640,260 | 2,976,000 | KEB하나은행 |
| 토지 | 마포구 서교동 457-5 | - | | |

5.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기 | | | 전기 | | |
|--------|---------|--------|---------|---------|-------|---------|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합계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합계 |
| 사업수행비용 | 125,514 | - | 125,514 | 84,031 | - | 84,031 |
| 일반관리비용 | 33,528 | - | 33,528 | 16,873 | - | 16,873 |
| 기타사업비용 | - | 12,074 | 12,074 | - | 4,818 | 4,818 |
| 합계 | 159,043 | 12,074 | 171,117 | 100,904 | 4,818 | 105,722 |

6. 기타 비유동자산

당기와 전기말 현재 기타 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과목 | 내용 | 당기 | 전기 |
|-------|--------------|--------|--------|
| 임차보증금 | 사설보호소 지원 | 40,000 | 40,000 |
| | 렌트카 계약보증금 | - | 530 |
| | 더봄센터 복합기 보증금 | 400 | 400 |
| 합계 | | 40,400 | 40,930 |

7. 차입금

당기와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과목 | 대출종류 | 차입처 | 이자율(%) | 당기 | 전기 | 상환방법 |
|----------|------------|-------|---------|-----------|-----------|-----------|
| 단기차입금 | 공공시설일반자금대출 | 하나은행 | 3.2 | 310,000 | 430,000 | 원금균등 분할상환 |
| | 공공시설일반자금대출 | 하나은행 | 3.0~3.6 | 1,400,000 | 1,750,000 | 거치식상환 |
| 주임종장기차입금 | 임직원 차입 | 임순례 외 | 3.8 | - | 250,000 | 만기일시상환 |
| 합계 | | | | 1,710,000 | 2,430,000 | |

8. 출연금

당기와 전기의 출연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잔액 | 285,469 | 285,469 |
| 기말잔액 | 285,469 | 285,469 |

9.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당기와 전기말 현재 기본순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기 | | 전기 | |
|----------|---------|---------|---------|---------|
| | 취득원가 | 평가금액 | 취득원가 | 평가금액 |
| 출연금 | 285,469 | 285,469 | 285,469 | 285,46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2,920 | 42,920 | 42,920 | 42,920 |
| 합계 | 328,389 | 328,389 | 328,389 | 328,389 |

10.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당기말 현재 순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공익목적사업 | | 기타사업 | | 합계 | |
|--------|--------|-----------|---------|-----------|---------|-----------|
| | 기본순자산 | 보통순자산 | 기본순자산 | 보통순자산 | 기본순자산 | 보통순자산 |
| | | 잉여금 | | 잉여금 | | 잉여금 |
| 전기초 | 42,920 | 4,403,657 | 285,469 | (323,492) | 328,389 | 4,080,165 |
| 전기운영이익 | - | 826,621 | - | 194,854 | - | 1,021,475 |
| 전기말 | 42,920 | 5,230,278 | 285,469 | (128,638) | 328,389 | 5,101,640 |
| 당기초 | 42,920 | 5,230,278 | 285,469 | (128,638) | 328,389 | 5,101,640 |
| 당기운영이익 | - | 1,088,833 | - | (21,809) | - | 1,067,024 |
| 당기말 | 42,920 | 6,319,111 | 285,469 | (150,447) | 328,389 | 6,168,664 |

11. 사업수익

(1) 고유목적사업

당기와 전기의 고유 목적사업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과 목 | 구분 | 내역 | 당기 | 전기 | |
|-------|-----------|-----------|-----------|-----------|-----------|
| 기부금수익 | 지정 기부금수익 | 1:1결연 | 408,818 | 295,100 | |
| | | 더봄센터 운영 | 166,876 | 285,877 | |
| | | 동물돌봄비 지원 | 318,239 | 66,375 | |
| | | 사설보호소 지원 | 9,603 | 53,581 | |
| | | 시민구조치료 지원 | 51,719 | 73,086 | |
| | | 학대대응 및 구조 | 153,052 | 181,775 | |
| | | 사육공해방프로젝트 | 130,728 | - | |
| | | 기타 지정기부금 | 94,530 | 69,665 | |
| | | 소계 | 1,333,565 | 1,025,460 | |
| | 비지정 기부금수익 | 비지정 기부금 | 3,763,755 | 2,997,552 | |
| | | 소계 | 3,763,755 | 2,997,552 | |
| | | 합계 | | 5,097,319 | 4,023,012 |

(단위 : 천원)

| 과 목 | 구분 | 내역 | 당기 | 전기 |
|------|------|---------------|-----------|-----------|
| 사업수익 | 교육수입 | 교육 강의 및 강사 활동 | 12,183 | 7,486 |
| | 정책수입 | 정책 토론회 참가 외 | 7,958 | - |
| | 용역수입 | 지자체 용역사업 | 27,227 | 155,600 |
| | 기타수입 | 입양 맞춤비 및 물품판매 | 101,111 | 110,298 |
| | 소계 | | | 148,479 |
| 합계 | | | 5,245,798 | 4,296,396 |

(2) 국고보조사업

당기와 전기의 보조금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내역 | 당기 | 전기 |
|--------------------------|---------|---------|
| 서울특별시 - 민관협력유기동물임시보호사업 | 87,393 | - |
| 서울특별시 -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 10,000 | 14,000 |
| 서울특별시 - 도시정비구역동물보호활동시범사업 | 120,500 | 120,325 |
| 영화진흥위원회 - 국내영화제육성지원사업 | - | 15,000 |
| 고용노동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 | 2,250 |
| 합계 | 217,893 | 151,575 |

(3) 기타사업

당기와 전기의 기타사업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내역 | 당기 | 전기 |
|--------|---------|---------|
| 병원상품매출 | 28,289 | 26,745 |
| 병원약품매출 | 63,316 | 61,088 |
| 기타진료수익 | 176,617 | 384,404 |
| 합계 | 268,221 | 472,237 |

12. 사업비용

(1) 당기와 전기의 주요 사업 및 사업별 수행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 원)

| 구분 | 주요사업 | 인력비용 | 시설비용 | 기타비용 | 합계 |
|--------|--------|-----------|-----------|-------------|------------|
| 고유목적사업 | 교육사업 | 6,009,280 | 2,472,000 | 65,089,848 | 73,571,128 |
| | 더봄센터사업 | 725,000 | 2,028,400 | 138,150,261 | - |

(단위 : 원)

| | | | | | |
|--------|-----------|---------------|------------|---------------|---------------|
| | 동물돌봄사업 | 21,445,240 | 300,000 | 426,478,400 | 448,223,640 |
| | 사설보호소지원사업 | 1,776,380 | 370,000 | 42,089,440 | 44,235,820 |
| | 임양사업 | - | 439,500 | 241,170,716 | 241,610,216 |
| | 정책사업 | 43,371,150 | 4,693,147 | 370,117,104 | 418,181,401 |
| | 홍보사업 | 4,134,000 | 59,651 | 93,916,876 | 98,110,527 |
| | 회원모금사업 | 1,800,000 | 30,900 | 339,976,689 | 341,807,589 |
| | 사업운영인건비 | 1,505,607,885 | - | - | 1,505,607,885 |
| | 소계 | 1,584,868,935 | 10,393,598 | 1,716,989,334 | 3,312,251,867 |
| 국고보조사업 | 국고보조사업 | 74,218,851 | 259,000 | 143,415,135 | 217,892,986 |
| | 소계 | 74,218,851 | 259,000 | 143,415,135 | 217,892,986 |
| 합계 | | 1,659,087,786 | 10,652,598 | 1,860,404,469 | 3,530,144,853 |

② 전기

(단위 : 원)

| 구분 | 주요사업 | 인력비용 | 시설비용 | 기타비용 | 합계 |
|--------|-----------|---------------|------------|---------------|---------------|
| 고유목적사업 | 교육사업 | 28,379,000 | 912,400 | 37,537,841 | 66,829,241 |
| | 더봄센터사업 | 1,930,000 | 4,883,900 | 134,978,836 | 141,792,736 |
| | 동물돌봄사업 | 3,192,690 | 2,100,900 | 579,571,219 | 584,864,809 |
| | 사설보호소지원사업 | - | 160,000 | 42,147,069 | 42,307,069 |
| | 임양사업 | 509,250 | 442,000 | 107,593,200 | 108,544,450 |
| | 정책사업 | 49,372,320 | 7,488,040 | 288,526,249 | 345,386,609 |
| | 홍보사업 | 17,118,200 | 30,000 | 76,769,297 | 93,917,497 |
| | 회원모금사업 | - | 1,320,000 | 128,248,999 | 129,568,999 |
| | 사업운영인건비 | 1,317,936,510 | - | - | 1,317,936,510 |
| | 소계 | 1,418,437,970 | 17,337,240 | 1,395,372,710 | 2,831,147,920 |
| 국고보조사업 | 국고보조사업 | 33,376,290 | - | 115,948,610 | 149,324,900 |
| | 소계 | 33,376,290 | - | 115,948,610 | 149,324,900 |
| 합계 | | 1,451,814,260 | 17,337,240 | 1,511,321,320 | 2,980,472,820 |

(2) 당기와 전기의 인력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 천원)

| 구분 | 사업수행비용 | | 일반관리비용 | | 모금비용 | 기타사업비용 | 합계 | | |
|---------|--------|-----------|--------|---------|--------|--------|--------|-----------|--------|
| | 국고보조사업 | 고유목적사업 | 국고보조사업 | 고유목적사업 | 고유목적사업 | 기타사업 | 국고보조사업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 직원급여 | - | 1,097,354 | | 260,560 | - | 71,100 | - | 1,357,914 | 71,100 |
| 상여금 | - | 139,469 | | 21,960 | - | 0 | - | 161,428 | 0 |
| 퇴직급여 | - | 125,514 | | 33,528 | - | 12,074 | - | 159,043 | 12,074 |
| 사회보험부담금 | - | 114,991 | | 24,520 | - | 6,169 | - | 139,511 | 6,169 |
| 기타인건비 | 74,219 | 107,542 | | 828 | - | 0 | 74,219 | 108,369 | 0 |
| 계 | 74,219 | 1,584,869 | - | 341,396 | - | 89,343 | 74,219 | 1,926,265 | 89,343 |

② 전기

(단위 : 천원)

| 구분 | 사업수행비용 | | 일반관리비용 | | 모금비용 | 기타사업비용 | 합계 | | |
|---------|--------|-----------|--------|---------|--------|--------|--------|-----------|--------|
| | 국고보조사업 | 고유목적사업 | 국고보조사업 | 고유목적사업 | 고유목적사업 | 기타사업 | 국고보조사업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 직원급여 | - | 1,036,723 | 2,250 | 227,443 | - | 61,200 | 2,250 | 1,264,166 | 61,200 |
| 상여금 | - | 74,987 | - | 14,317 | - | 100 | - | 89,305 | 100 |
| 퇴직급여 | - | 84,031 | - | 16,873 | - | 4,818 | - | 100,904 | 4,818 |
| 사회보험부담금 | - | 101,723 | - | 21,302 | - | 5,961 | - | 123,026 | 5,961 |
| 기타인건비 | 33,376 | 120,974 | - | 805 | - | - | 33,376 | 121,778 | - |
| 계 | 33,376 | 1,418,438 | 2,250 | 280,740 | - | 72,079 | 35,626 | 1,699,178 | 72,079 |

(3) 당기와 전기의 시설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 천원)

| 구분 | 사업수행비용 | | 일반관리비용 | 모금비용 | 기타사업비용 | 합계 | | |
|-------|--------|--------|---------|--------|--------|--------|---------|--------|
| | 국고보조사업 | 고유목적사업 | 고유목적사업 | 고유목적사업 | 기타사업 | 국고보조사업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 지급임차료 | 259 | 5,275 | 400 | - | - | 259 | 5,675 | - |
| 감가상각비 | - | - | 219,318 | - | 17,831 | - | 219,318 | 17,831 |
| 차량유지비 | - | 5,118 | 7,482 | - | - | - | 12,601 | - |
| 수선비 | - | - | - | - | - | - | - | - |
| 계 | 259 | 10,394 | 227,200 | - | 17,831 | 259 | 237,594 | 17,831 |

② 전기

(단위 : 천원)

| 구분 | 사업수행비용 | | 일반관리비용 | 모금비용 | 기타사업비용 | 합계 | | |
|-------|--------|--------|---------|--------|--------|--------|---------|--------|
| | 국고보조사업 | 고유목적사업 | 고유목적사업 | 고유목적사업 | 기타사업 | 국고보조사업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 지급임차료 | - | 10,443 | 470 | - | - | - | 10,913 | - |
| 감가상각비 | - | - | 132,111 | - | 20,802 | - | 132,111 | 20,802 |
| 차량유지비 | - | 6,894 | 5,623 | - | - | - | 12,518 | - |
| 수선비 | - | - | 3,616 | - | - | - | 3,616 | - |
| 계 | - | 17,337 | 141,820 | - | 20,802 | - | 159,157 | 20,802 |

(4) 당기와 전기의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 천원)

| 구분 | 사업수행비용 | | 일반관리비용 | 모금비용 | 기타사업비용 | 합계 | | |
|-------|--------|---------|--------|--------|--------|--------|---------|--------|
| | 국고보조사업 | 고유목적사업 | 고유목적사업 | 고유목적사업 | 기타사업 | 국고보조사업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 지급수수료 | 7,354 | 190,111 | 75,497 | 63,070 | 12,013 | 7,354 | 328,677 | 12,013 |
| 도서인쇄비 | 2,899 | 75,636 | 1,585 | - | - | 2,899 | 77,221 | - |
| 복리후생비 | - | 24,511 | 15,608 | - | 2,422 | - | 40,119 | 2,422 |

(단위 : 천원)

| 구분 | 사업수행비용 | | 일반관리비용 | 모금비용 | 기타사업비용 | 합계 | | |
|-------|---------|-----------|---------|--------|---------|---------|-----------|---------|
| | 국고보조사업 | 고유목적사업 | 고유목적사업 | 고유목적사업 | 기타사업 | 국고보조사업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 동물치료비 | 94,993 | 536,264 | - | - | - | 94,993 | 536,264 | - |
| 동물관리비 | 29,302 | 519,039 | - | - | 22,300 | 29,302 | 519,039 | 22,300 |
| 기타 | 8,868 | 371,429 | 62,671 | - | 140,361 | 8,868 | 434,100 | 140,361 |
| 계 | 143,415 | 1,716,989 | 155,361 | 63,070 | 177,096 | 143,415 | 1,935,420 | 177,096 |

② 전기

(단위 : 천원)

| 구분 | 사업수행비용 | | 일반관리비용 | 모금비용 | 기타사업비용 | 합계 | | |
|-------|---------|-----------|---------|--------|---------|---------|-----------|---------|
| | 국고보조사업 | 고유목적사업 | 고유목적사업 | 고유목적사업 | 기타사업 | 국고보조사업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 지급수수료 | 38,620 | 117,991 | 57,054 | 58,156 | 3,468 | 38,620 | 233,200 | 3,468 |
| 도서인쇄비 | 9,213 | 69,435 | 856 | - | 116 | 9,213 | 70,291 | 116 |
| 복리후생비 | - | 23,693 | 5,070 | - | 5,878 | - | 28,763 | 5,878 |
| 동물치료비 | 57,655 | 535,191 | - | - | - | 57,655 | 535,191 | - |
| 동물관리비 | 2,804 | 297,087 | - | - | 20,579 | 2,804 | 297,087 | 20,579 |
| 기타 | 7,656 | 351,975 | 40,246 | - | 154,331 | 7,656 | 392,222 | 154,331 |
| 계 | 115,949 | 1,395,373 | 103,227 | 58,156 | 184,370 | 115,949 | 1,556,755 | 184,370 |

13.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14. 중요거래 내역

당기와 전기 중 단일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15. 재무제표의 확정 및 승인

법인의 재무제표는 2022년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 될 예정입니다.

A woman wearing a blue uniform and a white face mask is holding a brown, curly-haired dog. The background is slightly blurred, showing another person in a similar uniform. The overall tone is professional and caring.

2022 동물권행동 카라 사업계획 및 예산

2022동물권행동 카라 사업목표(안)

2022 동물권행동 카라 사업계획(안)

2022 동물권행동 카라 예산(안)

2022 동물권행동 카라 사업목표(안)

카라의 선택과 집중,
2022년 카라의 사업목표 6가지

1

더봄센터 2년, 동물권행동카라 20년

- 시민들과 함께 하는 더봄센터 2주년 기념
- 동물권행동 카라 20년! 다가올 20년의 비전과 목표 수립
- 언택트 사회 안에서 공격적인 홍보활동, 디지털 지면에 동물권 캠페인 확장
- 카라와 더 가깝게! 회원 참여 프로그램, 봉사활동 확대
- 꼼꼼한 회원관리 데이터 기반 구축으로 회원 서비스 체계화와 연대강화

2

잔인한 동물생산/무차별 동물판매업에 대한 공격적 대응

-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행위 중식을 위한 펫샵 폐쇄 진행
- 반려동물 정책활동과 입양의 전진기지! 더봄센터의 영향력 확장
- 동물돌봄의 표준화와 아류품의 입양지원으로 국내외 입양 촉진
- 사설보호소 달봉이네의 야생견 130마리 전원 입양 프로젝트 제1막, 전원구조편 완결

3

비정상을 정상으로! 2022년은 개식용 종식의 원년으로

- 개식용 종식의 실천 로드맵 구축과 실행을 위한 선도
- 개농장, 개도살장 폐쇄를 위한 현장 활동 적극 개선
-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축산법·동물보호법 등 법제 개선 캠페인 실행
-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국전, 대한민국 진돗개 방치와 식용도살 본격 대응
- 개농장 조사보고에 이은 한국의 개도살장 산업 분석 보고서 발간

4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 현장으로 가는 동물권교육

- 카라 동물영화제에서 서울 동물영화제로! 동물영화제의 입지 공고화
-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차세대 동물권 리더 양성
- 47종+ 신규 동물권 학습지도안 개발로 공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
- 공교육 내 동물권 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및 교사 네트워크 구축
-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의 모니터링 플랫폼을 제공해 시민참여 운동 심화

5

만연한 학대에 강력한 제동을 걸다

- 학대와 위기 상황 동물에 대한 발 빠른 대응
- 동물 학대 범죄 관련 카라 전문 위원단을 조성하여 전문적 대응 체계를 마련
- 길고양이 혐오 문화 개선 및 공존을 위한 방향성을 사회적으로 전파
- 시민의 손으로 동물을 구조하다! 시민구조치료지원 사업 확대
- 1m 목줄학대, 잔반학대, 임신학대 없는 마을! 방치동물을 위한 캠페인 전개

6

반려동물을 넘어, 농장동물로!

- 농장동물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위한 생츄어리 건립 모색
- 공장식 축산의 상징, 감금틀 폐지 캠페인과 비거니즘 확산
- 반복되는 살처분을 막아라! 생명존중 반영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 촉구
- 사육곰 종식을 이끄는 민간 사육곰 생츄어리 설립 캠페인과 돌봄 모델 제시
- 지각력 있는 존재, 농장동물 행동풍부화 활동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

2022 동물권행동 카라 사업계획(안)

법정책 개선, 학대 대응, 동물 구조 활동

I. 사업목표

1. 2021년 발의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동물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대통령 선거 및 지방 선거 공약에 선진화된 동물권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끌며 그 이행을 촉구한다.
2. 동물에게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학대임을 알리고 학대 방지 캠페인을 강화한다.
3. 동물학대 범죄에 관하여 전문가 자문위원을 두어 학대 사건 대응력을 높인다.
4. 위기 상황에 놓인 동물들을 구조하고 카라의 구조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한다.

II. 사업내용

1. 동물권 법제 강화 운동 및 2022 선거 대응 사업

○ 동물권 법제 강화 운동과 현안 대응

- 법동물 관련 현행 법령들(동물보호법, 진도개보호육성법, 야생생물법, 생물다양성보전법, 축산법, 동물원수족관법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제를 이슈화하고 개선 운동을 펼친다. 천연기념물인 진돗개의 복지가 확보되도록 법제를 전면 개정하고, 비인도적 유해야생동물 포획 제도를 시정하며, 보호소를 사칭하는 신종 펫숍을 규제하기 위해 현안 대응하며 법제 강화를 추동한다.
- 법률 전문가 등 각 이슈에 맞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동물권 현안 대응으로 의제를 선점하여 이슈화 및 공론화함으로써 실질적 변화를 촉구한다.

○ 21대 대선 및 제8회 전국지방선거 대응

- 동물권 대선 연대를 기반으로 대통령 선거(3/9) 및 전국지방선거(6/1) 후보자들에게 동물권 정책을 제안하며,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후 당선자의 정책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2. 학대 대응 사업

○ 학대 사건 대응 및 홍보 활동

-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부검 의뢰하며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때 카라 채널은 물론 언론사, 방송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건을 공격적으로 알리며, 현장감 있는 활동 상황을 시민들에게 전달한다.

○ 방치 학대 예방 캠페인

- 동물을 훔치기 및 혹서기에 외부 방치하는 행위, 좁은 틀에 가둬 두거나 짧은 줄에 묶어두는 행위도 심각한 동물학대임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 ‘우리 마을 방치 학대 동물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사례를 수집하고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한다. 이때, 실질적인 처벌 사례를 만들어냄으로써 방치도 학대임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킨다.

○ 방치견 중성화 및 환경 개선 활동

- 반려동물 캠페인의 일환으로 방치견 중성화 및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침으로써 복지가 낙후된 개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 학대 예방 정책 개선 활동

-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하여 카라 자문위원단을 조직함으로써 전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는 동물 혐오 문화에 대응하고, 온라인 범죄 수사 시스템 마련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개진한다.
- 수의법의학 발전을 위해 수의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구축한다.
-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동물학대 예방 교육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

3. 구조 사업

- 빠른 구조 결정을 위한 논의 체계 구축 및 구조 진행
 - 길고양이의 경우 특히 빠른 구조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많으므로, 구조 후 방사를 원칙으로 하여 구조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 구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및 관리하며, 구조 건별로 이슈리포트를 정리하고 개별 동물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 반려동물 등록과 중성화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동물 유기 및 애니멀 호딩 발생을 예방한다.
 - 소위 ‘들개’와 그 자견들을 적극 구조하여 번식을 막고 지자체 안락사 시행을 방지한다.

III. 예산

| 사업명 | 예산(단위: 원) |
|------------------------------|-------------|
| 동물권 법제 강화 운동 및 2022 선거 대응 사업 | 16,650,000 |
| 학대대응 | 12,500,000 |
| 동물구조사업 | 249,000,000 |

분야별 동물권 운동

I. 사업목표

1. 개식용 철폐 - 2022년 개식용 종식 원년을 목표로 개농장을 폐쇄하기 위한 법제 개선 활동을 적극 개진하고, 보신탕 수요 절벽화를 추동해 개식용 종식을 앞당긴다.
2. 농장동물 - 카라의 팜 생츠퍼리 건립을 추진하며 채식 선택권 확대 운동을 전개하고, 이와 동시에 지배적인 공장식 축산 및 비과학적 방역 정책의 문제를 사회에 환기시켜 법제 개선을 이끈다.
3. 전시아생동물 - 국내 최초 민간 주도의 '사육곰 생츠퍼리' 건립으로 사육 야생동물 복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수족관 사육 포기 해양포유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무분별한 유해야생동물 살상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올바른 상생사회를 건설한다.
4.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보호소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5. 길고양이 혐오 문화를 개선하고 공존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널리 알린다.

II. 사업내용

1. 개식용 철폐 사업

○ 2022, 비정상을 정상으로, 개식용 종식으로!

-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연내 개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구성될 수 있도록 당국과 적극 협력하며, 이와 동시에 개식용 종식의 당위성을 알리는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서명 운동을 펼친다.
- 국내 개 도살장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통해 동물의 임의 도살이 가진 위법성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액션을 추동한다.

○ 복날 캠페인 및 복날 현안 대응 사업

- 불법 유통되는 개 식육 문제, 음식물 쓰레기 개농장 급여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복날 캠페인을 실시하여 식약처와 환경부를 압박한다.
- 유일하게 현존하는 전통 개 시장인 대구 칠성시장의 전면 폐쇄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치며 시민 액션을 추동한다.

2. 농장동물 사업

○ 팜 생츠퍼리 조성 및 비거니즘 확산 사업

- 연내 조성될 임시 팜 생츠퍼리를 거점으로 시민과 농장동물의 만남 기회를 제공하며 농장동물의 생명이 지닌 가치 인식을 확산한다.
- 비거니즘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농장동물의 복지 현황을 조사한다.

-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의 채식 급식, 우유 급식 실태를 조사하고 채식 선택권을 주요 사회적 의제로 부상시킨다.
- 10/1 세계 채식인의 날을 기념하여 비거니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대시민 정보 제공 활동을 펼친다.

○ 공장식 밀집사육 철폐 및 농장동물 현안 대응 사업

- 공장식 밀집사육을 철폐하기 위해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 및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공장식 축산 규제 강화를 이끈다.
- 반복되는 가축 살처분과 보상 문제, 축산업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알려져 이슈화하며, 생명 존중 가치가 반영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
- 농장동물 복지 정책 및 팜 생츄어리 관련 시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3. 전시/야생동물 사업

○ 사육곰 생츄어리 건립 사업

- 사육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 시설의 확보를 촉구하며, 사육곰 민간 생츄어리 건립을 위해 부지 확보 및 시설 설계 등을 진행한다. 기초 돌봄뿐 아니라 행동 풍부화가 이뤄지는 등 최선의 복지가 확보된 공간을 제공하여 사육곰의 변화를 기록한다.
- 사육곰 불법 증식 및 방치 학대에 대해서는 엄벌을 촉구하며, 남은 사육곰에 대한 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 야생동물 상생사회 구축 및 현안 대응 사업

- 수입 고래류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현안을 이슈화한다. 또한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에 있어 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 정부의 살처분에 가까운 유해야생동물 포획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한다.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수입과 유기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해 예방책이 마련되도록 한다.

4. 길고양이 사업

○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 지원

- 기준을 마련하여 꾸준히 TNR과 돌봄을 실시하고 밥자리를 청결히 유지하는 케어테이커의 급식소 제작 지원 신청을 받는다.
- 급식소 설치 후 케어테이커가 지자체 TNR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급식소 관리 및 길고양이 돌봄을 유도하며 모니터링한다.
- 주거시설을 제외한 관공서, 재래시장, 근린공원 등 공동 이용 공간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공식 설치되도록 돕고 케어테이커 활동을 지원하며

꾸준히 소통 및 모니터링한다.

○ 마을 길고양이 TNR 지원

- 더봄센터 인근 마을의 길고양이 개체 정보 및 밥자리를 파악하여 TNR을 지원한다.
- TNR 이후에도 꾸준한 길고양이 돌봄이 이뤄지도록 캠페인 진행 및 모니터링한다.

○ 지자체 TNR 모니터링

- 전국의 지자체 TNR 사례 제보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입이 필요해 보이는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
- TNR 관련 현안을 모아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중성화 고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 길고양이 인식 개선 캠페인

- 길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각종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길고양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카드뉴스, 리플렛 등을 제작하며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 고양이 관련 현안 발생 시 적극 대응하며 필요 시 시민의 참여를 추동한다.

5. 반려동물 사업

○ 달봉이네 사설보호소 해소를 위한 구조/사회화/입양 활동

- (2021년 카라가 달봉이네 70마리를 구조하여 현재 72마리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2022년 50~60마리를 목표로 구조를 시도하며 치료/사회화를 통해 입양 활동으로 연계하고(돌봄팀/입양팀 협업) 달봉이네 소장님의 향후 거취 마련을 돕는다.
- 달봉이네 기존 구조 동물이 더봄센터에 오래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여, 달봉이네 현장에서부터 사회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조 동물의 빠른 입양을 도모한다.
- 2021~2022년 카라의 달봉이네 사설보호소 지원 활동을 정리하여 자료화한다.
- 재개발, 유기, 펫숍, 미중성화 등이 야기하는 사설보호소 문제를 드러내며, 수년간 카라의 지원 속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된 보호소에서도 동물복지, 환경개선, 사회화에 한계가 있었음을 알린다. 사설보호소는 답이 될 수 없으며 근본적 예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봉사활동 조직, 사료 등 각종 물품 지원

- 달봉이네 사설보호소 일상 유지 및 위기 대응을 위해 봉사활동을

- 총괄한다. (정책행동팀이 총괄하되, 월별로 각 팀이 돌아가며 봉사활동을 조직한다.)
- 달봉이네 보호소에 사료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며, 태백 보호소 사료 지원을 유지한다.
-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사설보호소 선별 및 지원
-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 기준을 보완하여 체계를 마련하고, 신청 접수된 보호소 현장 답사 결과를 조직에 공유하며,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 및 홍보한다.
 - 사설보호소 관련 입법/정책 회의에 참가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보호소 신고제 도입 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나눔정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설보호소 지원 사료 물량을 조정하고 배분함에 있어 추가적인 캠페인 여지가 있을지 더봄운영팀과 함께 모색해 본다.
- 소위 들개화가 우려되거나 방치된 개들의 선별적 중성화 지원
- 소위 들개화가 우려되는 개, 복지가 낙후된 시골개, 애니멀 호딩 피해견 등 방치견을 대상으로 중성화를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구조나 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벌인다.
 - 중성화 지원 시 카라 동물병원이나 (개체가 많을 시) 수의사회와 연계하며, 이후 방치 문제가 반복되거나 심화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한다.
 - 카라 중성화 지원 매뉴얼을 보완 및 활용한다.
- 소위 들개의 실태 확인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한 공존 방향 모색
- 우선 관찰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소위 들개의 사냥 여부, 음식물 섭취 공급원 등을 확인하여 들개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 성견의 경우, 2021년 카라가 제안한 중성화 후 서식지 방사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한다.
- 진도개 보호를 위한 관련법 총체적 개정 추진
- 낙후된 환경에서 외면받고 있는 진도개의 현실을 대중에게 알린다.
 - 토종개라 하면서도 동물복지 개념이 전무한 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오작동 현실을 알리며 기존 법제 변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끈다.
 - 모든 진도개에 대한 진정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에 대한 총체적 개정을 추진하며, PNR과 함께 대안 입법 활동을 전개한다.

III. 예산

| 사업명 | 예산(단위: 원) |
|----------------------------|-------------|
| 2022, 비정상을 정상으로, 개식용 종식으로! | 20,350,000 |
| 복날 캠페인 및 복날 현안 대응 | 14,300,000 |
| 팜 생츠퍼리 조성 및 비거니즘 확산 | 117,500,000 |
| 공장식 밀집사육 철폐 및 농장동물 현안 대응 | 8,500,000 |
| 사육곰 생츠퍼리 건립 | 102,000,000 |
| 야생동물 상생사회 구축 및 현안 대응 | 16,600,000 |
| 길고양이 사업 | 40,000,000 |
| 반려동물 사업 | 101,566,000 |

교육/문화 활동

I. 사업목표

1. 제5회 영화제를 맞아 ‘카라동물영화제’에서 ‘서울동물영화제’로 이름을 변경하고 영화제의 외연을 넓히며 영화제 정체성을 단단하게 다져간다.
2.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모니터링 플랫폼을 제공하여 시청자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미디어 속 동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끈다.
3. 쿡쿡도서관을 기반으로 동물책의 가치를 조명하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카이브 시스템과 함께 교육·문화·정보·기록을 공유하는 동물권 운동을 선도한다.
4.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세스를 정비 및 강화하고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과 동물권 아카데미 더배움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여 동물권 교육 활동의 전문성을 키운다.
5. 공교육 내 동물권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며 학습지도안 자료집을 적극 배포하고, 현직 교사의 동물권 교육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관심 많은 교사들을 네트워킹한다.

II. 사업내용

1. 동물영화제

○ 제5회 서울동물영화제

- 상영작 편수와 관객 규모를 전년 대비 50% 확대하고, 주 관객층인 2-30대 관객에 맞는 단체 관람, 티켓 이벤트, 부대행사를 기획하여 새로운 관객을 유입시킨다.
- 경쟁 섹션을 도입하여 국내외 좋은 작품을 상영할 기회를 확대한다.
- 동물권 주요 이슈를 놓치지 않는 쟁점 섹션과 대중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섹션을 적절히 배치한다.

2. 동물권×미디어 캠페인

○ <영화/TV에 동물이 나왔나요?>(가안) 모니터링 툴 개발

- 웹 기반 분석도구와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다양한 모니터링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정리함으로써 정부, 기업, 창작자들이 미디어 속 동물 안전에 유의하도록 이끈다.

○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정기 콘텐츠 제작

- 미디어 가이드라인 주요 콘텐츠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사회적 이슈 발생 시 가이드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SNS 대응한다.

3. 지식기반 동물권 운동

○ 쿵쿵도서관 활성화

- 교육·문화·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동물권 운동에 관심이 있는 쿵쿵리더 300명을 모집 및 관리하여 뉴스레터 발행, 소모임 운영 등으로 접점을 확대한다.
- 오프라인 도서관을 주2일 집중 운영함과 동시에 전자도서관 전자책을 계속 공급한다.
- 북토크, 신간 도서 소개, 책 이벤트 등 다양한 도서관 행사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카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 카라의 활동 기록을 보존하고 공개하는 동물권 아카이브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검색 기능을 보강한다.
- 8년간 전화상담을 통해 접수된 시민들의 문의, 요청,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 및 분석하고 온라인 전시로 구현하여 시민과 함께 해온 카라 활동의 의미를 부각한다.

4. 카라 동물권 교육

○ 접속하는/찾아오는 동물권 교육

- 온라인 교육에 적합한 활동 방식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 자료를 재구성하고, 안정적인 오프라인 교육을 위해 교육 장소를 재정비하여 고정 운영한다.
- 2021년 대비 1.5배 이상 교육 회차를 늘리고, 내방 교육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의 동물권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 쿵쿵도서관 교육

- 동물책 전문 도서관으로서 동물권 교육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 쿵쿵도서관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동물책, 카라동물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단편 영화, 2022년 카라의 주요 활동 주제 등을 고려하여 쿵쿵리더 확장 및 도서관 방문객 유치를 도모한다.

○ 동물권 아카데미 더배움(집중강좌, 틴카라)

- 더배움 집중강좌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카라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동물권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 10대 동물권 활동가와 함께 2022 교육감 선거에 대응함으로써 교육감 후보들에게 10대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동물권 교육에 관한 각 후보의 정책을 질의하여 그 답변을 정리 및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다.

5. 공교육 기반 동물권 교육

○ 교육 자료 개발 및 배포

- 현직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연령대별 동물권 학습지도안 자료집을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함으로써, 더 많은 학교 현장에서 동물권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교사 네트워킹

- 카라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교사층을 형성하여 동물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동물권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 교육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교육 자료를 축적하고 교육 문의 채널을 단일화한다. 또한, 현직 교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육 사례와 후기를 게시하여 교사 네트워킹을 돕는다.

III. 예산

| 사업명 | 예산(단위: 원) |
|---------------|-------------|
| 제5회 서울동물영화제 | 138,700,000 |
| 동물권×미디어 캠페인 | 18,000,000 |
| 지식 기반 동물권 캠페인 | 14,000,000 |
| 카라 동물권교육 | 11,800,000 |
| 공교육 기반 동물권 교육 | 7,500,000 |

회원 지원 활동

I. 사업목표

1. 기존 정기후원 회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정기후원 회원의 가입을 증대하여 단체 본연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일상 속에서 쉽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를 마련한다.
3. 신규 회원들이 카라의 활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후원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4. 회원들의 직접 체험 및 참여로 동물권 의식 증진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II. 사업내용

1. 회원 확대

○ 회원 데이터 관리

- 후원금 미납으로 인한 회원 이탈, 후원금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납 회원들에게 TM, 메일링을 실시하여 높은 출금율을 유지한다.
- 회원 증가에 대비해 산재된 후원 데이터를 정리하고, 후원자 관리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한다.
- 후원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체계화하여 후원 기간에 따라 차별화된 리워드를 증정한다.
- 각종 기념일 기부 및 유산 기부 등 후원 프로그램을 론칭한다.

2. 회원 캠페인

○ 회원 참여 프로그램 진행

- 신규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라와 더불어 첫걸음’을 온라인 진행한다.
- 회원들이 일상에서 동물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캠페인을 기획한다.
- 카라 회원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더봄센터를 기반으로 회원 한정 봉사를 진행한다.

III. 예산

| 사업명 | 예산(단위: 원) |
|------------|------------|
| 회원 및 DB 관리 | 74,997,000 |
| 회원 참여 프로그램 | 5,535,000 |

모금/배분 활동

I. 사업 목표

1. 다양한 후원사의 후원 유치로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후원을 지속시킨다.
2. 기존 후원 팬클럽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팬클럽 후원을 유치한다.
3. 모금 플랫폼을 카라 활동을 알리는 캠페인 툴로 활용하여 동물권 운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특정 활동에 대한 지정 모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
4. 회원, 일반 시민과의 대면행사를 통해 결원후원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정기 후원회원을 확대한다.
5. 시민이 구조한 동물의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여 동물의 치료를 돕고, 동물 구조는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동물보호 활동이라는 인식을 확산한다.

II. 사업 계획

1. 모금 기획

○ 후원 및 제휴

- 단체의 활동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 또는 홍보를 후원사와 매치시켜, 기업 인프라를 통해 카라 활동을 외화한다.
- 기업과 카라가 함께하는 온라인 캠페인 챌린지를 진행한다.
- 기업 및 소상공인에 적합한 리워드를 제공하여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후원을 유치한다.

○ 팬클럽 후원

- 팬클럽의 후원 확대를 위해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을 외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한다.
- 기부 리워드를 확대해 후원 그룹의 목적성과 동기 부여를 강화한다.

○ 온라인 모금

- 경직된 온라인 모금 환경을 상시 주시하여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다양한 모금을 투명하게 진행한다.
- 대형 구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해당 사안에 대한 지정 모금을 SNS 상에서 신속하게 진행하여 관련 활동을 널리 알린다.

○ 오프라인 모금

- 카라의 활동과 결원후원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신규 회원을 유치한다.
- 카라의 활동을 기반으로 제작한 상품을 한정 판매하여 후원금을 모은다.

2. 시민구조 치료지원

○ 시민구조 치료지원

- 시민들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 구조 동물의 치료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공정하게 심사하며, 지원 사례를 공유한다.

- 지원 시기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예산을 2개월 단위로 배분하여 집행한다.

III. 예산

| 사업명 | 예산(단위: 원) |
|-----------|-------------|
| 후원 및 제휴 | 55,940,000 |
| 온라인 모금 | 6,064,000 |
| 오프라인 모금 | 13,850,000 |
| 시민구조 치료지원 | 120,000,000 |

캠페인 전략 활동

I. 사업목표

1. 전문가 아웃소싱을 통해 개식용 종식 캠페인을 대국민 캠페인으로 확장한다.
2. 미디어 채널 운영, 콘텐츠 마케팅을 통해 카라 채널을 성장시킨다.
3. 공격적인 브랜딩과 PM으로 공신력 있는 동물단체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4. 언론과의 협업, 언론 대행을 통해 카라의 캠페인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린다.
5. MD/애뉴얼리포트 제작을 통해 단체의 캠페인과 성과를 홍보한다.

II. 사업내용

1. 미디어 채널 운영

- 소셜미디어 운영·관리
 - 카라의 SNS 채널이 캠페인 플랫폼으로서 각 팀의 캠페인을 적절하게 노출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관리한다.
 - 콘텐츠/그래픽 등의 제작 수위 및 규칙을 논의하여 확립하고 <동물권행동 카라 미디어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작하여 활동가와 시민에게 배포한다.
- 콘텐츠 제작 및 피드백
 - 모든 채널의 게시물 검수를 통해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고 매체 내 노출도 상승, 브랜딩을 지속한다.

2. 영상 제작

- 모금 캠페인 광고 영상 제작
 - 모금 캠페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식용 종식, 길고양이 보호, 동물학대 금지, 동물영화제 등 네 개 이상의 주제로 광고 영상을 제작한다.
- 캠페인 영상 편집
 - 각 팀의 캠페인에 필요한 영상을 제작한다.

3. 언론 홍보

- 보도자료 배포
 - 매체 노출도 상승, 빠른 이슈 선점을 위해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이용한다.

○매체 관리

방송·신문·뉴미디어 매체의 인터뷰 및 촬영 요청에 응하며 관련 실무를 진행한다.

○기고

- 매월 1~2회 ‘애니멀피플’에 카라 동물들의 이야기를 기고한다.
- 외부에서 원고 청탁이 왔을 때 유관 팀에 협조 요청을 하여, 최대한 다양한 매체에 카라의 활동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한다.

○언론홍보 대행

- 동물영화제 등 주요 활동 및 캠페인에 대해서는 대행사를 통해 홍보한다.

4. 뉴스레터 발송

○뉴스레터 리뉴얼

- 게시물 나열식 레터 디자인에서 벗어나, 조금 더 친절하고 가독성이 높도록 뉴스레터를 리뉴얼한다. 카라만의 디자인이 돋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 요소를 강화한다.

○관리 및 실무

- 뉴스레터 구독자를 관리하고, 월별 뉴스레터를 제작 및 발송하며, 뉴스레터 발송 성과를 분석한다.

5. 브랜드 및 콘텐츠 디자인

○브랜드 가이드라인 제작

- 레이아웃, 색깔, 타이포그래피 등 현재 가이드를 수정, 보완하여 세부적인 가이드를 마련한다.
- SNS, 제작물, 영상, 포스터 등 분류를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카라의 정기캠페인 브랜딩

- 입양파티 등 카라의 정기 행사 및 캠페인을 카라의 행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브랜딩한다.

○의류 제작

- 계절과 용도에 맞는 활동가 의류와 용품을 제작한다.

○카라의 영상 브랜딩

- 카라 영상의 사운드, 썸네일, 버튼 및 네비게이션, 서체(자막), 색깔, 사운드 등의 가이드를 마련하고 용도에 맞게 디자인 톤을 구분한다.

○ 홈페이지 디자인

- 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디자인 환경을 구축하며, 공신력 있는 비영리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현한다.
- 홈페이지 내 영문 페이지를 개발하여페이팔 후원 환경을 최적화한다.

○ 콘텐츠 디자인

- 각 시기와 이슈에 따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제작물을 디자인한다.
- 온/오프라인의 콘텐츠 및 제작물을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맞춰 디자인한다.

6. MD 및 애뉴얼 리포트 제작

- 브랜드·캠페인을 홍보하는 MD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후원금을 유치한다.
- 제작한 MD를 후원사·입양가족 선물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021년 카라 활동, 카라 구조 동물 사진, 앞으로의 미션 등을 담아 애뉴얼 리포트를 제작한다.

7. 동물권 캠페인 확장

○ 캠페인 랜딩페이지 제작

- 광고를 통해 유입된 잠재적 후원자에게 카라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을 인지시키고 후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원페이지를 제작한다.
- 개식용 종식 등 4개의 캠페인 랜딩페이지 제작을 목표로 한다.

○ 광고 집행

- 네이버의 브랜드 검색, 배너, 파워링크 광고와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 광고를 집행한다.

○ 데이터 분석

- 구글 애널리틱스, 네이버 광고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AARRR 퍼널을 분석한다.
-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B 테스트 등을 진행해 전환율을 높이도록 한다.

8. 제휴 캠페인

-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셀럽과 연대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
- 마케팅 협력 요청 등을 유관 팀에 연결하거나 캠페인 전략팀이 직접 수용함으로써 캠페인을 수행한다.
- 카라 캠페인 소개서(가칭) 등을 제작하여 각 브랜드 홍보팀에 전달한다.

III. 예산

| 사업명 | 예산(단위: 원) |
|------------|-------------|
| 미디어 채널 운영 | 4,000,000 |
| 영상 제작 | 4,500,000 |
| 언론 홍보 | 16,000,000 |
| 브랜드 디자인 | 15,900,000 |
| MD 제작 | 43,500,000 |
| 애뉴얼리포트 제작 | 8,000,000 |
| 동물권 캠페인 확장 | 499,400,000 |
| 제휴 캠페인 | 1,000,000 |

조직역량강화 활동

I. 사업목표

1. 더블어슈센터의 공간을 용도와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재구성한다.
2.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회계 및 근태를 관리하여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3. 직무 관련 역량 강화, 비영리/동물 단체 활동가로서의 의식 및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활동가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행한다.
4. 조직의 5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 비전과 목표를 새로이 수립할 수 있도록 간담회,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5. 동물권행동 카라 20주년을 맞이해 카라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20년의 비전을 수립한다.

II. 사업내용

1. 시설 관리

- 더블어슈센터 건물 내 노후된 시설을 적극 보수한다.
- 더블어슈센터의 모든 공간을 용도와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재구성한다.
- 비대면 시대 온라인 교육 및 회의를 위해 스튜디오를 마련한다.

2. 조직 운영

- 총회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회의 체계 매뉴얼을 수립한다.
- 참혹한 동물학대 현장을 접하거나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쌓이는 활동가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 직무 교육, 신입 활동가 교육, 중간 관리자 교육,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워크숍 등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행한다.

3. 동물권행동 카라 20주년 기념

- 카라의 20년을 지지해 준 회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마련한다.
- 팜 생츠퍼리 건립 등 카라의 중장기 5대 비전을 수립한다.
- 20주년을 기념하여 내부 간담회, 공식 행사 등을 진행한다.
- 동물권행동 카라의 20년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기록물 전시를 진행한다.

III. 예산

| 사업명 | 예산(단위: 원) |
|---------------|------------|
| 시설관리 | 68,000,000 |
| 조직운영 | 28,700,000 |
| 동물권행동 카라 20주년 | 4,800,000 |

더봄센터 운영 활동

I. 사업목표

1. 더봄센터의 시설과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한다.
2. 결연후원을 확대하여 더봄센터 동물들의 안정적인 돌봄 및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3. 더봄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며 동물보호소의 모범적 운영 모델을 제시한다.
4. 더봄 봉사대를 운영하여 동물 돌봄을 지원하고 봉사대 풀을 확장한다.
5. 나눔정원을 통해 위기동물에 대한 관심을 실질적 물품 후원으로 연계한다.
6. 카라 동물관리 시스템 ‘감스(KAMS, Kara Animal Management System)’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개체 정보를 기록 및 공유한다.

II. 사업내용

1. 결연

- 신규 결연 홍보 및 후원 확대
 - 신규 결연 개체를 50마리 추가하고, 결연후원 회원 500명 증가를 목표로 한다.
 - 결연후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개체별 결연 소식을 게시하고 홍보한다.
- <결연 만남의 날> 행사 진행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연 동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2. 나눔정원

- 후원 물품 상시 수령 및 배분
 - 상시 후원되는 물품을 정리, 기록하여 매달 내역을 작성하고 후기를 게시한다.
 - 동물 돌봄 활동 및 사설 보호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품을 배분한다.

3. 더봄 봉사대

- 더봄 봉사대 양성
 -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영상 및 봉사 매뉴얼을 제작하고, 봉사자 휴식 공간을 개선하며, 봉사 레벨에 따른 리워드 제공으로 지속적 참여와 장기 봉사를 유도한다.
 - 정기 봉사 외에 그림, 촬영, 사회화 등 다채로운 봉사 기회를 제공한다.

○더봄 단체봉사 유치

- 단체 및 기업의 지속적인 봉사를 유치하여 카라와의 연대 및 후원을 도모한다.

4. 더봄센터 홍보 및 행사 진행

○〈더 알찬〉 투어

- 기업, 셀럽을 포함하여 더봄센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매월 더봄센터 〈더 알찬〉 투어를 진행하며, 시설 투어뿐 아니라 동물권 교육이나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소 운영모델 제시

- 더봄센터 방문을 희망하는 지자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간담회나 동물권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상시 진행한다.

○더봄센터 개관 2주년 기념 개방

- 더봄센터 개관 2주년을 맞이하여 시설을 일정 기간 개방하여 투어를 제공한다.

○더봄센터 홍보를 위한 콘텐츠사업

- 더봄센터의 일상 소식을 다양한 매체에 상시 게시하며, SNS 라이브를 활용해 더봄센터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공개한다.
- 추모식, 기념일 등 특별 일정에 맞춰 행사를 진행한다.

○캄스 개체 정보 관리

- 신규 구조 동물을 포함하여 카라의 모든 동물을 신속하게 캄스 등록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 캄스 매뉴얼을 보완 및 업데이트하며, 홈페이지 및 SNS 게시되는 내용을 개체별 히스토리에 업로드한다.

5. 지역 사업

○마을 방치견 중성화 지원 및 환경 개선

- 정책행동팀의 방치견 중성화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 현장 이슈에 대응하고 개입한다.
- 동물복지 인식 증진을 위해 동물 방치와 유기는 심각한 학대 행위이며,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해서는 안 되고 중성화는 필수라는 메시지 등을 전파한다.

○마을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 사업

- 더봄센터 주변의 1~2곳을 선정해 급식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지역 케어테이커 양성 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 카라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시범 사업지 내 집중 TNR을 실시한다.

○ 지역 현안 대응

- 파주 지역 내 애니멀호딩 피해 동물의 중성화를 지원하고 지자체 개입을 이끌어 사람과 동물 모두의 상생 복지를 도모한다.
- 파주시 위탁 보호소 및 유기동물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돕는다.

6. 일반 시설 관리 및 동물복지 시설 조성

○ 일반 시설 관리

- 더봄센터의 활동 지원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체 시설을 관리한다.

○ 동물복지 시설 조성

- 구조-돌봄-입양의 선순환을 가속화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돌봄 시스템 전면 개편’에 따라 더봄센터 공간 및 시설을 조성한다.

7. 더봄 핵심과제 총괄 및 역량 강화

○ 더봄 핵심과제 총괄

- 사회화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돌봄 시스템 전면 개편, 입양 가속화를 위한 입양 채널 확대, 더봄센터 매뉴얼 보완 및 업데이트, 카라 동물병원을 구심점으로 한 동물의료 협력 토대 구축 등 더봄센터의 핵심과제를 총괄한다.

○ 더봄 역량 강화

- 회의 체계 수립, 활동가 교육, 비건 지향 문화 조성 등을 통해 더봄센터의 역량을 강화한다.

III. 예산

| 사업명 | 예산(단위: 원) |
|-----------------------|-------------|
| 결연 | 6,420,000 |
| 나눔정원 | 180,000,000 |
| 더봄 봉사대 | 22,520,000 |
| 더봄센터 홍보 및 행사 진행 | 8,738,000 |
| 지역 사업 | 5,500,000 |
| 일반 시설 관리 및 동물복지 시설 조성 | 292,080,000 |
| 더봄 핵심과제 총괄 및 역량 강화 | 10,500,000 |

동물돌봄 활동

I. 사업목표

1. 동물권행동 카라의 구조 동물을 관리하고 더봄센터, 훈련소, 위탁소 개체의 건강 상태, 기질, 사회화 단계 등을 파악하여 개체별 맞춤 돌봄 및 교육을 진행한다.
2. 동물복지와 과학에 기반하여 시기별, 생애주기별, 질환별 맞춤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입양을 촉진한다.
3. 인도주의적인 훈련 방법으로 개체별 기질, 특성, 사회화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4. 케넬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더봄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동물의 사회화 속도 및 복지 수준을 높인다.
5. 동물의 가정위탁을 추진하여 입양 가능성이 낮은 동물에게 가정생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양의 기회를 높이고 시민에게는 봉사 기회를 제공한다.

II. 사업 계획

1. 동물 돌봄

○ 구조동물 돌봄 일원화

- 더봄센터, 훈련소, 위탁소 개체의 건강 상태, 기질, 사회화 단계 등을 파악하고 분류하여 개체별 맞춤 돌봄·교육 계획을 수립 및 진행한다.

○ 동물복지와 과학에 입각한 동물돌봄

- 개/고양이 종별, 나이별, 시기별, 생애주기별, 질환별 필요 돌봄을 실시한다.
- 개체관리표, 돌봄일지, 병원일지 등 돌봄 자료를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한다.
- 동물돌봄 매뉴얼을 3월까지 작성 완료하여 동물보호소 운영의 대안을 제시한다.

2. 동물 사회화 및 훈련

○ 동물 사회화 및 훈련

- 동물의 기질, 특성, 사회화 단계를 파악하여 인도주의적인 방식을 채택한 개체별 훈련 계획을 세우고 실시한다.
- 훈련 종류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더봄센터 동물 교육의 일관된 매뉴얼을 수립한다.

3. 케넬 관리 시스템 정착

○ 케넬 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 및 정착

- 많은 위탁 개체를 더봄으로 흡수하고 개체의 사회화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케넬 관리 시스템을 도입 및 정착시킨다.

- 약 30마리의 동물을 1차 케넬 관리 개체로 선정해 3개월 간 시범 운영하며, 해당 개체에게는 하루에 약 3시간 반~4시간의 야외놀이 시간을 보장한다.
-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 및 확대 여부를 정한다.

4. 가정 위탁

- 입양 가능성 낮은 동물의 가정 위탁 추진
- SNS를 통해 가정위탁자를 모집해 입양 가능성이 낮은 동물의 가정 위탁을 추진한다(10마리 이하). 위탁자에게는 매월 정기 점검, 사료, 간식, 약 등을 제공한다.
- 위탁 기간에 동물이 아프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바로 상황을 점검하고 적절하게 조치한다.

5. 더봄, 해피버스데이

- 구조 동물 생일 축하 행사
- 개농장, 유기, 학대현장에서 구조된 동물들에게 없는 생일을 만들어 주고, 5월 가정의 달에 생일 축하 행사를 진행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탄생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 더봄센터, 훈련소, 위탁소, 아람팜에 있는 모든 동물에게 생일 기념 먹거리를 제공한다.

6. 비결연개체 홍보

- SNS를 통한 비결연개체 홍보
- 더봄센터 비결연개체의 일상, 훈련 진행 사항, 입퇴소, 사망 등 소식을 더봄센터 SNS에 게시한다.
- 2개월 단위로 모든 비결연개체를 1회 이상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III. 예산

| 사업명 | 예산(단위: 원) |
|-------------|-------------|
| 동물 돌봄 | 406,400,000 |
| 동물 사회화 및 훈련 | 203,600,000 |
| 가정 위탁 | 28,000,000 |
| 더봄, 해피버스데이 | 2,000,000 |

동물입양 활동

I. 사업목표

1. 카라 구조 동물을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 입양을 추진하여 평생 가족을 찾아주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한다.
2. 카라 구조 동물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입양률을 높이고, 온/오프라인 입양 행사를 기획하여 입양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3.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을 갖춘 아름폼에서 동물을 관리해 입양 전 충분한 사회화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개체의 사회화 단계에 따라 맞춤 교육을 제공해 입양 기회를 넓힌다.
4. 입양 상담을 제공하면서 동물의 종이나 크기에 따른 편견과 차별,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다양한 캠페인 사업을 통해 올바른 입양문화를 알리며 번식장 및 펫숍 근절에 앞장선다.
5. 아름폼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봉사자 풀을 확대하고, 카라 활동 홍보 또는 직접 참여로 유도한다.

II. 사업 계획

1. 입양 캠페인

- “입양 ON, 펫숍 OFF!” 온앤오프 입양 캠페인
 - 온라인 입양신청서 접수 시 문자 발송 후 검토 및 입양 상담을 진행한다.
 - 입양 확정 시 입양자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개체와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돕고, 필요 시 파양이나 유실에 관한 2차 상담을 진행한다.
 - 매달 고양이 3마리, 개 6마리, 총 9마리 입양을 목표로 하며, 2022년 국내입양 목표는 총 108마리로 한다.
 - 온라인 입양 홍보는 상시 진행하며, 오프라인 입양 행사는 오구데이를 포함하여 상하반기 각 2회씩 진행한다. 긴급 구조로 개체 증가 시 추가 진행할 수 있다.
- 글로벌 입양 캠페인 및 해외단체 입양
 - 구조 동물 중 사회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을 진행한다.
 - 구조 동물 중 입양 가능 개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외단체에 프로필을 공유하며, 입소 일정 확정 후 해외입양 기준에 맞는 진료를 실시해 진료 기록을 단체에 전달한다.
 - 해외입양은 가급적 봉사자를 통해 진행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카고로 출국을 진행하며, 캐나다 이동은 월 4마리 카고 출국을 진행한다.
 - 2022년 해외입양은 월 8마리, 연내 총 96마리를 목표로 한다.
- 입양 후속 관리
 - 입양자의 인스타그램 가입을 의무화하여 입양 후속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 더봄센터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입양 가족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 입양 홍보 및 캠페인

-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구조 동물 입양 홍보, 국내/해외입양 후기, 입양 행사, 해외 이동 봉사 등의 소식을 상시 게시한다.
- 온/오프라인 입양 행사를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알리고, 도살장/번식장에서 구조한 경우 정책 분석과 함께 입양 홍보를 실시한다.
- 아름품 입소 동물의 일상 생활을 통해 ‘진돗개도 실내견’, ‘품종 대신 이름을’, ‘개와 고양이는 친구’ 등 각종 폼스테이(아름품) 사업을 진행한다.
- 펫숍 분양의 문제점, 입양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일부 보호소의 운영상 문제 등을 알려 사지 말고 입양하는 문화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2. 아름품 운영

○ 폼스테이 사업

- ‘진돗개도 실내견’, ‘품종 대신 이름을’, ‘개와 고양이는 친구’ 등 각종 캠페인을 진행한다.
- 진도 믹스 등 대형견의 개체수를 1마리 이상으로 유지하여 큰 개가 실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개와 고양이가 한 공간에서 잘 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달봉이네 보호소 개체 및 사회화가 필요한 구조 개체를 아름품에 입소시켜 사회화 교육을 진행한다.

○ 동물관리

- 더봄센터와 연계하여 사회화 필요 개체, 빠른 입양 진행이 가능한 개체, 사회화 시기가 중요한 어린 개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아름품에 입소하도록 한다.
- 아름품 입소 개체들의 병원 기록 관리 시트를 만들어 관련 활동가들과 공유한다.
-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원진료, 귀청소, 발톱깎기, 몸무게 관리, 목욕 등 동물 돌봄에 필요한 모든 관리를 수행하며, 아름품 외에도 더불어숨센터에 있는 모든 동물의 돌봄을 총괄한다.

○ 아름품 시설관리

- 아름품의 가정집 환경을 유지하고 보수하며, 묘사 확장을 통해 고양이들의 밀집도를 낮춰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 건조기, 체중계 등 동물 관리에 필수적인 물품을 구비하여 돌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 봉사자 관리

- 1일 2명의 종일 봉사자를 고정 배치하고, 오전/오후 봉사자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가 배치하여 활동가의 돌봄 업무를 지원한다.
- 봉사자 매뉴얼을 보완하여 재배포한다.

III. 예산

| 사업명 | 예산(단위: 원) |
|------------|-------------|
| 온앤오프사업 | 9,404,000 |
| 입양가족의 날 | 5,940,000 |
| 글로벌 입양 캠페인 | 353,718,400 |
| 입양홍보 및 캠페인 | 2,300,000 |
| 아름품 운영 | 81,929,999 |

2022 동물권행동 카라 예산(안)

2022년 예산총괄표

단위: 원

| 수입 | | | | |
|--------------|----------------------|----------------------|----------------------|-------------|
| 과목 | 2022년 | 2021년 | 증감 | 대비(%) |
| 전년도 이월금 | 1,490,811,351 | 944,465,899 | 546,345,452 | 57.8 |
| 보조금수입 | 12,600,000 | 241,000,000 | - 228,400,000 | - |
| 기부금수입 | 5,518,542,587 | 4,281,495,396 | 1,237,047,191 | - 94.8 |
| 사업수입 | 108,800,000 | 119,987,364 | - 11,187,364 | - |
| 수익사업수입 | 280,000,000 | 290,000,000 | - 10,000,000 | 28.9 |
| 잡수입 | 1,200,000 | 1,230,000 | - 30,000 | - |
| | | | | |
| | | | | |
| | | | | |
| 수입 합계 | 7,411,953,938 | 5,878,178,659 | 1,533,775,279 | 26.1 |

| 지출 | | | | |
|--------------|----------------------|----------------------|----------------------|-------------|
| 과목 | 2022년 | 2021년 | 증감 | 대비(%) |
| 사업비 | 5,193,708,500 | 3,728,600,130 | 1,465,108,370 | 39.3 |
| 수익사업비 | 303,796,869 | 302,060,000 | 1,736,869 | 0.6 |
| 운영비 | 851,681,600 | 610,519,330 | 241,162,270 | 39.5 |
| 재산조성비 | 68,000,000 | 110,064,400 | -42,064,400 | - 38.2 |
| 과년도 미지급금 | 184,109,221 | 329,880,306 | -145,771,085 | - 44.2 |
| 상환금 | 171,000,000 | 782,600,000 | -611,600,000 | - 78.1 |
| 예비비 | 0 | 14,334,493 | -14,334,493 | - 100.0 |
| 잡지출 | 150,000 | 120,000 | 30,000 | 25.0 |
| 차기이월금 | 639,507,748 | 0 | 639,507,748 | - |
| 지출 합계 | 7,411,953,938 | 5,878,178,659 | 1,533,775,279 | 26.1 |

2022년 수입예산서

단위: 원

| 구분 | 예산과목 | 2022년 | 2021년 | 증감 | 대비(%) | 산출근거 |
|----------|----------------|----------------------|----------------------|----------------------|--------------|--------------------|
| 관 | 전년도 이월금 | 1,490,811,351 | 944,465,899 | 546,345,452 | 57.8 | |
| 항 | 전년도 이월금 | 1,490,811,351 | 944,465,899 | 546,345,452 | 57.8 | |
| 목 | 유동자산 | 1,348,418,169 | 843,250,360 | 505,167,809 | 59.9 | 미사용 전기이월 자산 |
| 목 | 기타유동자산 | 142,393,182 | 101,215,539 | 41,177,643 | 40.7 | 미회수 전기 기부금 외 |
| 관 | 보조금수입 | 12,600,000 | 241,000,000 | -228,400,000 | -94.8 | |
| 항 | 보조금수입 | 12,600,000 | 241,000,000 | -228,400,000 | -94.8 | |
| 목 | 기타 보조금 | 12,600,000 | 241,000,000 | -228,400,000 | -94.8 | 영화제 사업 자금 등 사업 보조금 |
| 관 | 기부금수입 | 5,518,542,587 | 4,281,495,396 | 1,237,047,191 | 28.9 | |
| 항 | 정기후원금 | 3,753,736,000 | 2,986,497,396 | 767,238,604 | 25.7 | |
| 목 | 정기 지정후원금 | 500,000,000 | 356,579,000 | 143,421,000 | 40.2 | |
| 목 | 정기 비지정후원금 | 3,253,736,000 | 2,629,918,396 | 623,817,604 | 23.7 | |
| 항 | 일시후원금 | 1,584,806,587 | 1,144,998,000 | 439,808,587 | 38.4 | |
| 목 | 일시 지정후원금 | 979,864,000 | 768,823,700 | 211,040,300 | 27.4 | |
| 목 | 일시 비지정후원금 | 604,942,587 | 376,174,300 | 228,768,287 | 60.8 | |
| 항 | 기부물품수입 | 180,000,000 | 150,000,000 | 30,000,000 | 20.0 | |
| 목 | 비지정 기부물품 | 180,000,000 | 150,000,000 | 30,000,000 | 20.0 | |
| 관 | 사업수입 | 108,800,000 | 119,987,364 | -11,187,364 | -9.3 | |
| 항 | 교육수입 | 17,600,000 | 11,800,000 | 5,800,000 | 49.2 | |
| 항 | 용역수입 | 0 | 27,227,364 | -27,227,364 | -100.0 | |
| 목 | 지자체 용역수입 | 0 | 27,227,364 | -27,227,364 | -100.0 | |
| 항 | 기타수입 | 92,200,000 | 80,960,000 | 11,240,000 | 13.9 | |
| 목 | 입양맞음비 | 10,800,000 | 7,560,000 | 3,240,000 | 42.9 | |
| 목 | 행사참가비수입 | 2,200,000 | 2,400,000 | -200,000 | -8.3 | |
| 목 | 물품판매수입 | 78,200,000 | 71,000,000 | 7,200,000 | 10.1 | |
| 관 | 수익사업수입 | 280,000,000 | 290,000,000 | -10,000,000 | -3.4 | |
| 항 | 수익사업수입 | 280,000,000 | 290,000,000 | -10,000,000 | -3.4 | |
| 관 | 잡수입 | 1,200,000 | 1,230,000 | -30,000 | -2.4 | |
| 항 | 잡수입 | 1,200,000 | 1,230,000 | -30,000 | -2.4 | |
| 목 | 기타예금이자수입 | 1,030,000 | 910,000 | 120,000 | 13.2 | |
| 목 | 기타잡수입 | 170,000 | 320,000 | -150,000 | -46.9 | |
| | 수입합계 | 7,411,953,938 | 5,878,178,659 | 1,533,775,279 | 26.1 | |

2022년 지출예산서

단위: 원

| 구분 | 예산과목 | 2022년 | 2021년 | 증감 | 대비(%) | 산출근거 |
|----------|---------------------------------------------------|----------------------|----------------------|----------------------|--------------|-----------------------------------------|
| 관 | 사업비 | 5,193,708,500 | 3,728,600,130 | 1,465,108,370 | 39.3 | |
| 항 | 직접사업인건비 | 1,817,007,100 | 1,430,070,430 | 386,936,670 | 27.1 | 더불어숨-더봄의 목적사업 인력 인건비 |
| 목 | 직접급여 | 1,324,925,000 | 1,062,591,310 | 262,333,690 | 24.7 | |
| 목 | 직접상여 | 183,168,000 | 144,200,000 | 38,968,000 | 27.0 | |
| 목 | 직접기타인건비 | 7,368,000 | 30,000,000 | -22,632,000 | -75.4 | 각 사업팀 편입으로 변경 |
| 목 | 직접퇴직급여 | 150,000,000 | 72,600,000 | 77,400,000 | 106.6 | 퇴직연금 기업부담금 포함 |
| 목 | 직접사회보험부담금 | 151,546,100 | 120,679,120 | 30,866,980 | 25.6 | |
| 항 | 캠페인전략 | 592,300,000 | 166,480,000 | 425,820,000 | 255.8 | |
| 목 | 영상 제작 | 4,500,000 | 10,000,000 | -5,500,000 | -55.0 | |
| 목 | 미디어 채널 운영 | 4,000,000 | 19,000,000 | -15,000,000 | -78.9 | |
| 목 | 언론 홍보 | 16,000,000 | 1,000,000 | 15,000,000 | 1,500.0 | |
| 목 | (부)카라두입 | 0 | 7,380,000 | -7,380,000 | -100.0 | 운영비로 편입 |
| 목 | 브랜드 디자인 사업 | 15,900,000 | 18,000,000 | -2,100,000 | -11.7 | |
| 목 | 재휴 캠페인 | 1,000,000 | 0 | 1,000,000 | 0.0 | |
| 목 | MD 제작 | 43,500,000 | 49,100,000 | -5,600,000 | -11.4 | |
| 목 | 동물권 캠페인 확장 | 499,400,000 | 60,000,000 | 439,400,000 | 732.3 | |
| 목 | 애뉴얼 리포트 제작 | 8,000,000 | 2,000,000 | 6,000,000 | 300.0 | |
| 항 | 회원모금 | 276,386,000 | 387,776,100 | -111,390,100 | -28.7 | |
| 목 | 시민구조치료지원 | 120,000,000 | 106,000,000 | 14,000,000 | 13.2 | |
| 목 | 회원 및 DB관리 | 74,997,000 | 85,867,300 | -10,870,300 | -12.7 | |
| 목 | 회원참여 프로그램 | 5,535,000 | 5,360,000 | 175,000 | 3.3 | |
| 목 | 후원 및 제휴 | 55,940,000 | 22,000,000 | 33,940,000 | 154.3 | |
| 목 | 온라인 모금 | 6,064,000 | 2,664,000 | 3,400,000 | 127.6 | |
| 목 | 오프라인 모금 | 13,850,000 | 12,384,800 | 1,465,200 | 11.8 | |
| 목 | (부)나눔정원 운영 | 0 | 153,500,000 | -153,500,000 | -100.0 | 더봄센터 운영팀으로 편입 |
| 항 | 교육아카이브 | 190,000,000 | 106,000,000 | 84,000,000 | 79.2 | |
| 목 | 교사를 위한 동물권 학습지도안 개발 | 5,000,000 | 6,100,000 | -1,100,000 | -18.0 | 사업명변경-공교육 내 동물권 교육 확산 |
| 목 | 동물권X미디어 캠페인 | 18,000,000 | 14,000,000 | 4,000,000 | 28.6 | |
| 목 | 동물권 아카데미더배움 교육 | 3,700,000 | 5,800,000 | -2,100,000 | -36.2 | |
| 목 | 카라 동물권교육 | 5,800,000 | 1,700,000 | 4,100,000 | 241.2 | 사업명변경-접속하는 동물권 교육 |
| 목 | 카라 동물영화제 | 138,700,000 | 60,000,000 | 78,700,000 | 131.2 | |
| 목 | 동물 전문 도서관 활성화 사업 | 9,000,000 | 9,000,000 | 0 | 0.0 | |
| 목 |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사업 | 5,000,000 | 4,000,000 | 1,000,000 | 25.0 | |
| 목 | (부)활동가 교육 | 0 | 1,000,000 | -1,000,000 | -100.0 | |
| 목 | (부)비건 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 0 | 4,400,000 | -4,400,000 | -100.0 | |
| 목 | 교사 네트워크 | 2,500,000 | 0 | 2,500,000 | 0.0 | |
| 목 |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 2,300,000 | 0 | 2,300,000 | 0.0 | |
| 항 | 정책기획 | 295,900,000 | 342,400,000 | -46,500,000 | -13.6 | |
| 목 | (부)동물권 현안 특별기획 | 0 | 5,000,000 | -5,000,000 | -100.0 | 사업 통합-동물권 법제·현안 및 선거 대응사업 |
| 목 | 동물권 법제·현안 및 선거 대응 사업 | 16,650,000 | 16,500,000 | 150,000 | 0.9 | 사업명 변경-동물권 법제강화 및 보궐선거 대응 |
| 목 | 2022, 비정상을 정상으로, 개식용 종식으로! 복날 캠페인 및 복날 현안대응 사업 | 20,350,000 | 4,000,000 | 16,350,000 | 408.8 | 사업명 변경-개식용 종식 법정책 추진 |
| 목 | (부)개식용산업 철폐(개식용 종식! 경기도부터!) 사업 | 0 | 206,500,000 | -206,500,000 | -100.0 | 사업 통합-2022, 비정상을 정상으로, 개식용 종식으로! |
| 목 | 공장식 밀집사육 철폐 사업 | 8,500,000 | 52,000,000 | -43,500,000 | -83.7 | |
| 목 | (부)잘못된 살처분대응 | 0 | 6,500,000 | -6,500,000 | -100.0 | 사업 통합-공장식 밀집사육 철폐 사업 |
| 목 | (부)비거니즘을 일상 속으로 및 현안대응 | 0 | 3,000,000 | -3,000,000 | -100.0 | 사업 통합-팜 생츠퍼리 조성 과 비거니즘 확산 |
| 목 | 팜 생츠퍼리 조성 과 비거니즘 확산 | 117,500,000 | 0 | 117,500,000 | 0.0 | 사업명 변경-착한여행과 전 시동물 복지증진 및 생츠퍼리 조성 |

단위: 원

| 구분 | 예산과목 | 2022년 | 2021년 | 증감 | 대비(%) | 산출근거 |
|----------|--------------------------------|--------------------|--------------------|--------------------|--------------|-------------------------|
| 목 | (부)전시 해양포유류 보호 | 0 | 6,600,000 | -6,600,000 | -100.0 | 사업 통합-야생동물 상생사회건설사업 |
| 목 | 사육곰 생츄어리 건립사업 | 102,000,000 | 24,800,000 | 77,200,000 | 311.3 | 사업명 변경-야생동물 착취산업 반대 |
| 목 | 야생동물 상생사회건설사업 | 16,600,000 | 1,000,000 | 15,600,000 | 1,560.0 | |
| 항 | 정책행동 | 403,066,000 | 295,216,000 | 107,850,000 | 36.5 | |
| 목 | 사설보호소 지원 사업 | 82,866,000 | 67,216,000 | 15,650,000 | 23.3 | |
| 목 | 학대대응 사업 | 12,500,000 | 12,000,000 | 500,000 | 4.2 | |
| 목 | 구조 총괄 사업 | 249,000,000 | 70,000,000 | 179,000,000 | 255.7 | |
| 목 | 지자체 TNR 모니터링 | 6,000,000 | 0 | 6,000,000 | 0.0 | |
| 목 | 길고양이 돌봄 지원 및 공존 캠페인 | 34,000,000 | 8,500,000 | 25,500,000 | 300.0 | 사업통합-공원급식소 자활화 & 공존캠페인 |
| 목 | 방치견 중성화 및 소위들개 사업 | 18,700,000 | 8,000,000 | 10,700,000 | 133.8 | |
| 목 | (부)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와 모범 지자체 사례 만들 | 0 | 129,500,000 | -129,500,000 | -100.0 | 보조금 사업 종료 |
| 항 | 더봄센터 운영 | 525,758,000 | 222,380,000 | 303,378,000 | 136.4 | |
| 목 | 더봄센터 일반관리 | 187,680,000 | 137,040,000 | 50,640,000 | 37.0 | |
| 목 | 결연 | 6,420,000 | 5,830,000 | 590,000 | 10.1 | |
| 목 | (부)공조기 내구성 강화를 위한 추가 시설 공사 | 0 | 49,500,000 | -49,500,000 | -100.0 | 사업 통합-동물복지 시설조성 사업 |
| 목 | (부)집중 돌봄방 조성 | 0 | 12,000,000 | -12,000,000 | -100.0 | 사업 통합-동물복지 시설조성 사업 |
| 목 | 동물복지 시설조성 사업 | 104,400,000 | 12,000,000 | 92,400,000 | 770.0 | 사업명 변경-놀이터 어질리티 및 그늘막 등 |
| 목 | <더 알찬> 투어 사업 | 2,338,000 | 2,540,000 | -202,000 | -8.0 | 사업명 변경-더봄 투어 |
| 목 | 더봄 봉사대 양성 사업 | 22,520,000 | 3,470,000 | 19,050,000 | 549.0 | 사업명 변경-더봄센터 교육운영 |
| 목 | 더봄센터 개관 2주년 기념 개방 사업 | 3,800,000 | 0 | 3,800,000 | 0.0 | |
| 목 | 더봄센터 홍보 콘텐츠 사업 | 1,900,000 | 0 | 1,900,000 | 0.0 | |
| 목 | 니눔정원 운영 | 180,000,000 | 0 | 180,000,000 | 0.0 | |
| 목 | 지자체 동물보호소 운영모델 제시사업 | 700,000 | 0 | 700,000 | 0.0 | |
| 목 | 더봄 핵심과제 총괄 사업 | 3,000,000 | 0 | 3,000,000 | 0.0 | |
| 목 | 더봄 회의체계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 | 7,500,000 | 0 | 7,500,000 | 0.0 | |
| 목 | 동물복지 확산 더봄 지역 사업 | 5,500,000 | 0 | 5,500,000 | 0.0 | |
| 항 | 입양 | 453,291,400 | 334,771,220 | 118,520,180 | 35.4 | |
| 목 | 글로벌 입양 캠페인 | 353,718,400 | 212,120,000 | 141,598,400 | 66.8 | 사업명 변경-구조동물 사회화 입양 사업 |
| 목 | 입양 가족의 날 | 5,940,000 | 3,620,000 | 2,320,000 | 64.1 | |
| 목 | 입양ON,펫샷OFF온오프 사업 | 9,404,000 | 7,384,000 | 2,020,000 | 27.4 | |
| 목 | (부)동물관리 | 0 | 13,920,000 | -13,920,000 | -100.0 | 사업 통합-폼스데이 |
| 목 | (부)봉사자 관리 | 0 | 2,577,220 | -2,577,220 | -100.0 | 사업 통합-폼스데이 |
| 목 | 입양홍보 및 캠페인 | 2,300,000 | 4,650,000 | -2,350,000 | -50.5 | |
| 목 | 폼스데이 | 81,929,000 | 3,000,000 | 78,929,000 | 2,631.0 | |
| 목 | (부)유기동물 보호사업(서울시) | 0 | 87,500,000 | -87,500,000 | -100.0 | 보조금 사업 종료 |
| 항 | 동물돌봄 | 640,000,000 | 443,506,380 | 196,493,620 | 44.3 | |
| 목 | 동물돌봄사업 | 406,400,000 | 418,366,380 | -11,966,380 | -2.9 | |
| 목 | 개체 사회화 및 훈련 사업 | 203,600,000 | 0 | 203,600,000 | 0.0 | |
| 목 | (부)자원봉사자 관리 | 0 | 7,640,000 | -7,640,000 | -100.0 | 더봄센터 운영팀으로 편입 |
| 목 | 가정 위탁 사업 | 28,000,000 | 16,000,000 | 12,000,000 | 75.0 | 사업명 변경-개체 임시보호 추진 |
| 목 | (부)동물동물 돌봄 매뉴얼 작성 | 0 | 1,500,000 | -1,500,000 | -100.0 | |
| 목 | 더봄, 해피버스테이 | 2,000,000 | 0 | 2,000,000 | 0.0 | |
| 관 | 수익사업비 | 303,796,869 | 302,060,000 | 1,736,869 | 0.6 | |
| 항 | 수익사업인건비 | 92,000,000 | 85,620,000 | 6,380,000 | 7.5 | |
| 목 | 급여 | 71,100,000 | 71,100,000 | 0 | 0.0 | |
| 목 | 상여 | 0 | 100,000 | -100,000 | -100.0 | |
| 목 | 퇴직급여 | 14,500,000 | 7,300,000 | 7,200,000 | 98.6 | |
| 목 | 사회보험부담금 | 6,400,000 | 7,120,000 | -720,000 | -10.1 | |

단위: 원

| 구분 | 예산과목 | 2022년 | 2021년 | 증감 | 대비(%) | 산출근거 |
|----------|-------------------|--------------------|--------------------|--------------------|---------------|------|
| 항 | 재고자산매입 | 85,000,000 | 75,000,000 | 10,000,000 | 13.3 | |
| 목 | 상품매입 | 23,000,000 | 25,000,000 | -2,000,000 | -8.0 | |
| 목 | 약품매입 | 62,000,000 | 50,000,000 | 12,000,000 | 24.0 | |
| 항 | 수익사업운영비 | 126,796,869 | 126,440,000 | 356,869 | 0.3 | |
| 목 | 복리후생비 | 3,196,869 | 7,000,000 | -3,803,131 | -54.3 | |
| 목 | 여비교통비 | 500,000 | 500,000 | 0 | 0.0 | |
| 목 | 통신비 | 300,000 | 1,500,000 | -1,200,000 | -80.0 | |
| 목 | 전력비 | 3,000,000 | 4,000,000 | -1,000,000 | -25.0 | |
| 목 | 세금과공과금 | 500,000 | 6,500,000 | -6,000,000 | -92.3 | |
| 목 | 감가상각비 | 20,000,000 | 20,000,000 | 0 | 0.0 | |
| 목 | 수선비 | 2,000,000 | 5,000,000 | -3,000,000 | -60.0 | |
| 목 | 보험료 | 200,000 | 240,000 | -40,000 | -16.7 | |
| 목 | 교육훈련비 | 3,300,000 | 3,300,000 | 0 | 0.0 | |
| 목 | 도서인쇄비 | 100,000 | 200,000 | -100,000 | -50.0 | |
| 목 | 사무용품비 | 3,100,000 | 3,800,000 | -700,000 | -18.4 | |
| 목 | 소모품비 | 100,000 | 100,000 | 0 | 0.0 | |
| 목 | 지급수수료 | 3,000,000 | 14,000,000 | -11,000,000 | -78.6 | |
| 목 | 동물관리비 | 22,000,000 | 20,000,000 | 2,000,000 | 10.0 | |
| 목 | 의료소모품비 | 65,000,000 | 40,000,000 | 25,000,000 | 62.5 | |
| 목 | 발송비 | 500,000 | 300,000 | 200,000 | 66.7 | |
| 항 | 수익사업내 직접사업 | 0 | 15,000,000 | -15,000,000 | -100.0 | |
| 목 | 길고양이 tnr 및 치료 사업 | 0 | 5,000,000 | -5,000,000 | -100.0 | |
| 목 | 더봄 인근 방치견 중성화 사업 | 0 | 10,000,000 | -10,000,000 | -100.0 | |
| 관 | 운영비 | 851,681,600 | 610,519,330 | 241,162,270 | 39.5 | |
| 항 | 인건비 | 377,031,600 | 326,217,330 | 50,814,270 | 15.6 | |
| 목 | 급여 | 283,260,000 | 252,743,030 | 30,516,970 | 12.1 | |
| 목 | 상여 | 22,896,000 | 22,000,000 | 896,000 | 4.1 | |
| 목 | 기타인건비 | 2,000,000 | 2,000,000 | 0 | 0.0 | |
| 목 | 퇴직급여 | 40,000,000 | 22,000,000 | 18,000,000 | 81.8 | |
| 목 | 사회보험부담금 | 28,875,600 | 27,474,300 | 1,401,300 | 5.1 | |
| 항 | 회의비 | 53,680,000 | 25,290,000 | 28,390,000 | 112.3 | |
| 목 | 조직관리 | 24,980,000 | 16,590,000 | 8,390,000 | 50.6 | |
| 목 | 조직운영 | 28,700,000 | 8,700,000 | 20,000,000 | 229.9 | |
| 항 | 운영비 | 420,970,000 | 259,012,000 | 161,958,000 | 62.5 | |
| 목 | 대외협력비 | 1,200,000 | 1,000,000 | 200,000 | 20.0 | |
| 목 | 복리후생비 | 15,000,000 | 12,300,000 | 2,700,000 | 22.0 | |
| 목 | 여비교통비 | 4,000,000 | 4,000,000 | 0 | 0.0 | |
| 목 | 통신비 | 4,700,000 | 4,700,000 | 0 | 0.0 | |
| 목 | 수도광열비 | 4,500,000 | 4,500,000 | 0 | 0.0 | |
| 목 | 전력비 | 8,500,000 | 6,100,000 | 2,400,000 | 39.3 | |
| 목 | 세금과공과금 | 13,000,000 | 12,000,000 | 1,000,000 | 8.3 | |
| 목 | 감가상각비 | 260,000,000 | 130,000,000 | 130,000,000 | 100.0 | |
| 목 | 수선비 | 3,000,000 | 3,000,000 | 0 | 0.0 | |
| 목 | 보험료 | 3,300,000 | 3,300,000 | 0 | 0.0 | |
| 목 | 차량유지비 | 10,000,000 | 10,000,000 | 0 | 0.0 | |
| 목 | 교육훈련비 | 100,000 | 100,000 | 0 | 0.0 | |
| 목 | 도서인쇄비 | 800,000 | 800,000 | 0 | 0.0 | |
| 목 | 사무용품비 | 10,250,000 | 6,000,000 | 4,250,000 | 70.8 | |
| 목 | 소모품비 | 300,000 | 300,000 | 0 | 0.0 | |
| 목 | 지급수수료 | 81,320,000 | 59,912,000 | 21,408,000 | 35.7 | |
| 목 | 발송비 | 500,000 | 500,000 | 0 | 0.0 | |
| 목 | 홍보비 | 500,000 | 500,000 | 0 | 0.0 | |
| 관 | 재산조성비 | 68,000,000 | 110,064,400 | -42,064,400 | -38.2 | |
| 항 | 시설비 | 68,000,000 | 110,064,400 | -42,064,400 | -38.2 | |
| 목 | 자산취득비 | 68,000,000 | 110,064,400 | -42,064,400 | -38.2 | |

단위: 원

| 구분 | 예산과목 | 2022년 | 2021년 | 증감 | 대비(%) | 산출근거 |
|------|----------|---------------|---------------|---------------|--------|------|
| 관 | 과년도 미지급금 | 184,109,221 | 329,880,306 | -145,771,085 | -44.2 | |
| 항 | 과년도 미지급금 | 184,109,221 | 329,880,306 | -145,771,085 | -44.2 | |
| 목 | 유동부채 | 184,109,221 | 329,880,306 | -145,771,085 | -44.2 | |
| 관 | 상환금 | 171,000,000 | 782,600,000 | -611,600,000 | -78.1 | |
| 항 | 부채상환금 | 171,000,000 | 782,600,000 | -611,600,000 | -78.1 | |
| 목 | 원금상환금 | 120,000,000 | 720,600,000 | -600,600,000 | -83.3 | |
| 목 | 이자지급금 | 51,000,000 | 62,000,000 | -11,000,000 | -17.7 | |
| 관 | 예비비 | 0 | 14,334,493 | -14,334,493 | -100.0 | |
| 항 | 예비비 | 0 | 14,334,493 | -14,334,493 | -100.0 | |
| 목 | 예비사업비 | 0 | 14,334,493 | -14,334,493 | -100.0 | |
| 관 | 잡지출 | 150,000 | 120,000 | 30,000 | 25.0 | |
| 항 | 잡지출 | 150,000 | 120,000 | 30,000 | 25.0 | |
| 목 | 잡지출 | 150,000 | 120,000 | 30,000 | 25.0 | |
| 관 | 차기이월금 | 639,507,748 | 0 | 639,507,748 | 0.0 | |
| 항 | 차기이월금 | 639,507,748 | 0 | 639,507,748 | 0.0 | |
| 목 | 보통재산이월금 | 639,507,748 | 0 | 639,507,748 | 0.0 | |
| 지출합계 | | 7,411,953,938 | 5,878,178,659 | 1,533,775,279 | 26.1 | |



총회 안전심의
정관 개정안



의결 주문사항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정관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개정사유

온라인 회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기관이 아님에도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이후 필요시 내규로 규정하고자 함. 7차의 부분 개정으로 맞지 않는 조문번호들을 정렬하고 모호한 표현들을 명확하게 하고자 전면개정함.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장 총 칙

| | |
|----------------------------------------------------------------------------------------------------------------------------------------------------------------------------------------------------------------------------------------------------------------------------------------------------------------------------------------------------------------------------------------------------------------------------------------------------------------------------------------------------------------------------------------------------------------|------------------------------------------------------------------------------------------------------------------------------------------------------------------------------------------------------------------------------------------------------------------------------------------------------------------------------------------------------------------------------------------------------------------------------------------------------------------------------------------------------------------------------------------------------------------------------------------------------------------------------------------------------------------------------------------------------------------------------------------------------------|
| <p>제1조(명칭)</p> <p>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단체’)라 칭한다.</p> <p>② 이 단체의 영문표기는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로 하고 약칭은 KARA라 한다.</p> <p>제2조(사무소의 위치) 단체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p> <p>제3조(목적) 단체는 동물복지향상과 동물권 증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p> <p>동물학대와 남용 등 동물권 침해에 대한 예방, 교육, 캠페인에 앞장서고,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명존중의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p> | <p>변경사항 없음</p> |
| <p>제4조(사업)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사업 -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2. 유기동물 및 위기동물 구조, 구조지원, 보호사업 및 보호소 설립·운영 3. 콘텐츠 개발 사업 - 서적, 영상, 영화, 사진 외 사업 4. 개식용 반대 등 각종 동물보호 캠페인 5. 국내 외 동물입양사업 6. 동물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7. 동물보호운동 기금 마련을 위한 각종 모금사업 8. 동물보호 관련법 제정 및 개정 참여 사업 9.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연구소와 동물 보호와 동물의 권리를 위한 동물권 소송센터 사업 10. 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 | <p>제4조(사업)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사업 -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2. 유기동물 및 위기동물 구조, 구조지원, 보호사업 및 보호소 설립·운영 <u>3. 콘텐츠 개발 사업 - 서적, 영상, 사진 등 콘텐츠 개발 사업</u> <u>4. 문화사업 - 영화제, 상영회, 전시 등 각종 문화사업</u> 5. 개식용 반대 등 각종 동물보호 캠페인 6. 국내외 동물입양사업 7. 동물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8. 동물보호운동 기금 마련을 위한 각종 모금사업 9. 동물보호 관련법 제정 및 개정 참여 사업 10.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연구소와 동물 보호와 동물의 권리를 위한 동물권 소송센터 사업 <u>11. 동물보호, 동물복지 등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에 위탁하는 사업</u> <u>12. 농장동물 구조, 구조지원, 보호사업 및 생추어리 설립·운영</u> <u>13. 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설립 목적과 본질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u>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장 회원

| | |
|-------------------------------------------------------------------------------------------------------------------------------------------------------------------------------------------------------------------------------------------------------------------------------------------|---------------------------------------------------------------------------------------------------------------------------------------------------------------------------------------------------------------------------------------------------------------------------------------------|
| <p>제5조(자격) 단체의 회원은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p> | <p>제5조(자격) 단체의 회원은 단체의 <u>목적을 지지하여</u>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p> |
| <p>제5조의 2(가입)</p> <p>①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단체에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p> <p>②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p> | <p>제6조(가입)</p> <p>①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단체에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p> |
| <p>제6조(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p> <p>1.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p> <p>2. 단체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p> | <p>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p> <p>1.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p> <p>2. 단체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p> <p>3. 단체의 이사 또는 감사가 되기 위한 피선거권</p> |
| <p>제7조(의무) 회원은 단체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회원은 3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될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p> | <p>제8조(의무) 회원은 단체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회원은 3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될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p> |
| <p>제8조(탈퇴)</p> <p>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p> <p>② 회원탈퇴 시 회원이 기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의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할 수 있다.</p> | <p>제9조(탈퇴)</p> <p>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p> <p>② <u>회원이 납부한 본 단체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u></p> |
| <p>제9조(회원의 제명, 재가입)</p> <p>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p> <p>1.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p> <p>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p> <p>②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제명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년 이후에 재가입할 수 있다.</p> | <p>제10조(회원의 제명, 재가입)</p> <p>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p> <p>1.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p> <p>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p> <p>②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제명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년 이후에 재가입할 수 있다.</p> |

변경 전

변경 후

제3장 임원

| | |
|------------------------------------------------------------------------------------------------------------------------------------------------------------------------------------------------------------------------------------------------------------------------------------------------------------------------------------------------------------------------------------------------------------------------------------------------------------------------------------------|------------------------------------------------------------------------------------------------------------------------------------------------------------------------------------------------------------------------------------------------------------------------------------------------------------------------------------------------------------------------------------------------------------------------------------------------------------------------------------------|
| <p>제10조 (종류와 정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대표 3인 이하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대표 포함) 3. 감사 2인 | <p>제11조(종류와 정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이사 <u>1인 이상 3인 이하</u> 2. 이사 5인 이상 <u>10인</u> 이하(대표이사 포함) 3. 감사 <u>1인 이상 2인 이하</u> |
| <p>제11조(선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6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p>제12조(선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원은 <u>이사회에서 추천하여</u>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 후보는 <u>단체 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이 아닌 경우 선출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원 가입을 한다.</u> ③ 임원 후보 추천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총회에 상정한다. 단, 대표이사 추천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상정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6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p>제11조의 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단체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p>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단체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p>제12조(징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22조에 따른 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2. 단체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고 2. 정직 3. 해임 4. 제명 ③ 임원 해임의 경우 4년 이내에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제명됨으로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회원이 될 수 없다. | <p>제14조(징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27조에 따른 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2. 단체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고 2. 정직 3. 해임 4. 제명 ③ 임원 해임의 경우 4년 이내에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제명됨으로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회원이 될 수 없다. |

| 변경 전 | 변경 후 |
|------------------------------------------------------------------------------------------------------------------------------------------------------------------------------------------------------------------------------------------------------------------------------------------------------------------------------------------------------------------------------------------------------------------------------------------------------------------------------------|-----------------------------------------------------------------------------------------------------------------------------------------------------------------------------------------------------------------------------------------------------------------------------------------------------------------------------------------------------------------------------------------------------------------------------------------------------------------------------------------------|
| <p>제13조 <삭제></p> | <p>삭제</p> |
| <p>제14조(임기)</p> <p>①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③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 <p>제15조(임기)</p> <p>① <u>대표이사</u>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③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④ <u>모든 임원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있을 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⑤ <u>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으로 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다.</u></p> |
| <p>제15조(직무)</p> <p>① 대표는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를 둘 경우 공동대표 중 의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p> <p>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p> <p>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p> <p>2. 이사회 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p> <p>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p> <p>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p> <p>5.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p> | <p>제16조(직무)</p> <p>① <u>대표이사</u>는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를 둘 경우 공동대표 중 의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p> <p>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p> <p>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p> <p>2. 이사회 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p> <p>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p> <p>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p> <p>5.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p> |
| <p>제16조(대표의 직무대행)</p> <p>① 대표의 사고 시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대표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p> | <p>제17조(대표의 직무대행)</p> <p>① <u>대표이사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u></p> <p>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u>대표이사</u>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대표이사</u>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p> |

변경 전

변경 후

제4장 총회

| | |
|------------------------------------------------------------------------------------------------------------------------------------------------------------------------------------------------------------------------------------------------------------------------------------------------------------------------------------------------------------------------------------------------------------------------------------------------------------------------------------------------------|------------------------------------------------------------------------------------------------------------------------------------------------------------------------------------------------------------------------------------------------------------------------------------------------------------------------------------------------------------------------------------------------------------------------------------------------------------------------------------------------------------------------------------------------------------|
| <p>제17조(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단체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p> | <p>제18조(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단체의 임원과 <u>제19조에 의하여 선출된</u>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p> |
| <p>제17조의 2(대의원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p> <p>① 대의원은 회원 5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하고, 총수는 300명 이내로 한다. 선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분회 내규에 의한다.</p> <p>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 <p>제19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p> <p>① 대의원은 회원 5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것을 <u>기준으로 하되,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수는 100명 이상 200명 이내로 한다.</u> 선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분회 내규에 의한다.</p> <p>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고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u></p> |
| <p>제18조(소집)</p> <p>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p> <p>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총회구성원 1/5 혹은 회원 50명 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4. 제15조 3항 4호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p>③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으면 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이사 중 가나다순으로 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p> | <p>제20조(소집)</p> <p>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u>대표이사</u>가 소집한다.</p> <p>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u>대표이사</u>가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대표이사</u>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총회구성원 1/5 혹은 회원 50명 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4. 제16조 3항 4호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p>③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u>대표이사</u>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u>대표이사</u>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u>연장자순</u>으로 대표이사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p> |
| <p>제18조의 2(개최와 통지)</p> <p>① 대표는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의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다른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p> | <p>제21조(개최와 통지)</p> <p>① <u>대표이사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등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② <u>의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를 소집한다.</u></p> |
| <p>제19조 <삭제></p> | <p>삭제</p> |

| 변경 전 | 변경 후 |
|---------------------------------------------------------------------------------------------------------------------------------------------------------------------------------------------------------------------------------------------------------------------------------------------------------------------|--------------------------------------------------------------------------------------------------------------------------------------------------------------------------------------------------------------------------------------------------------------------------------------------------------------|
| <p>신설</p> | <p>제22조(온라인총회)</p> <p>① 총회는 총회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한 총회 구성원은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거수, 투표, 기타 적절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
| <p>제20조(의결)</p> <p>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 <p>제23조(의결)</p> <p>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u>출석한 구성원</u>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u>대표이사</u>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
| <p>제20조의 2(의결 제척사유)</p> <p>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1.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p> <p>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과 본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p> | <p>제24조(의결 제척사유)</p> <p>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1.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p> <p>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과 본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p> <p><u>3.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해당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u></p> |
| <p>제21조(기능과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p> <p>1. 정관의 변경</p> <p>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p> <p>3. 단체의 기본활동 방침 결정</p> <p>4. 임원의 선출, 해임 및 징계</p> <p>5. 단체의 고문, 지도위원 추대</p> <p>6.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p> <p>7. 신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안 심의 확정</p> <p>8. 감사보고서의 승인</p> <p>9.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p> <p>10. 단체의 해산</p> <p>11. 기타 중요한 사항</p> | <p>제25조(기능과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p> <p>1. 정관의 변경</p> <p>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p> <p>3. 단체의 기본활동 방침 결정</p> <p>4. 임원의 선출, 해임 및 징계</p> <p>5.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p> <p>6.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p> <p>7. 감사보고서의 승인</p> <p>8.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p> <p>9. 단체의 해산</p> <p><u>10.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u></p> |

| 변경 전 | 변경 후 |
|------------------------------------------------------------------------------------------------------------------------------------------------------------------|------------------------------------------------------------------------------------------------------------------------------------------------------------------------|
| <p>제21조의2(의사록)</p> <p>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p> | <p>제26조(의사록)</p> <p>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③ <u>사무국</u>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p> |
| <p>제22조(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 정관변경</p> <p>2. 기본재산의 처분</p> <p>3. 임원의 징계</p> <p>4. 자본금 감소</p> | <p>제27조(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 정관변경</p> <p>2. 기본재산의 처분</p> <p>3. 임원의 징계</p> <p>4. 자본금 감소</p> |

제5장 이사회

| | |
|-------------------------------------------------------------------------------------------------------------------------------------------------------------------------------------------------------------------------------------------------------------------------------------------------------------------------------------------------------------------------------------------------------|----------------------------------------------------------------------------------------------------------------------------------------------------------------------------------------------------------------------------------------------------------------------------------------------------------------------------------------------------------------------------------------------------------------------------------------------------------------------------------------------------------------------------------------------------------------------------------------------------------------|
| <p>제23조(구성)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p> | <p>제28조(구성) <u>이사회는 대표이사</u>와 이사로 구성한다.</p> |
| <p>제24조(소집)</p> <p>① 이사회는 년 3회 이상 개최한다.</p> <p>② 이사회는 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p> <p>③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p> <p>1.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p> <p>2. 제15조 3항 4호와 관련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p> <p>3. 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p> <p>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 할 수 없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 <p>제29조(소집)</p> <p>① <u>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u></p> <p>② <u>정기이사회는 연 3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u></p> <p>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u>10일</u>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1.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p> <p>2. 제16조 제3항 제4호와 관련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p> <p>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p> <p>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회의안건·일시·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u>통지 방법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⑤ <u>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u></p> <p>⑥ <u>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u></p> |

| 변경 전 | 변경 후 |
|--------------------------------------------------------------------------------------------------------------------------------------------------------------------------------------------------------------------------------------------------------------------------------------------------------------------------------------------------------------------------------|---------------------------------------------------------------------------------------------------------------------------------------------------------------------------------------------------------------------------------------------------------------------------------------------------------------------------------------------------------------------------------------------------------------------------------------------------------------------------------------------------------------------------|
| <p>제25조(의결)</p> <p>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p> | <p>제30조(의결)</p> <p>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u>출석으로 개최하고</u>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p> <p>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p> <p>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p> <p>⑤ 제29조에 따라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
| <p>제26조(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1. 의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p> <p>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이사와 본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p> | <p>제31조(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1. 의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p> <p>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이사와 본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p> <p>3.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해당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p> |
| <p>제27조 <삭제></p> | <p>삭제</p> |
| <p>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p> <p>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p> <p>3. 잔여임기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p> <p>4.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p> <p>5.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작성</p> <p>6. 보통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p> <p>7. 운영위원의 선출</p> <p>8.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p> <p>9. 본회의 각종 내규 의결</p> <p>10. 사무국장 추천</p> <p>11.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p> <p>12.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p> | <p>제32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p> <p>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u>안건</u> 작성</p> <p>3. 잔여임기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p> <p>4.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p> <p>5.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작성</p> <p>6. 보통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p> <p>7.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p> <p>8. 본회의 각종 내규 의결</p> <p>9.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p> <p>10. 당해 연도 팀 전체 예산에서 30%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예산 증가 변동사항. 이 경우에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서 승인받는다.</p> <p>11. 국고 보조금,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이외 특별한 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p> <p>12. <u>신임이사와 대표이사 추천</u></p> <p>13.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p> |

| 변경 전 | 변경 후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운영위원회</p> <p>제29조(구성) ① 단체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를 제외한 2년이상 대의원으로 활동한 회원이거나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6명 이상 15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표가 운영위원장이 된다.</p> <p>제30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정기 회의를 가지며 필요시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장은 재적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④ 운영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출석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선출한다.</p> <p>제30조의 2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한다.</p> <p>제30조의 3 (운영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31조 <삭제></p> <p>제32조 <삭제></p> <p>제33조(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p> <p>제34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제반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3. (삭제) 4. 이사회에서 위임된 안건처리 5. (삭제) 6.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35조 <삭제></p> <p>제35조 1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안,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소집 및 의견에 관한 사항은 제 30조 내지 제 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전문위원회, 명예이사·대표</p> <p>삭제</p> |

| 변경 전 | 변경 후 |
|----------------------------------------------------------------------------------------------------------------------------------------------------------------------------------------------------------------------------------------------------------------------------------------------------------|--------------------------------------------------------------------------------------------------------------------------------------------------------------------------------------------------------------------------------------------------------------------------------------------------------------------------------------------------------------------------------------------------------------------------------------------------------------------------------------------------------------|
| <p>제36조(위원회)</p> <p>① 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연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제37조(자문위원과 명예이사)</p> <p>① 단체는 자문위원과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p> <p>② 자문위원은 단체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위촉한다.</p> <p>③ 명예이사는 단체의 취지에 동참하는 덕망 있는 인사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위촉한다.</p> | <p>제33조(전문위원회)</p> <p>① 단체는 제4조의 각 사업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목적별로 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위촉한다.</p> <p>③ 각 전문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p>제34조(명예이사·명예대표)</p> <p>① 단체는 명예이사와 명예대표를 둘 수 있다.</p> <p>② 명예이사는 단체의 취지에 동참하는 덕망 있는 인사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위촉한다.</p> <p>③ 명예대표는 전임 대표이사로 하며 임기는 차기 신임대표 이사 선출 전까지로 한다.</p> <p>④ 명예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위촉한다.</p> <p>④ 직전대표가 1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인을 선정한다.</p> |

제7장 재산 및 회계

| | |
|--------------------------------------------------------------------------------------------------------------------------------------------------------------------------------------------------------------------------------------------------|-----------------------------------------------------------------------------------------------------------------------------------------------------------------------------------------------------------------------------------------------------------------------------|
| <p>제38조(재산의 구분)</p> <p>① 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p> <p>1.기본재산은 단체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 재산총괄표”와 같다.</p> <p>2.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p> <p>② 단체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 <p>제35조(재산의 구분) 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p> <p>① 기본재산은 단체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 재산총괄표”와 같다.</p> <p>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p> |
| <p>제38조의 2(수익금) 단체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의 재원으로 한다.</p> | <p>제36조(경비의 재원) 단체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비 2. 기부금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공공단체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5. 기본재산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6.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 |

| 변경 전 | 변경 후 |
|-----------------------------------------------------------------------------------------------------------------------------------------------------------------------------------------------------------------------------------------------|----------------------------------------------------------------------------------------------------------------------------------------------------------------------------------------------------------------------------------------------------------------------------------------------------------|
| <p>제39조(기본재산의 처분 등)</p> <p>① 단체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p> <p>② 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는 그 처분 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 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 <p>제37조(기본재산의 처분 등)</p> <p>① 단체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u>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u></p> <p>② <u>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는 그 처분 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 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u></p> |
| <p>제4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p>제3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u>다만, 주무관청의 규칙이나 지침, 관계 법령 등에 의해 기한이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u>그 밖에 필요한 사항</u> |
| <p>제41조 <삭제></p> | <p>삭제</p> |
| <p>제42조(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 <p>제39조(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
| <p>제43조(세입·세출예산) 단체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p> | <p>제40조(세입·세출예산) 단체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u>2개월 이내</u>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p> |
| <p>제44조(결산)</p> <p>① 대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승인을 얻어 정한다.</p> <p>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p> | <p>제41조(결산)</p> <p>① 대표<u>이사</u>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u>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② 대표이사는 기부금의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u>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4월 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u></p> |
| <p>제44조의 2(회계잉여금 처리) 매년도 회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 자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단체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p> | <p>제42조(회계잉여금 처리) 매년도 회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 자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단체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p> |
| <p>제4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 <p>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
| <p>제4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p> | <p>제4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p>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8장 사무국

| | |
|-----------------------------------------------------------------------------------------------------------------|---------------------------------------------------------------------------------------------------------------|
| <p>제47조(사무국)</p> <p>①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p> <p>② 사무국장은 대표가 임명한다.</p> | <p>제45조(사무국)</p> <p>①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p> <p>② 사무국장은 대표가 임명한다.</p> |
| <p>제47조의 2(사무국 내규 등) 사무국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복무·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p> | <p>제46조(사무국 내규 등) 사무국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복무·임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p> |

제9장 보 칙

| | |
|-------------------------------------------------------------------------------------------------------------------------------------------------------------------------------------|--------------------------------------------------------------------------------------------------------------------------------------------------------------------------------------|
| <p>제48조(법인해산)</p> <p>①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단체가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p> | <p>제47조(법인해산)</p> <p>①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단체가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p> |
| <p>제49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 <p>제48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구성원 과반 출석, 출석 총회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
| <p>제50조(운영규정 등) 본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p> | <p>제49조(운영규정 등) 본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p> |
| <p>제51조(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p> | <p>제50조(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p> |

부 칙

| | |
|----------------------------------------------|---------------|
| <p>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p> | <p>변경사항없음</p>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정 2010.03.24. 1차 개정 2011.12.12. 2차 개정 2012.10.09. 3차 개정 2014.06.19. 4차 개정 2017.06.28. 5차 개정 2018.02.22. 6차 개정 2019.02.14. 7차 개정 2020.02.20. | 제정 2010.03.24. 1차 개정 2011.12.12. 2차 개정 2012.10.09. 3차 개정 2014.06.19. 4차 개정 2017.06.28. 5차 개정 2018.02.22. 6차 개정 2019.02.14. 7차 개정 2020.02.20. <u>8차 개정 2022.02.24.</u> |

별첨자료

연임 임원 후보자 명단

2021 성명/논평/보도자료 목록

2021 발간자료 목록

2021 입양 개체 목록

2021 구조 개체 목록

2021 후원회원 명단

2022 정기총회 대의원 명단

카라 활동가 조직도

카라 정관(2020년 7차개정 버전)



임원 연임 후보자 명단

서국화

사법연수원 수료

현) 법무법인 올림 변호사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대표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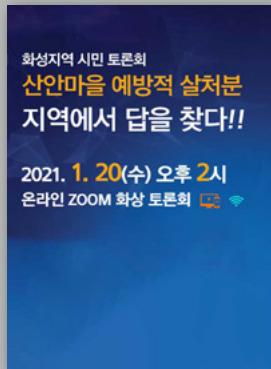
(사) 동물권행동 카라 이사

2021 성명/논평/보도자료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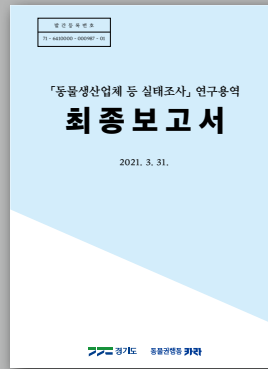
| | | |
|------------|---------|----------------------------------------------------------|
| 2021-01-22 | 논평 | 해양수산부의 수족관 돌고래 체험금지 결단 환영한다 |
| 2021-01-06 | 공동성명 | 백색목록' 도입으로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 근절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 환영 |
| 2021-02-01 | 공동기자회견문 | 이제는 돌고래 감금을 끝낼 때 |
| 2021-02-08 | 기자회견문 | 화성시장은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마을을 예찰지역으로 즉각 전환하라! |
| 2021-02-09 | 공동기자회견문 | 정부는 무차별 살처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 즉각 취소하라! |
| 2021-02-10 | 공동기자회견문 | 정부는 문지마 살처분 정책 폐기하고, 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 강행 중단하라! |
| 2021-02-15 | 공동성명 | 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으로 인한 과잉 방역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 |
| 2021-02-17 | 성명 | 산안마을 닭 '형평성'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생명경시 농식품부 각성하고 백신 도입으로 닭들 살려내라 |
| 2021-02-19 | 성명 | 무능하고 파렴치한 국가의 동물살해를 성토했다! |
| 2021-03-12 | 논평 | 시대요구인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 의지를 환영하며 이제 동물의 생명 존엄성 위한 과제들 조속히 풀어가야 |
| 2021-03-09 | 성명 | 시대착오적 대형 동물감옥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무산을 환영한다 |
| 2021-03-15 | 공동성명 | 환경부의 책임있는 곰 보호시설 추진과 남은 사육곰에 대한 대책과 계획 마련 요구한다! |
| 2021-03-22 | 공동성명 | 울산 남구청은 감금 돌고래 즉각 방류하라 |
| 2021-03-22 | 공동성명 | 죽임을 넘어 살림의 시대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
| 2021-05-17 | 보도자료 | 동물권행동 카라,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첫 사례집 발간 |
| 2021-05-25 | 보도자료 | 동물권행동카라,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시작한다 |
| 2021-05-26 | 공동기자회견문 |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울산 돌고래 방류를 즉각 결단하라! |
| 2021-06-04 | 공동기자회견문 | 학교 내 채식선택급식을 보장하라! |
| 2021-06-09 | 기자회견문 | 불법 개농장 방조하고 동물보호의무 방기한 남양주시 규탄한다 |
| 2021-06-10 | 보도자료 | 카라, 불법 개농장 방조하고 동물보호의무 방기한 남양주시 고발 기자회견 개최 |
| 2021-06-22 | 보도자료 | 개식용 금지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
| 2021-07-09 | 기자회견문 | 그들도, 우리도 원하는 개식용 종식,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 |
| 2021-07-16 | 보도자료 | 카라, 동물학대와 미디어 온라인 강좌 연다 |
| 2021-07-08 | 논평 | 정부는 사육곰 불법 번식 강력히 처벌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
| 2021-07-21 | 성명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영한다 |

| | | |
|------------|---------|-------------------------------------------------------------------------------|
| 2021-07-08 | 보도자료 | 카라,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지역 이주 예정 반려가구 대상으로 '동물등록과 중성화' 지원 |
| 2021-07-09 | 보도자료 | 불법 개 도살 현장 또 발각... 아무런 제재없이 어떤 개든 암거래 되다 도살돼 |
| 2021-07-09 | 보도자료 | 조속한 개식용 종식 대책수립 촉구 기자회견 |
| 2021-07-16 | 보도자료 | 카라, 동물학대와 미디어 온라인 강좌 연다 |
| 2021-09-03 | 보도자료 | 고양이 학대 전시 커뮤니티 수사요구 국민청원' 형식적인 청와대 답변으로는 입증처벌 및 재발방지 어려워 |
| 2021-09-28 | 성명 |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지시" 환영한다! |
| 2021-09-28 | 성명 |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국무회의 통과 환영한다! |
| 2021-10-01 | 보도자료 |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동물학대 범죄자에 검찰 법정 최고형 징역 3년 구형 |
| 2021-10-03 | 보도자료 | 세계 농장동물의 날 맞아 '우리도 생명이에요' 영상 시리즈 공개 및 서명 캠페인 페이지 리뉴얼 |
| 2021-10-06 | 보도자료 | 인간 중심의 세상에 동물들이 던지는 질문, 제4회 카라동물영화제 10월 23일 개막 |
| 2021-10-06 | 논평 | 국정감사에서 '동물실험'으로 동물학대한 윤준병 의원 규탄한다 |
| 2021-10-18 |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따른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이행 촉구 동시다발 기자회견 "비정상을 정상으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
| 2021-10-21 | 보도자료 | 제4회 카라동물영화제 극장 상영 전석 매진, 온라인 상영작 관람은 23일부터 |
| 2021-11-01 | 보도자료 | 윤석열 후보, "식용개 따로있고, 개식용 학대 아냐" 망언, 강력 규탄한다 |
| 2021-11-01 | 성명 | 윤석열 후보, "식용개 따로 있다" 망언, 강력 규탄한다! |
| 2021-11-12 | 보도자료 | 고어전문방 선고 결과 기자회견-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 선고 |
| 2021-11-16 | 공동기자회견문 | 한국 정부는 해양생태계와 인권 보호, 기후위기 저감을 위해 WTO 나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약속을 이행하라 |
| 2021-11-23 | 성명 | 수십 년간 위법행위로 부당이득 취하고도 국민 이용해 더 많은 이익 요구하는 파렴치 집단 "대한육견협회"를 규탄한다! |
| 2021-11-25 | 논평 | 위법행위에 부여해 온 '사회적 논의'라는 면책, 43년으로 충분하다 |
| 2021-11-25 | 보도자료 | 개식용 종식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 2021-11-26 | 성명 | 환경부는 말한 만큼이라도 움직여 달라 |
| 2021-12-10 | 논평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6년 만의 개정, 길고양이와 사람의 공존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 노력 필요 |
| 2021-12-06 | 성명 | 정읍시는 동물학대 소싸움 예산 재편성을 멈추고 소싸움 대회를 폐지하라! |
| 2021-12-06 | 보도자료 | 농장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비감염 살처분 제한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
| 2021-12-23 | 보도자료 | 심각한 생명경시 조장하는 SBS '공생의 법칙' 방영을 취소하라! |

2021 발간자료 목록



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 지역에서 답을 찾다! 화성지역 시민 토론회
 발행일: 2021-01-19
 분류: 자료집



『동물생산업체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1-03-31
 분류: 보고서



동물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발행일: 2021-05-12
 분류: 자료집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사례집
 발행일: 2021-05-18
 분류: 자료집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발행일: 2021-06-11
 분류: 자료집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발행일: 2021-08-01
 분류: 자료집



공공 동물병원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
 발행일: 2021-09-02
 분류: 자료집



동물 촬영 현장용 핸드북 :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발행일: 2021-11-01
 분류: 자료집



<2021 작은 공론장> 반려동물
매매금지, 당신의 선택은?
발행일: 2021-11-27
분류: 자료집



가축전염병 대응방안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국회토론회
발행일: 2021-12-15
분류: 자료집



'야생화'된 유기견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발행일: 2021-12-16
분류: 자료집

2021 입양개체 목록



국내입양

개(87마리)

조 연두 파스닉 맥퀼 마리아 아메 세치 개리 비룡 튜나
 겐조 보미 보검 메이크 테릭 노먼 보라 린다 래곤 감자
 가지 량방 초파 보울 리즈 릴리 토미 마스 보성 포리 제니
 벤지 씽 행복 영아 뮤리 무늬 루벤 시우 도담 맥스 머니
 뚜래 메리 소길리 보나 저미 도스 셔니 루피 새록이 쿠아
 달록 우노 산사 알록이 쥬스 우유 가람 해리 사랑 베스
 리사 리타 마루 로이 제로 러쉬 아폴론 가넷 알렉스 씨니
 펠리스 머드 대길 마커스 에밋 크리드 연아 애랑 탄이 도도
 보리 제나 에디 크리스틴 아툼

고양이(40마리)

은동 아가 사랑이 예지 유자 오호 윈크 아로 빼약 뿐이
 공주 화랑 주다 크림 짜장 라즈 그레이 뽕뽕 댕기 타리
 랭이 달구 리코타 고다 브리 블리 데이지 연이 동글이 청순
 미두 파로 로제 두두 도도 산들 호두 햇살 비비 유코

해외입양

개(80마리)

애니 메이 보니 주디 흡스 미니 소담 션 마틴 럭키 반달
 오동 헤라 워커 샵살 풍순 울리 완엄 소룡이 바비 엠마
 매튜 톰 덕구 샘 유니 술이 모찌 설기 영태 베베 니콜
 가바나 포도 디올 끌로에 소금 고수 로라 오드리 진저 쿨라
 순철 성현 성운 성희 성하 콩이 영웅 열이 달리 무디 투투
 안나 뽕송 코디 뿌리 존 햅번 라이카 태니 완소 불가리
 성빈 호프 비키 호수 슈만 티티 롤리 뽕강 세이디 오토
 하울 겨울이 에릭 로네 초 주세페 베르디

2021 구조개체 목록



소위 들개 구조(13마리)

비지 비지 새끼4(설기 시루 모찌 술이) 성소 성소 새끼5(성현 성희 성하 성빈 성윤 달비 해별)

위기 동물(포획 지원 학대 구조 유기/유실 구조 방치견 구조)(70마리)

신복 래곤 린다 비룡 오호 몽실(파니) 코점 윈크 하니 조아 광주유기견 포획4 화성 고양이 구리 고양이 망원 옥상 고양이 리사 제니 로제 진숙 하늘 구슬 유코 세나 풀리 에스 케이 철호 망원 미야 양평 떠돌이견 복덩이 필립 삼고양이 샤인 창천 운수역 하수구 고양이 2 복덩이-1 파로 마포 길고양이 보리 탄이 목이 싸리 표고 다리 바다 호두 은하 은하 새끼8 밤비 릿지 흙삼 비비 페르시안 고양이 샌디 차오 수아 당당 삼이 족제비

달봉이네 구조(70마리)

진저 태니 샘 올리 커몬 베베 벨리 펄 노바 제라 철수 뽀카 뽀양 뽀송 뽀리 뽀롱 뽀강 보꾸 치치 앨리스 만두 로터 모네 델리 데니스 하니 위고 젤리 블루 도비 루나 밍키 알버스 해리 지니 초 포이 론 미슬 시아 서리 리츠 하이 리즈 모스 테일 찰리 링크 로지 스텔라 베어 닐리 버디 터커 풍고 페니 쿠퍼 세이디 몰리 리스본 덴버 로마 인디아 리오 하바나 히누 시드니 런던 하퍼 다래

애니멀 호딩 구조(100마리)

충남 보령(8마리)
 보라 보성 보검 보미 보석 보울 사랑이 행복이
 대전 애니멀 호딩(44마리)
 보나 도담 가람 하울이 소니 덕구 코디 시우 루비 맥스 소길이 제니 포리 벤지 유니 무늬 뮤리 대걸이 토미 해리 코나 미키 또또 하양 루피 마루 콩이 줄리 줄리 새끼3 메리 메리 새끼2 산사 산사 새끼5 돌리 돌리 새끼3
 강남 고양이 호더(42마리)
 A-1 A-2 A-3 네네 타리 미두 페르 도도 랭이 달구 딸기 쌍쌍이 빼약이 덩기 크림 아리 연이 뽀이 먼로 주다 레미 솔레 청순이 화랑이 동글이 별리 삼색이 케이 부양 짜장 재키. 공주 까망 동동 그레이 두두 아로 니아 라즈 리코타 고다 브리
 아현동 호딩(2마리)
 라온 제나
 중랑구 호딩(4마리)
 람보 릴리 래미 로리



도살장/개농장 구조(159마리)

고양 설문동 도살장(35마리)

죠니 에단 로빈 카일 D-5 어푸 D-7 유진 밀라 스톱 열이
 탈리 호프 소라 호걸 영웅 영웅 새끼5 파커 호수 볼튼 쨍이
 홍차 허쉬 강록 이티 조단 일도 행크 애비 사라 오드리
 안나 D-32 영태 D-34 라벤더(미니피그)

고양 용두동 도살장(33마리)

데인 라운드 빅 조 리치 토마 이이 라이 언더 앤디 초코
 코코 코지 코난 코타 마이티 누아 피터 리브 월시 브렛
 빅디 레드 마튼 무디 디디 케이트 비고 라이카 미란다 렘번
 오토 모모

의정부 신곡동 도살장(37마리)

리버 리버 새끼6 바크 구디 코너 월 신도 도신 단추 듀크
 바론 헤이 베니 앤소니 콜린 탄이 그렉 윈더 제시카 윈디
 민들레 오스틴 비니 비키 주디 로네 설희 씨니 랄라 하초
 청하 라라

여주 왕대리 도살장(40마리)

헨델 바흐 랄프 프란츠 볼프강 요제프 주세페 베르디 슈만
 말러 요한 모리스 리스트 에릭 사티 하임 누센 피에르
 볼레즈 엘가 안톤 윌리엄 베른 올리버 모턴 죠지 쇼팽
 브람스 아놀드 카를로 드뷔시 태양이 달이 산이 강이 청이
 흥이 달이 새끼3

남양주 개농장(14마리)

옥이 블랑 롤리 롤리 새끼7 랙스 랙스 새끼3

2021 신규 정기후원회원 명단

(주)갤러riba톤 (주)루트앤스카이 (주)모터라이프 (주)엄마마음 (주)에덴피앤디 (주)채널플레이 (주)크림치즈 AVERY
 KIM Belgrd caleb Roland CHA SEUNGMIN CHENGYINZI CHEON INSUN CHOI JIYOUNG CUI MEIHUA
 HWANG SOHEE Janine Redelingnuys Kanghee Ha KIM HANEUL KIMYONGT LEESHENGYOU
 LIMSUNKYUNG PARKMIRAE Wltjs5305-한지선 감수성 강가람 강경아 강경옥 강경희 강금미 강나현 강나현
 강다솜 강다슬 강다현 강도향 강동아 강동주 강동현 강미경 강미리 강미선 강미옥 강미정 강민서 강민선 강민아
 강민정 강민주 강민지 강민지 강민진 강보령 강새별 강서형 강선주 강성한 강세희 강숨이 강수민 강수연 강승연
 강시진 강양숙 강영선 강영우 강예슬 강예지 강예진 강원모 강유경 강유림 강은심 강은주 강은지 강은혜 강인화
 강정아 강정옥 강정혜 강주아 강주연 강주형 강주희 강지영 강지은 강지하 강지혜 강지혜 강진영 강초은 강태임
 강하은 강현경 강현서 강혜리 강혜원 강혜운 강혜정 강혜정 강혜지 강효진 강희준 강희진 강희진 경수현 경향래
 경혜정 계소신 계수연 계하은 고경진 고다연 고동조 고동희 고려은 고명 고미영 고민경 고민정 고선희 고아라
 고예린 고은 고은리 고은별 고은비 고은새 고은숙 고의선 고준희 고지원 고하민 고혜경 고해리 공선경 광다혜
 광선화 광소정 광수아 광영조 광인영 광제연 광준석 광지영 광지운 광지혜 광진희 광하나 구교진 구민정 구선
 구소영 구연수 구휘빈 구희수 국영수 국효정 권규리 권규리 권금림 권나연 권다인 권민수 권민애 권민제 권상미
 권서란 권서영 권선미 권선우 권 원 권세림 권세은 권소영 권순호 권승준 권아름 권영훈 권우현 권유나 권은란
 권은성 권재연 권재운 권정숙 권정화 권주연 권지현 권지현 권채연 권하영 권혁경 권혁조 권현이 권혜경 권혜린
 기푸름 기혜경 길선경 길은하 길정은 길주영 김가람 김가영 김가영 김가현 김가희 김건희 김결 김경나
 김경미 김경섭 김정은 김경임 김경자 김경화 김경희 김경희 김계선 김계호 김고운 김고은 김광옥 김교림 김권준
 김귀숙 김금자 김기쁨 김기 김기정 김기정 김나단 김나리 김나리 김나연 김나연 김나연 김나영 김나영 김나은
 김나현 김나현 김남영 김남광 김남희 김노은 김다린 김다민 김 빈 김다슬 김다슬 김다슬 김다예 김다은 김다정
 김다현 김단아 김단우 김담록 김담희 김대현 김덕용 김도경 김도은 김도희 김도희 김도희 김동미 김동은 김동희
 김동희 김두리 김령은 김령은 김례지 김로사 김리아 김리효 김만수 김만재 김명석 김명선 김명수 김명숙 김명옥
 김명주 김문정 김문 김미경 김미라 김미라 김미래 김미래 김미리 김미리 김미리 김미린 김미미 김미수김미숙
 김미영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지 김미 김미진 김미향 김미현 김미형 김미혜 김미혜 김미화
 김미화 김미화 김민 김민경 김민경 김민경 김민경 김민기 김민서 김민선 김민아 김민아 김민 김민이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주 김민주 김민주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 김민하 김민희 김민희 김민음 김방연 김백정은 김벼리 김별이 김병균 김보경 김보경 김보라
 김보름 김보선 김보영 김보은 김보정 김보찬 김보화 김보희 김빈 김빛나래 김산 김상규 김상유 김상은 김상인
 김상지 김상희 김셋별 김셋별 김서연 김서연 김서영 김서진 김서현 김서현 김서현 김석희 김선경 김선교 김선미
 김선미 김선아 김선아 김선영 김선용 김선은 김선주 김선주 김선화 김선화 김선화 김선화 김선희 김성겸 김성민
 김성민 김성 김성옥 김성은 김성인 김성지 김성혜 김세라 김세린 김세연 김세인 김세정 김소니 김소라 김소리
 김소미 김소연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 김 영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 김소원 김소운 김소의 김소임
 김소정 김소현 김소현 김소희 김소희 김소희 김소희 김솔 김솔휘 김숨이 김송 김송 김송은 김송이 김송이 김송이
 김송이 김수경 김수민 김수민 김수민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영 김수완
 김수완(슈렉) 김수자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지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향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순금 김순자 김솔기 김솔 김솔아 김솔지 김승연 김승훈 김승희 김시운 김시현 김신아
 김신아 김신영 김신희 김신희 김아람 김아름 김아름 김아름 김아름 김아운 김안나 김 경 김애련 김애리 김어진
 김어진 김엄지 김여진 김연숙 김연아 김연정 김연정 김연주 김연주 김연주 김연지 김연호 김영경(구름,태양) 김영미
 김영 김영상 김영수 김영식 김영애 김영원 김영은 김영주 김영주 김영주 김영진 김영혜 김영화 김영환 김예림

김예슬 김예슬 김예슬 김예원 김예은 김예 김예지 김예지 김예지 김예진 김예진 김예진 김예현 김예훈 김옥선
 김우진 김원경 김원영 김유나김유나 김유라 김유리 김유리 김유리 김유리 김 리아 김유미 김유미 김유민 김유빈
 김유선 김유송 김유정 김유정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향 김운
 김윤경 김윤경 김윤빈 김윤서 김윤수 김윤아 김윤옥 김윤정 김윤정 김윤정 김윤지 김윤지 김윤호 김윤희 김윤희
 김윤희 김율리 김은별 김은서 김은 김은서 김은선 김은성 김은숙 김은숙 김은아 김은영 김은영 김은영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지 김은진 김은진 김 진 김은진 김은하 김은화 김은희 김은희
 김의태 김이슬 김이슬 김이은 김인선 김인혜 김자영 김잔디 김잔디 김장미 김재범 김재연 김재연 김재영 김재영
 김재영 김재우 김재욱 김재원 김재인 김재현 김재형 김재희 김재희 김정선 김정수 김정수 김정숙 김정연 김정연
 김정윤 김정은 김정이 김정 김정진 김정현 김정희 김제영 김종영 김종은 김주리 김주아 김주연 김주연 김주는
 김주훈 김주희 김준영 김준영 김준형 김지민 김지선 김지선 김 수 김지수 김지수 김지수 김지수 김지수 김지아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은
 김지우 김지우 김지운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윤 김지윤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후
 김지희 김지희 김지희 김진 김진경 김진경 김진경 김진 김진선 김진선 김진숙 김진숙 김진숙 김진영 김진원
 김진희 김진희 김진희 김차영 김찬미 김창남 김창숙 김채영 김채운 김채원 김채유 김채은 김채 김채하 김철규
 김청 김청명 김초원 김총재 김태경 김태린 김태린 김태민 김태신 김태연 김태연 김태원 김태정 김태혁 김태희
 김태희 김하나 김하 김하나 김하늘 김하늘 김하미 김하민 김하연 김하원 김하정 김하정 김하주 김한솔
 김해인 김해중 김해지 김현 김현 김현경 김현령 김현미 김현미 김현수 김현아 김현아 김현애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준 김현지 김현지 김현지 김현진 김현화 김현희 김형락 김혜 김혜리 김혜리
 김혜리 김혜린 김혜림 김혜림 김혜미 김혜미(봄이언니) 김혜민 김혜민 김혜민 김혜연 김혜영 김혜영 김혜원 김혜원
 김혜원 김혜은 김혜인 김혜인 김혜인 김혜주 김혜지 김혜진 김혜진 김호 김호경 김하숙 김황자 김효경 김효린
 김효순 김효열 김효정 김효정 김효주 김효진 김효진 김후경 김훈영 김희경 김희라 김희연 김희연 김희은 김희주
 김희진 꽃망울인식표 나보미 나세은 나옥향 나은유 나유진 나윤지 나은주 남가배 남가 남가현 남경혜 남경희
 남궁정화 남규리 남다현 남미경 남보라 남보배 남삼휘 남세희 남승민 남승원 남언주 남연주 남용 남유리 남주영
 남진솔 남해 남현진 노가은 노경은 노다교 노봉구 노상희 노선화 노송이 노송아 노송희 노연아 노오란 노용주
 노우주 노유민 노은영 노은정 노주혜 노준기 노 별 노해원 노현진 닥터엘로우 당정우 데레사j 도수영 도연수
 도우주 도은주 도지영 도지윤 돌돌꽃분 돌돌샵 디자인미우 디자인포 라경향 러브허(LoveHeo) 루트52 류영석
 류은채 류정수 류지선 류해운 리더스주식회사 마이스몰버드 마지연 마타타(MATATA) 맹수진 맹지는 명나연 명해
 모나코코 모민아 모퉁이와플 모현정 몽구엄마 문가영 문경지 문고운 문미정 문미진 문성은 문성호 문소라 문소라
 문솔비 문수경 문숙현 문시연 문 립 문연희 문예림 문예은 문은지 문자영 문정민 문정민 문지영 문지영 문지원
 문지윤 문지은 문지현 문혜임 문화영 문효정 민경란 민소영 민자경 민지수 민지혜 민혜민 바름연구소 박가람
 박가연 박가영 박경민 박경은 박규나 박규미 박규이 박금복 박금자 박나눔 박나은 박나혜 박다영 박다정 박다정
 박다해 박다현 박단비 박동훈 박득용 박란 박리매 박리하 박명희 박미경 박미령 박미례 박미리 박미연 박미정
 박미정 박미정 박미정 박미진 박미혜 박미희 박민선 박민수 박민아 박민아 박민영 박민정 박민주 박민지 박민희
 박보솔 박보현 박빛나래 박상미 박상옥 박상원 박상준 박상진 박 택 박상흥 박상희 박새미 박새아 박서유 박서현
 박선경 박선미 박선민 박선민 박선실 박선아 박선영 박선영 박선영 박선영 박선옥 박선정 박선하 박선희 박성래
 박성빈 박성연 박성연 박성은 박성현 박성효 박성희 박세아 박세영 박세은 박세정 박세진 박세혁 박세혁 박세훈
 박세희 박소담 박소영 박소영 박소정 박소정 박소현 박소현 박소현 박소현 박솔지 박수미 박수빈 박수빈 박수연
 박수 박수인 박수정 박수지 박수진 박수진 박수진 박수진 박수현 박수현 박수현 박시내 박신영 박신영 박신향
 박아름 박안희 박애현 박영화 박예림 박예림 박예슬 박용걸 박용찬 박 현 박유빈 박유지 박윤경 박윤경 박윤영
 박윤정 박윤희 박윤희 박은라 박은비 박은수 박은지 박은하 박이슬 박인서 박인영 박인하 박재숙 박재은 박재형
 박정륜 박정민 박정선 박정식 박정원 박정은 박정은 박정한 박정현 박정현 박정환 박재홍 박주미 박주영 박주영
 박주용 박주는 박주는 박주현 박주혜 박주희 박지련 박지선 박지수 박지수 박지안 박지 박지에 박지연 박지연
 박지연 박지연 박지연 박지영 박지영 박지영 박지원 박지유 박지은 박지은 박지은 박지은 박지현 박지현 박지혜
 박지혜 박지효 박진 박진국 박진선 박진 박진화 박진희 박진희 박진희 박찬경 박채연 박채원 박초아 박태림
 박태욱 박태은 박하나 박현송 박현제 박현주 박현주 박현지 박현진 박현진 박현진 박현진 박현희 박혜
 박혜린 박혜미 박혜미 박혜미 박혜은 박혜은 박혜진 박혜진 박혜진 박효선 박효진 박효진 박희란 박희연

박희인 박희정 반려동물이동서비스 반소현 반지수 방근영 방다래 방서현 방성향 방연주 방울이 방은아 방지연
방지은 방지현 방혜린 방희숙 배경옥 배규란 배기정 배문주 배민혜 배선영 배선희 배성현 배소연 배솔이 배수민
배수영 배수일 배솔기 배아름 배여정 배우리 배유나 배유민 배재봉 배정경 배지영 배 희 배차영 배하은 배현이
배현주 배혜민 배희주 백규향 백서운 백선훈 백소연 백수지 백승연 백승연 백승춘 백시원 백정희 백종륜 백지현
백진주 백진주 베인 베트남노상식당마전점 변경희 변다솜 변대진 변선미 변수정 변영민 변유경 변은수 변정운
변지민 보더랩 봄은고양이로다 부산불링협 동네고양이 비비 빛깔 사상초량갈비 상혜정 새씨앗약국 서가영 서경덕
서경애 서단아 서리치 서미라 서민정 서민정 서민지 서보영 서선행 서수민 서순희 서연수 서영일 서예진 서우주
서유경 서유연 서은경 서은하 서의균 서인명 서재은 서정민 서정아 서정일 서정퍼티캠(주) 서주리 서지원 서지
서지은 서지혜 서진원 서창우 서한나 서현성 서현정 서혜경 서혜란 서혜민 서혜진 서효민 서희주 서희주
석경미 석미애 석예현 선인태 설 희 성노들 성미경 성세희 성수민 성연희 성은숙 성은재 성정민 성지영 성지학원
성지현 성진솔 성진환 성혜현 세븐틴 원우 세종약품 소수정 소영 소예랑한의원 소은선 소정인 소현 손대훈
손동희 손미소 손민재 손민주 손서연 손소영 손수경 손영주 손영지 손예령 손예빈 손원준 손유진 손유진 손은우
손은혜 손정승 손정현 손종인 손지현 손창현 손혜원 손혜인 손효림 손효진 손희수 송경진 송나경 송나연 송나영
송노경 송다겸 송다현 송단 송미애 송민지 송선미 송선미 송성은 송수빈 송수진 송승안 송아란 송연화 송영연
송예나 송예영 송원진 송유나 송유나 송유진 송윤지 송은영 송 주 송인경 송정선 송중현 송지연 송지영 송진선
송채림 송한솔 송현정 송혜수 송혜연 송화정 송효민 송효주 송희라 수에즈유 숲의계절 스퀘어FX 스 브은
슬기로운대명생활 슬리핑테이블 시윤희 신가을 신경원 신고운 신권철 신기루 신나래 신다운 신단비 신동우 신동희
신란영 신미라 신미리 신미애 신미영 신민경 신민경 신상은 신상희 신새움 신서운 신선미 신소희 신송 신승희
신애리 신영미 신영미 신영애 신영인 신영일 신예지 신용숙 신 철 신원선 신유진 신유진 신유진 신윤선 신은서
신은지 신은지 신이슬 신이인 신재아 신정안 신정옥 신정옥 신정원 신정은 신주용 신지유 신지향 신지훈 신진영
신진혜 신채영 신하은 신혜영 신현경 신현미 신현서 신혜배 신혜원 신호경 신호정 신훈영 신희령 신희원 심가원
심가현 심미정 심미정 심서연 심서현 심성실 심수민 심수현 심예지 심은혜 심지민 심지유 심혜진 씨브웨이진해석동
아우프바우 안경은 안다운 안도희 안보희 안빈 안 연 안성희 안세영 안소라 안소현 안승현 안연주 안예슬 안예정
안우주 안유진 안윤희 안재윤 안정민 안정희 안정희 안종익 안지선 안지영 안지영 안지원 안혜리 안혜진 안혜진
앤스튜디오 양다혜 양명주 양민정 양민지 양별이 양선아 양성민 양소영 양송민 양슬비 양예나 양예주 양예진
양윤미 양윤선 양윤자 양윤정 양이슬 양인경 양인화 양정민 양정원 양정은 양지안 양지원 양지은 양지혜 양진희
양현경 양현석 양혜영 양혜진 양호진 양희 양희진 어니스트밀주식회사 어라이크 어원영 엄근혜 엄민경 엄수지
엄윤진 엄윤진 엄은선 엄은진 엄지민 예그드랩양재역 에이민아 여민규 여수정 여은수 연선영 연홍호 연진희 엄진
엄한별 예새아라 오가을 오명은 오미림 오민아 오빛나 오사랑 오선화 오선희 오성임 오세문 오세은 오세진 오소민
오소현 오송란 오수린 오수민 오수정 오승빈 오승아 오승우 오승현 오영미 오예린 오예지 오예지 오유나 오은교
오은진 오정숙 오종예 오주리 오주영 오주원 오지수 오지연 오지인 오지혜 오하영 오현경 오현지 오혜수 옥정인
울리비아 와이앤제이 왕수연 왕홍주 왕희림 요가보통앳더코티지 용유진 용지원 우경미 우다솔 우다정 우민석
우민정 우승연 우승희 우애린 우연희 우영미 우유니게 우은지 우주라이크커피 김해내외점 우혜린 우혜 원유경
원은애 원은재 원재희 원혜리 웹프로젝트 워너쉬핑(주) 위새미 위준형 유가현 유기선 유나령 유나영 유다운
유다혜 유다희 유다희 유리한살 유민경 유민아 유병진 유상희 유새봄 유서연 유서영 유선영 유성은 유수언 유수정
유승원 유승하 유승희 유 아 유신영 유아름 유아리 유연금 유연서 유연승 유영은 유예원 유예진 유우정 유은미
유은아 유은영 유이슬 유인혜 유임희 유재영 유재은 유정아 유정현 유정화 유정희 유주현 유준영 유지연 유지연
유지연 유지원 유지운 유지은 유지현 유지혜 유지호 유진아 유진이 유진현 유채은 유초롱 유태규 유하늘 유한서
유현아 유현정 유현주 유혜령 유혜리 유혜 유혜진 유희경 윤가령 윤가은 윤결 윤경주 윤고운 윤길섭 윤나영
윤다운 윤다정 윤다혜 윤다희 윤미영 윤미정 윤보미 윤상운 윤선미 윤선영 윤성철 윤소영 윤소정 윤수경 윤수
윤수경 윤수경 윤수빈 윤수연 윤수정 윤수정 윤여진 윤연순 윤영화 윤예지 윤예지 윤예지 윤은주 윤은향 윤재연
윤재희 윤정근 윤정현 윤종애 윤준기 윤지애 윤지영 윤지혜 윤지 윤지원 윤지은 윤지인 윤지현 윤지혜 윤진국
윤진아 윤찬호 윤채영 윤초롱 윤태현 윤하진 윤현정 윤현정 윤형석 윤혜미 윤혜민 윤혜진 윤효정 윤희경 윤희수
윤희숙 윤희순 윤 진 은나라 은유정 음해미 이가은 이가은 이가을 이가현 이가혜 이가혜 이갑희 이강혁 이경미
이경석 이경아 이경옥 이경원 이경은 이경진 이경희 이경희 이고운 이관형 이교이 이국화아뜰리에 이금섭 이기백
이기원 이나경 이나경 이나래 이나리 이나림 이나연 이나연 이나영 이나영 이남경 이남우 이남원 이다빈
이다솔 이다솔 이다영 이다영 이 예 이다운 이다운 이다운 이다정 이다현 이다희 이단아 이덕영 이도경 이도연

이동규 이동재 이동춘 이득훈 이래아 이로하 이리와 이명우 이명주 이명하 이문희 이문희 이미나 이미라 이미란
 이미선 이미선 이미연 이미연 이미진 이민경 이민경 이민영 이민영 이민영 이민옥 이민우 이민주 이민혜 이법석
 이병석 이보광 이보라 이보라 이보람 이보람 이보 이브아 아트 이상선 이상아 이상윤 이상하 이서연 이서연
 이서정 이서정 이서진 이서진 이서현 이서현 이서현 이서현 이서현 이석순 이석현 이선미 이선민 이선민 이선민
 이선아 이선영 이선영 이선영 이선정 이선진 이선진 이선호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선희 이성숙 이성식 이성은
 이세규 이세실 이세영 이세영 이소나 이소리 이소민 이소연 이소영 이소영 이소우 이소은 이소정 이소정 이소진
 이소현 이소현 이소현 이소현 이소현 이소혜 이소홍 이소희 이솔 이솔 이솔빛 이송 이송미 이송희 이수민
 이수민 이수민 이수빈 이 아 이수연 이수유 이수인 이수정 이수정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수진 이수혁 이수현
 이수현 이수현 이숙영 이슬기 이슬기 이슬기 이슬기나 이슬비 이슬비나라 이승연 이승연 이 연 이승연 이승연
 이승예 이승혁 이승호 이승환 이승희 이시운 이아람 이아름 이아름 이안나 이애리 이양희 이여선 이여진 이연재
 이연지 이연화 이연화 이연희 이연희 이영림 이영섭 이영수 이영아 이영임 이영재 이영주 이영주 이영주 이영택
 이영현 이영현 이예린 이예림 이예빈 이예영 이예은 이예은 이예인 이예지 이예지 이예진 이오연 이용림 이용
 이용주 이우정 이원재 이유나 이유리 이유선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유현 이윤미 이윤영
 이윤영 이윤정 이윤정 이윤정 이윤정 이윤주 이윤지 이은미 이 민 이은세 이은송 이은심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지 이은진 이은진 이은하 이은화 이은화 이은희
 이이엠티호텔 이인희 이자람 이장우 이재민 이재민 이재서 이재선 이재숙 이재식 이재연 이재연 이재연 이재영
 이재영 이재원 이재은 이재은 이정 이정림 이정민 이정민 이정선 이정아 이정아 이정아 이정연 이정연 이정윤
 이정은 이정은 이정은 이정희 이정인 이정인 이정일 이정현 이정현 이정희 이조원 이조원 이조행 이종득 이종선
 이종엽 이주은 이주현 이주현 이준 이준 이준호 이준권 이지나 이지나 이지수 이지수 이지숙 이지애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 이지예 이지원 이지윤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현 이지
 이지현 이지현 이지혜 이지혜 이지호 이지희 이지희 이진 이진리 이진비 이진석 이진솔 이진영 이진옥 이진주
 이진호 이진희 이채린 이채영 이채원 이채원 이채은 이채훈 이철 이태규 이태용 이필은 이하나 이하니 이하엘
 이하영 이하정 이하재 이한경 이한샘 이한솔 이한승 이한아 이한유 이해인 이해진 이현경 이현경 이현교 이현리
 이현아 이현아 이현영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현주 이현지 이현지 이현진 이형덕 이형은 이형주 이형진 이혜경
 이혜란 이혜련 이혜련 이혜리 이혜린 이혜린 이혜미 이혜민 이혜선 이혜선 이혜선 이혜승 이혜영 이혜영 이혜원
 이혜원 이혜인 이혜정 이혜지 이혜진 이혜진 이혜진 이혜진 이호은 이호정 이홍시 이홍원 이화영 이환진 이효경
 이효정 이효환 이희경 이희연 이희 이희주 이희진 인도양 인준혁 임경희 임다영 임다예 임미경 임미라 임미애
 임미영 임보경 임보라 임보람 임상아 임선미 임선자 임선희 임성아 임소라 임수정 임슬빈 임슬지 임 은 임여주
 임예원 임예인 임예지 임우재 임원영 임윤정 임은솔 임은실 임은영 임은지 임은진 임이랑 임자영 임재은 임재희
 임정은 임정현 임정현 임준섭 임지수 임지수 임지영 임지영 임지영 임지은 임지은 임지현 임진경 임해나 임현숙
 임현정 임현정 임현정 임현주 임현희 임혜승 임혜연 임혜원 임화경 임효진 임희숙 임희정 장기원 장나라 장나라
 장명주 장미 장미 장미래 장미정 장미희 장범수 장부영 장선 장세빈 장세연 장세진 장소령 장소연 장솔 장수빈
 장수은 장수진 장승은 장승준 장신혜 장안 장에스터 장영렬 장영주 장예린 장원미 장유리 장유숙 장윤정
 장은경 장은미 장은미 장은영 장은진 장인순 장인의 장인혜 장재은 장정인 장정화 장주연 장준미 장지수 장지안
 장 은 장지혜 장진경 장진영 장참 장채연 장하윤 장한나 장해리 장현석 장현정 장현희 장현순 장혜빈 장혜영
 장혜원 장효은 장희선 전검지 전경미 전경아 전규영 전다은 전도옥 전 미 전미숙 전민경 전민경 전민정 전민주
 전병건 전서현 전석근 전석희 전설인 전성진 전세희 전소현 전솔 전수연 전수지 전수현 전아름 전여진 전영재
 전영주 전은누리 전원우 전유미 전문호 전문경 전문진 전문혜 전문희 전정원 전정은 전제는 전주원 전주희
 전지민 전지아 전지원 전지원 전지혜 전채린 전춘주 전해선 전해연 전현정 전현희 전혜리 전혜영 전혜지 전혜진
 전혜진 전효성 전효영 전희라 전희연 전희재 정강숙 정강자 정경아 정경은 정경채 정고운 정고는 정광현 정규리
 정나현 정다솜 정다솔 정다예 정다운 정다운 정다운 정다운이 정다현 정담 정도윤 정마리 정모란 정문경 정미경
 정미리 정미솔 정미연 정미혜 정민경 정민권 정민주 정민혜 정민혜 정별희 정보라 정보미 정보미 정상희 정서희
 정선 정선 정선경 정선미 정선아 정선현 정성준 정성혜 정세은 정세정 정소 정소연 정소영 정소윤 정소희
 정수정 정수주 정수지 정수진 정숙영 정순자 정승우 정승은 정아람 정아름 정안나 정애리 정연규 정연주 정영경
 정영미 정영은 정영진 정영희 정예나 정예지 정예진 정예진 정우진 정운섭 정원서 정원선 정원식 정유경 정유나
 정유나 정유리 정유리 정유정 정유진 정유진 정유진 정윤선 정윤영 정윤희 정은경 정은민 정은아 정은영 정은우
 정이담 정인선 정인혜 정일화 정재연 정재연 정재영 정재은 정정원 정주연 정주영 정주용 정주희 정주희 정준

정지상 정지수 정지연 정지영 정지영 정지영 정 용 정지운 정지원 정지형 정지혜 정진영 정천지 정태영 정해운
 정해인 정현아 정현주 정현지 정형석 정혜림 정혜성 정혜원 정혜원 정혜은 정해인 정혜지 정혜진 정효영 정효진
 정희경 정희원 정희정 정희정 제갈별 제이글로리 제지혜 조가희 조경숙 조경옥 조경주 조경호 조광형 조기영
 조다영 조라헬 조명진오피스컨설턴트 조미연 조민경 조민경 조민교 조민현 조보람 조상숙 조서영 조선형 조선화
 조선희 조성원 조성은 조성현 조소담 조소영 조소는 조수민 조수빈 조수빈 조수영 조슬지 조승희 조아라 조아름
 조아영 조양희 조여진 조영란 조영림 조영주 조예린 조예은 조예인 조예지 조용림 조용선 조용원 조유경 조유나
 조유림 조유상 조유정 조윤미 조윤아 조윤아 조윤영 조윤주 조윤하 조은봄 조은샘 조은영 조은정 조은정 조은주
 조은진 조은혜 조인경 조일연 조재선 조정란 조정운 조정훈 조주련 조진경 조진영 조진희 조창애 조채운 조하나
 조한아 조한울 조해성 조현기 조현아 조현아 조현정 조현주 조현준 조현화 조혜민 조혜운 조혜은 조혜정 조혜정
 조혜진 주경란 주경자 주나미 주동성 주미영 주민경 주숙영 주식회사 한승주 주식회사굿모 지구 주영현 주은지
 주이영 주정민 주지영 주지현 주형빈 주혜원 주혜진 지선구 지성환 지순주 지승원 지아름 지애리 지은경 지은혜
 지현정 지혜 진민영 진병선 진봉길 진세영 진수진 진윤정 진은미 진재희 진초록 진현경 진현신 진혜주 진호정
 차강주 차경환 차소 차승현 차연아 차연주 차유나 차유미 차유지 차은영 차정은 차주연 차지영 차진영 차하나
 차혁재 차현아 차희진 채다은 채동화 채보람 채선정 채소라 채유리 채윤진 채은영 채지혜 채하나 천민영 천보람
 천유민 천윤정 천은주 천재화 천태은 천현근 천현성 천희진 체인지라이프 최경미 최경애 최경애 최경희 최고의
 최광복 최규연 최나라 최나운 최다애 최다은 최다형 최명원 최명은 최문영 최미리 최미정 최미현 최민경 최민경
 최민주 최민지 최민지 최보금 최보원 최서영 최서은 최서현 최석환 최선영 최선영 최성 최성근 최 규 최성모
 최소담 최소영 최솔희 최수안 최수지 최수진 최수진 최수진 최숙영 최슬기 최아라 최애연 최여경 최연순 최연준
 최영실 최영아 최영옥 최영운 최영주 최영준 최영환 최영희 최예은 최예지 최예진 최예현 최우영 최우정
 최우주(찌루) 최유경 최유나 최유영 최유진 최윤서 최윤영 최윤진 최윤진 최윤하 최윤희 최은 최은 최은경 최은교
 최은비 최은서 최은아 최은영 최은영 최은우 최은정 최은정 최은지 최은지 최은형 최은후 최은희 최인영 최인정
 최인택 최정원 최정인 최정하 최준서 최준수 최지나 최지선 최지연 최지 최지연 최지에 최지우 최지은 최지혜
 최지혜 최지홍 최지희 최진규 최하나림 최학철 최하나 최해인 최현미 최현영 최현정 최현정 최현진 최현철
 최현하 최혜련 최혜미 최혜민 최혜민 최혜정 최혜지 최혜진 최효원 최효진 최희성 최희숙 최희원 최희진 추민아
 추은정 추정민 추진우 추현주 캔드그즈잇 커먼키친 코비한의원 인천점 코카헬스클럽 쿠루름 키네틱필라테스 태혜진
 팽병걸 펫시스터 편수 포물 표서연 표진실 프런트데스크 플랜티 하경남 하경미 하나정 하늘보기 하다영
 하람디자인 하미선 하봉란 하서경 하영숙 하영진 하예지 하예진 하유정 하은빈 하이벨버드 하정은 하준겸 하지수
 하차영 하태민 하혜진 한구현 한규주 한기완 한나진 한다솜 한다희 한다희 한미나 한민수 한봉숙 한선우 한설아
 한세미 한소영 한소진 한솔비 한송이 한수경 한수련 한수정 한수진 한슬기 한아람 한아름 한아름 한연심 한예슬
 한옥련 한완선 한원 한은지 한은진 한은희 한이진 한정운 한정은 한정은 한정임 한정화 한제임 한지수 한지운
 한지행 한진희 한태영 한혜선 한혜선 한혜정 한혜진 한희 한희정 함보미 함지혜 함현정 함혜숙 함혜영 해님약국
 허광조 허기쁨 허보미 허상희 허서정 허선영 허성경 허성희 허소진 허연수 허유나 허윤영 허윤정 허윤정 허은선
 허인에 허재준 허정민 허정혜 허주영 허지선 허지영 허희숙 현민혜 현성희 현세용 현승건 현승의 현주미 현주은
 현지연 현혜 혼자두면장판뜯어서차린개카페 흥경의 흥기운 흥나래 흥남미 흥다희 흥두리 흥리경 흥명진 흥선영
 흥성미 흥성철 흥수민 흥승아 흥승희 흥승희 흥 주 흥연주 흥유나 흥유림 흥유정 흥유진 흥윤주 흥윤희 흥은복
 흥은서 흥이경 흥이현숙 흥재원흥정아 흥정은 흥주연 흥주현 흥지민 흥지현 흥지훈 흥초현 흥현경 흥현정 흥현주
 흥형우 황가람 황가순대 황규리 황다연 황미연 황미영 황밀 황선빈 황선실 황선희 황세령 황세진 황수빈 황수빈
 황수 황영지 황예원 황우경 황유원 황유지 황은영 황은혜 황재식 황정아 황정아 황준영 황지은 황지현 황지현
 황지혜 황현정 황현지 황혜원 황혜진 황 정 황희선 3,170명

2022 정기총회 대의원 명단

| 구분 | 이름 |
|--------|-------------------------------------|
| 대표(1명) | 전진경(1명) |
| 이사(7명) | 권미경 박승호 박지영 서국화 서정주 유창복 임순례 황지나(8명) |
| 감사(1명) | 최호윤(1명) |

대의원(279명)

(주)디팻바이오(박명원) (주)모터라이프 JUN JI HYUN 김시아 간현임
 강래희(강은하) 강명주 강선주 강신혁 강창근 강창희 강혜원 강희석 고경아
 고현선. 곽수환 구분진 구성태 구재홍 구지선 권나리 권나미 권미애 권수정
 권혜라 금새별 김경란 김경숙 김계옥 김나래 김나연 김남하 김다영 김대원
 김대은 김마리아 김명혜 김미정 김민서 김민솔 김민아 김민영 김민영 김선민
 김성수 김세현 김소라 김소린 김소현 김소희 김수연 김수연 김수정 김수준
 김시연 김엄지 김연정 김연주 김영민 김영주 김유정 김 준 김은미 김은정
 김은진 김익현 김장언 김정민 김정숙 김정아 김정현 김종배 김종호 김주희
 김지수 김지영 김지은 김진란 김진영 김태린 김하나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지 김혜민 김혜정 김효실 김희준 남승민 노선심 노현주 류성이 류한욱
 모나코코(김시영) 문성호 문제현 박민우 박상연 박선미 박선영 박세혁 박수진
 박수진 박수화 박신아 박아름 박애현 박연진 박영선 박용옥 박용천 박윤임
 박이경 박일 박정식 박주영 박지에 박진화 박찬경 박채빈 박효선 반지훈
 반진우 방미정 배경 배선경 배수현 배우찬 백영주 변지성 보리누나탄(이운섭)
 서도은 서지영 서진주 선우경미 성유경 소연주 손다경 손미정 손은미 송윤지.
 송지은 송채원 송하림 송혜미 스토브온(정희원) 시은경 신상은 신숙주 신순영
 신주은 신채영 신채은 신충수 신 서 양수영 양정원 양주희 양한얼 여지은
 예은숙 오성숙 오수경 오승하 오지영 우동준 우영하 원유연 유경희 유은희
 윤혜영,이가원 이경민 이경신 이관철 이남우 이명우 이상명 이상준 이서울
 이서준 이성식 이성원 이세은 이소영 이소윤 이수연 이승민 이승연 이승은
 이승혜 이연옥 이영희 이용주 이유미 이윤 이윤서 이윤주 이은령 이은심 이은우
 이은진 이장희 이재원 이정아 이준호 이지원 이지은 이진솔 이하영 이현영
 이현주 이현주 이현호 이혜령 이혜린 이환영 임도윤 임보라 임선미 임선미
 임수민 임숙 임이안 임초아 장경아 장문선 장연주 장유리 장윤정 장효영 전성일
 정마리 정미영 정서빈 정순희 정애리 정지혜 정현규 조경미 조미현 조상영
 조소정 조현정 조현희 종선에 주식회사 한승주(한단오) 주재현 지윤서 진유미
 차은정 채서연 최경숙 최단비 최선영 최수미 최아라 최윤정 최은희 최주희
 최지해 최철훈 최희경 추인혜 하덕현 하미정 하유진 하현진 한소이 한희진
 허운영 허윤경 허진 홍서진 홍성미 홍수민 황유현 황재영

2022 동물권행동 카라 조직도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정관(2020년 버전)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단체')라 칭한다.
- ② 이 단체의 영문표기는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로 하고 약칭은 KARA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위치)

단체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단체는 동물복지향상과 동물권 증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동물학대와 남용 등 동물권 침해에 대한 예방, 교육, 캠페인에 앞장서고,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명존중의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4조(사업)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교육사업 -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2. 유기동물 및 위기동물 구조, 구조지원, 보호사업 및 보호소 설립·운영
3. 콘텐츠 개발 사업 - 서적, 영상, 영화, 사진 외 사업
4. 개식용 반대 등 각종 동물보호 캠페인
5. 국내 외 동물입양사업
6. 동물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7. 동물보호운동 기금 마련을 위한 각종 모금사업
8. 동물보호 관련법 제정 및 개정 참여 사업
9.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연구소와 동물 보호와 동물의 권리를 위한 동물권 소송센터 사업
10. 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단체의 회원은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제5조의 2(가입)

- ①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단체에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②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6조(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2. 단체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7조(의무)

회원은 단체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회원은 3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될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탈퇴 시 회원이 기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의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재가입)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②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명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년 이후에 재가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종류와 정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공동대표 3인 이하
-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대표 포함)
- 3. 감사 2인

제11조(선출)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6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③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단체의 임원으로

- 선출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2조(징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22조에 따른 총회의 특별결의를 통 하여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 1.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 2. 단체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
 - 2. 정직
 - 3. 해임
 - 4. 제명
- ③ 임원 해임의 경우 4년 이내에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제명됨으로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회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 <삭제>

제14조(임기)

- ①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직무)

- ① 대표는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를 둘 경우 공동대표 중

의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 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 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 술하는 일

제16조(대표의 직무대행)

- ① 대표의 사고 시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대표선출의 절차를 밟 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단체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의 2(대의원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대의원은 회원 5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하고, 총수는 300명 이내로 한다. 선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본회 내규에 의한다.
-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이사회 의 재적이사 과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총회구성원 1/5 혹은 회원 50명 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 4. 제15조 3항 4호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③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으면 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이사 중 가나다순으로 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의 2(개최와 통지)

- ① 대표는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다른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의결)

-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의결 제척사유)

- 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과 본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기능과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3. 단체의 기본활동 방침 결정
- 4. 임원의 선출, 해임 및 징계
- 5. 단체의 고문, 지도위원 추대
- 6.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 7. 신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안 심의 확정
- 8. 감사보고서의 승인
- 9.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
- 10. 단체의 해산
-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의2(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변경

- 2. 기본재산의 처분
- 3. 임원의 징계
- 4. 자본금 감소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 ① 이사회는 년 3회 이상 개최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③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 2. 제15조 3항 4호와 관련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 3. 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를 기재 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의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이사와 본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 <삭제>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 3. 잔여임기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 4.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5.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작성
- 6. 보통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7. 운영위원의 선출
- 8.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
- 9. 분회의 각종 내규 의결
- 10. 사무국장 추천

- 11.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 12.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운영위원회**

제29조(구성)

- ① 단체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를 제외한 2년이상 대의원으로 활동한 회원이거나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6명 이상 15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표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30조(소집)

-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정기 회의를 가지며 필요시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장은 재적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 ④ 운영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출석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의 2(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한다.

제30조의 3(운영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의결정족수)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③ 운영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제34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제반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3. (삭제)
4. 이사회에서 위임된 안건처리
5. (삭제)
6.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 <삭제>

제35조 1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안,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소집 및 의견에 관한 사항은 제 30조 내지 제 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위원회)

- ① 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연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자문위원과 명예이사)

- ① 단체는 자문위원과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단체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위촉한다.
- ③ 명예이사는 단체의 취지에 동참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위촉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 ① 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단체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재산총괄표”와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단체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 2(수익금)

단체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의 재원으로 한다.

제39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① 단체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 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 ② 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는 그 처분 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금액 및 처분 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41조 <삭제>

제42조(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세입·세출예산)
 단체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4조(결산)

- ① 대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승인을 얻어 정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4조의 2(회계잉여금 처리)

매년도 회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 자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단체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 제정 2010.30.24.
- 1차 개정 2011.12.12.
- 2차 개정 2012.10.09.
- 3차 개정 2014.06.19.
- 4차 개정 2017.06.28.
- 5차 개정 2018.02.22.
- 6차 개정 2019.02.14.
- 7차 개정 2020.02.20.

제4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사무국**

제47조(사무국)

- ①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제47조의 2(사무국 내규 등)

사무국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복무·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48조(법인해산)

- ①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단체가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9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운영규정 등)

본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준용)

